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보건복지부



NPS 국민연금공단

 **일러두기**

본 책에 수록된 사례는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른 판단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업무 분야별 결정 사례

제1장

이의신청

① 자격 및 징수 관리	10
② 급여 관리	14

제2장

심사청구 [제도일반]

① 자격 및 징수 관리	
1. 사업장가입자	18
2. 지역가입자	24
3. 임의·임의계속가입자	28
4. 반·추납보험료	33
5. 기타	43
② 급여 관리	
1. 노령연금	46
2. 분할연금	61
3. 반환일시금	70
4. 유족연금	81
5. 기타	89

제3장

심사청구 [장애]

① 장애연금

1. 장애정도	98
2.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126
3. 기타(완치인정, 미납제한, 소멸시효 등)	137

제4장

재심사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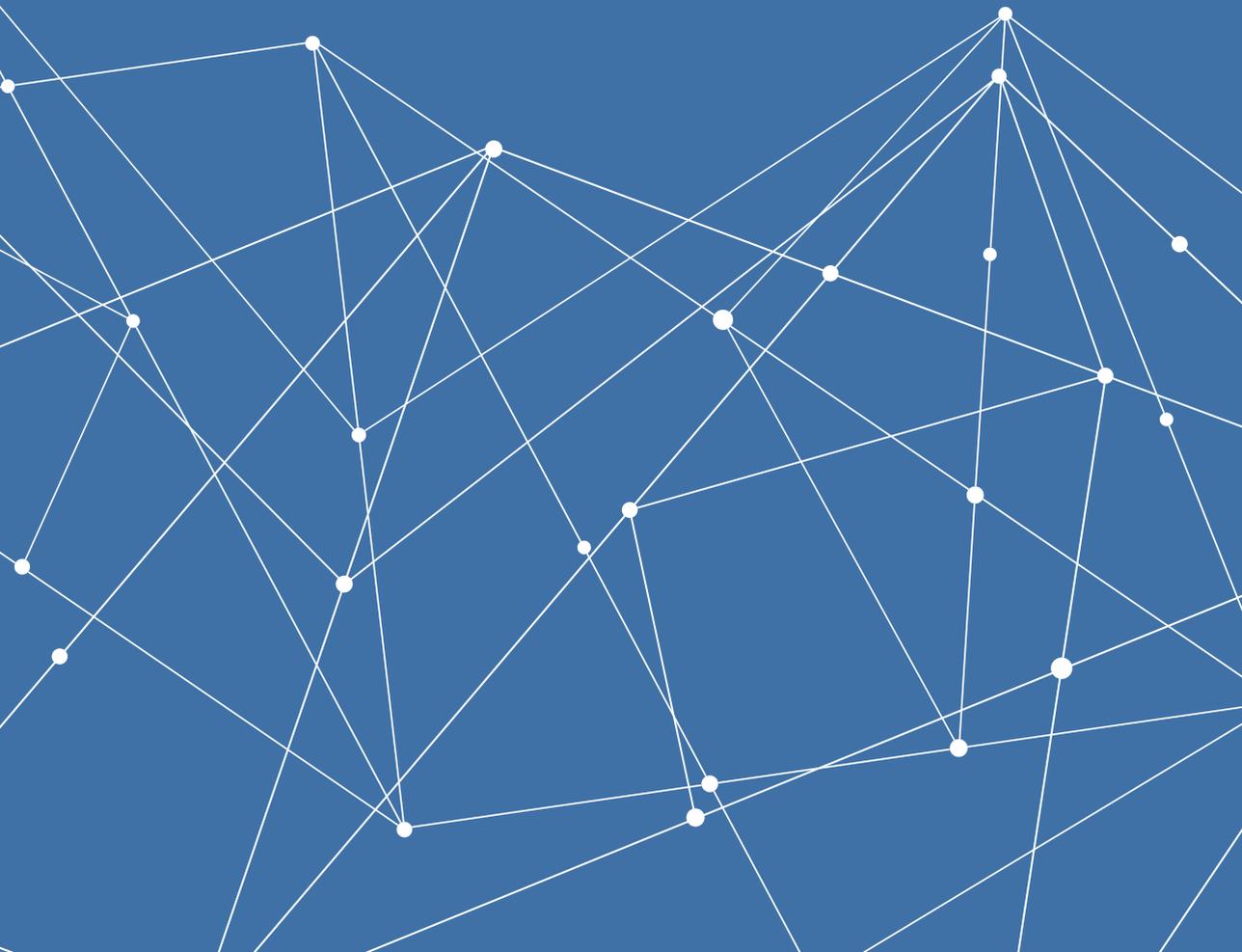
① 자격 관리	156
② 급여 관리	162
③ 장애연금	190

II. 관련규정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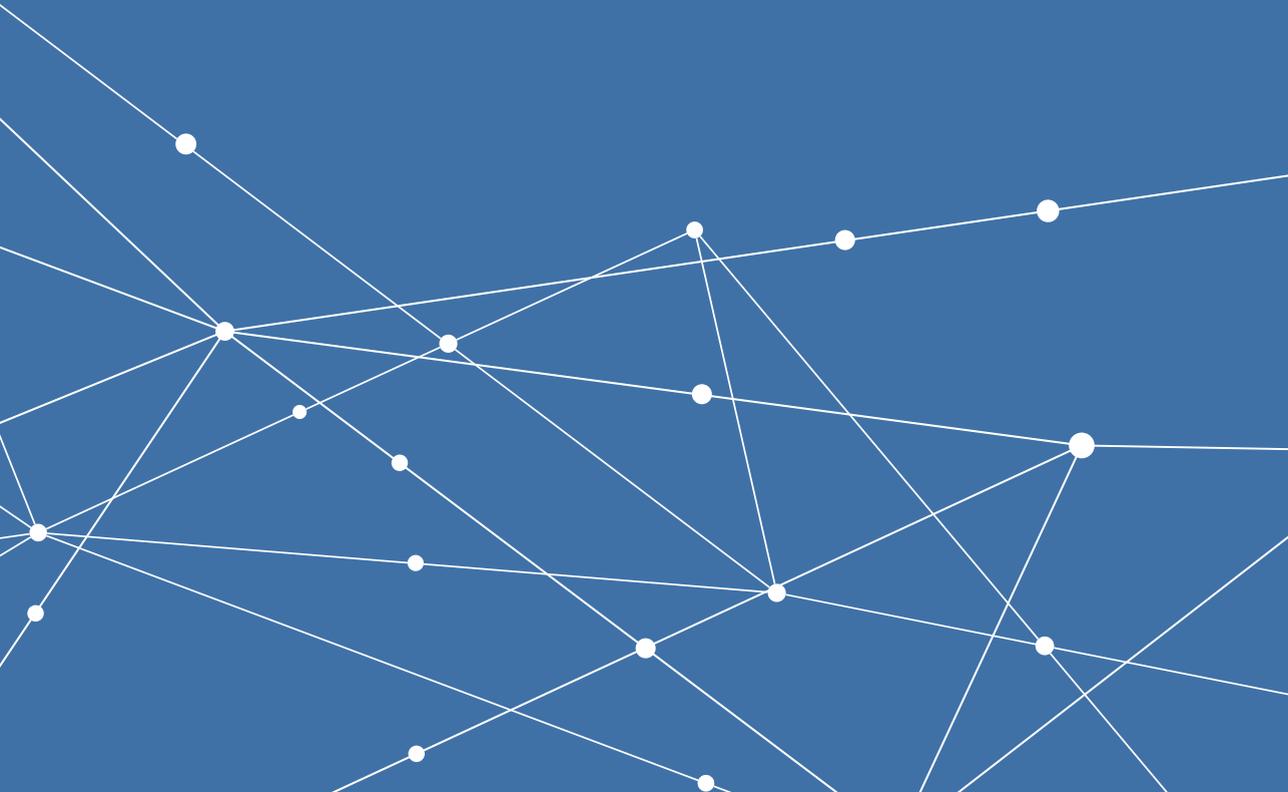
관련규정

① 국민연금법	236
② 국민연금심사위원회운영규정	246
③ 이의신청위원회 운영예규	252
④ 행정심판법	258
⑤ 민법	270



I

업무 분야별 결정 사례





제1장 이의신청

① 자격 및 징수 관리

② 급여 관리

01 자격 및 징수 관리

사례1

【심의유형 1호】과세자료를 근거로 기준소득월액을 소급하여 조정한 사례 **수용**

처분내용

신청인의 2017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8. 12. 1.자로 신청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직권 상향 조정함

신청인의 주장

2018~2021년 확인되는 소득금액을 근거로 기준소득월액을 소급해 하향 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기준소득월액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법 시행령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법 시행규칙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법 시행규칙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결정

법 시행령 제7조는 지역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신청인의 경우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장기간 미납에 따른 부담이 크고, 국세청에서 발행된 ‘2018년 ~ 2020년 소득금액증명’으로 신청인의 소득금액이 현저히 하향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민연금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임. 다만, 미납된 보험료에 한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사례2

【심의유형 2호】 65세 이상인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직권상실 처분을 취소한 사례

수용

처분내용

신청인(1952. 3월생)이 2020. 3월부터 2020. 5월까지(3개월)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공단은 2020. 6. 11.자로 신청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직권상실처리함

신청인의 주장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직권 상실되었으나 공단으로부터 65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실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연금보험료 3개월 연속 체납으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직권상실처리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법 시행령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결정

법 제13조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까지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21조에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2020. 3월부터 2020. 5월까지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이 2020. 5월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로 신청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직권상실처리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다만, 공단은 65세 이상인 임의계속가입자가 3개월 연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자격 상실 처리 전에 가입자에게 직접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자격 상실시 재가입이 불가함을 안내했어야 하나,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한 이력이 전혀 없으므로 직권상실처분을 취소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사례3

【심의유형 2호】 65세 이상인 자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을 인정한 사례 수용

처분내용

신청인(1955. 6월생)이 2020. 3월부터 2020. 5월까지 연금보험료를 연속으로 체납하여 공단은 신청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2020. 6. 11.자로 직권상실처리함

그후 신청인이 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65세 경과를 사유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거부함

신청인의 주장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체납하여 직권상실처리되었으나, 공단으로부터 직권상실에 대한 안내와 65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65세를 경과한 자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법 시행령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상실)

결정

신청인이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자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로 신청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직권상실처리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며, 신청인이 65세 도달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자 65세를 경과하였음을 사유로 가입신청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도 적법함

다만, 공단은 65세 미만인 임의계속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여 그 자격이 직권상실되는 경우, 해당 사실과 65세 경과시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함에 대해 안내했어야 하나, 신청인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65세 도달 전에 자격이 상실처리되고 그에 대한 자격변동확인통지서가 65세 경과 후에 발송되어 신청인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일실된 측면이 있다 할 것인바, 신청인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인정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사례4

【심의유형 3호】 자격정리로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이 소급하여 지원제외 처리 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납월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징수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납부 신청을 인정한 경우 **수용**

처분내용

신청인이 1995. 7월부터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었으나 공단은 2002. 11월에 신청인이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1995. 7월부터 신청인이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을 취소 처리함

신청인의 주장

1995. 7월부터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연금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는데 소급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미납월이 발생했으나 징수권이 소멸되어 납부할 수 없다고 하는바,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장

쟁점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법 제115조(시효)

결정

법 제99조와 제115조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월의 연금보험료는 납부할 수 없음

신청인의 경우 2002. 11월에 자격정리로 인하여 소급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1995. 7월부터 지원받았던 국고보조금이 환수되면서 연금보험료 일부 미납월이 발생하였으며 자격정리로 인하여 발생한 일부 미납월은 이미 징수권이 소멸되었는바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이 소급 변동되어 일부 미납월이 발생되었으므로 공단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징수권이 소멸된 기간일지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02 급여관리

사례1

【심의유형 2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취소되었으나 소득있는 업무 비종사 연도의 초일을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수급권을 인정한 사례 **수용**

처분내용

신청인이 2019. 1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중, 공단은 2020. 10월에 신청인의 2019년 국세청 과세소득이 2019년도 A값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소처리함

신청인의 주장

2020년도 소득은 A값 미만이므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2020. 1. 1.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소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관련법령(기준)

법 제57조(급여의 환수),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결정

법 제61조 및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신청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공단이 신청인의 조기노령연금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연금액에 대해 환수결정한 것은 적법함

다만, 신청인이 조기노령연금 청구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소득이 'A값 미만으로 된 시점에 청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신청인의 급여지급연령 도달 후 수급권이 취소되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후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점, 2020년도 소득이 A값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지급한 연금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2020. 1. 1.로 변경하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사례2

[심의유형 2호] 소멸시효가 완성된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사례 **수용**

처분내용

신청인이 60세(2012. 7월) 도달 후 2021. 5월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미해당 결정함

신청인의 주장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지도 몰랐고, 오래전 외국으로 출국하여 반환일시금 청구안내를 받지 못했으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소멸시효가 경과한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한지

관련법령(기준)

법 제77조(반환일시금), 법 제50조(급여의 지급)

구법 제115조(2017. 10. 24. 법률 제149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시효)

결정

법 제7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면 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 권리는 법 제115조에 따라 5년이내에 행사해야 함

신청인은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미해당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다만, 수급권 발생 이후 9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1회 출장한 사실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거주불명등록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지와 출장지가 모두 행정관청으로 되어있어,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안내는 공단의 서비스에 불과하여 법적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수급권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제2장 심사청구 [제도일반]

① 자격 및 징수 관리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임의계속가입자
4. 반·추납보험료
5. 기타

② 급여 관리

1. 노령연금
2. 분할연금
3. 반환일시금
4. 유족연금
5. 기타

01 자격 및 징수 관리

1

사업장가입자

사례1

‘입갱수당’ 등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특수직종근로자로 자격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상시 갱내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고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입갱수당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갱내 석회석 채광작업장에서 일해왔는데 임금명세서상 입갱수당이 확인되는 2012년부터만 특수직종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

입갱수당이 확인되지 않아 특수직종근로자로 불인정한 공단 처분의 적법한지

관련법령(기준)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시행령 제22조(특수직종근로자), 법 시행규칙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결정

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접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다른 직종의 일반근로자보다 부상·질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보다 퇴직시기가 이르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55세로 규정하여 일반가입자에 비하여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으므로 그 자격에 대한 엄격한 확인이 필요함

특수직종근로자의 판단은 입갱수당 지급이 명시된 임금대장, 또는 그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 공신력이 있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처리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광업 종사자 중 상시 갱내에 종사하는 자의 직종에 한하여 입갱수당이 지급되면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한 공단의 업무처리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사례2

입갱수당 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증빙자료로 갱내종사여부를 확인하고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신고하였으나, 공단은 임금명세서상 입갱수당이 확인되지 않음을 사유로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

청구인의 주장

사업장에서 월급명세서에 입갱수당을 누락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사실확인원' 및 자격증으로 상시 갱내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갱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갱내안전담당계원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도 확인되는바, 갱내에서 24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입갱수당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증빙자료로 갱내근무여부를 증명하는 경우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시행령 제22조(특수직종근로자), 법 시행규칙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결정

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접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다른 직종의 일반근로자보다 부상·질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보다 퇴직시기가 이르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55세로 규정하여 일반가입자에 비하여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으므로 그 자격에 대한 엄격한 확인이 필요함

급여명세서상 입갱수당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사실확인원'으로 갱내안전계원 선·해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증으로 갱내 채광공 및 화학공으로 선·해임된 사실이 확인되며, 공단이 출장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갱내작업 종사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3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서 명의대여를 인정받았더라도 소급하여 사용자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사업자등록 개시일인 2017. 7월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였고, 그 후 해당 사업장이 명의대여 사업장임을 주장하며 사업장 사용자를 당연적용사업장 적용일로 소급하여 변경해 줄 것을 신고하였으나, 공단은 과세행정청의 부과취소일(2019. 10월) 이전으로 사업장 내용변경은 불가하므로 소급변경을 거부하고 이를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해당 사업장은 명의를 대여해준 사업장으로 2019. 10월경에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받아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다 사용자를 변경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만 변경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함

쟁점

명의대여를 인정하여 사업자 등록일로 소급하여 사용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기준)

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법 시행규칙 제 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결정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령에서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의 일치여부에 관한 심사권을 공단에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명의대여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법령 사업장의 사용자 명의가 바로 소급하여 변경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된 바도 없음

또한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 행위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상당하다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과세의 공정성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공단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사례4

용역계약서 상 동업자 관계로서 계약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되었음을 주장하며 공단에 자격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과 해당 사업장이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동업자 관계로 계약하였음을 사유로 청구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불인정함

청구인의주장

동업자 관계가 아닌 근로자로서 계약했음을 주장하며,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와 본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용역계약서 상 동업자 관계로서 계약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를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법 시행규칙 제 14조(사업장 내용변경의 신고)

결정

공단의 자격확인 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정행위로 공단은 공권적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은 관련된 당사자로부터의 진술의 일치여부, 제출된 자료가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공단이 확인한 공적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자격확인 은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공단이 확인한 '강사 용역계약서'상에 사업장과 청구인은 동업자 관계로서 계약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업무일지'를 보면 청구인이 근로한 내용에 대한 사업장의 확인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관리감독하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례5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인정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납부예외일을 소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사업장 사용자인 청구인이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사유로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일을 소급(5월)하여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납부예외일을 결정(6월)함

청구인의 주장

사용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한 것으로, 공단이 자격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2020. 5월분에 대한 납부예외가 불가하다고 하나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예외일을 5월로 소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인정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납부예외일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법 시행규칙 제 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결정

국민연금법에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인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사업중단은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납부예외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업장이 다수 발생하여 공단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납부예외를 인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은 2020. 3월분부터 6월분 연금보험료 중 최대 3개월분에 한정하고, 신청기한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신청기한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사례6

국세청 경정 근로소득을 근거로 특례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요청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법인사업장)은 2019. 4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공단은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함

이후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경정자료를 근거로 2018년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근로자의 2018년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받았으므로 연금보험료도 정산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국세청 근로소득 경정자료를 근거로 특례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시행령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결정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공단이 결정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하는데,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실제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사업장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제도가 시행되었고, 특례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소득과 신고된 소득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고 있으므로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는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 종사기간은 전년도이므로 청구인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요청하는 근로자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자료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근로자는 2019년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2020년 6월까지 적용되므로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2

지역가입자

사례1

개인회생 변제 등을 이유로 자격취득 취소 및 납부예외를 요청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소득자로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공단은 지역가입자 가입안내문 및 가입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직권으로 취득처리하고 연금보험료를 부과함

청구인의 주장

개인회생 변제 등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취소하고 납부예외 처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소득활동에 종사하나, 개인회생 변제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조(가입대상), 법 제9조(지역가입자), 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결정

사업중단, 실직, 휴직 혹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와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 예외처리 가능하나,

개인회생 신청요건은 장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므로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가 이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므로 개인회생결정을 사유로 납부 예외는 불가함

청구인은 사업소득자로서 소득활동 중단이 확인되지 않고,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며, 다른 납부예외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납부예외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2

공단이 실제 소득에 대한 확인없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직권으로 취득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공단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하고 특수형태근로자로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직권으로 취득처리하고 중위수 소득금액(10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함

*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

청구인의주장

임대소득이 월30만원에 불과한데 공단이 소득에 대한 확인없이 월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이 가입신고 안내를 했음에도 청구인의 미신고로 직권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취득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제9조(지역가입자), 법 시행령 제6조(가입자 자격취득 시와 납부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결정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사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 11959 판결)이라 할 것인데

공단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직종형태의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가입안내문, 직권가입예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결정하였고, 자격취득 결정시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위수 소득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납부예외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결정은 취소가 불가하다고 판단함

사례3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에 따른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은 적법하다는 사례
기각

처분내용

공단은 지역가입자로 농어업인 국고지원을 받고있던 청구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가 접수되어 청구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하였음

청구인의 주장

해당 사업장에서 15일간 근무하였으며, 사업장 퇴사 후 공단으로부터 농어업인 국고지원 안내문을 받기 전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줄 모르고 있었던바, 공단에서 자격변동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하고 기존 가입자격을 유지해 줄 것을 주장

쟁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법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법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결정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에 이를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역가입자에게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과 같이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통지서로 자격변동이 별도로 통지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본인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리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유로 이루어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함

사례4

임의가입대상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지역가입자로 착오처리하여 지역가입자 가입기간을 임의가입 기간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지역가입자 가입신고를 하였고, 공단은 이를 처리하였으나 이후 공단은 청구인이 퇴직연금등수급권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역가입자 이력을 취소함

청구인의주장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공단이 지역가입자로 착오처리하여, 그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취소되었는바, 이는 공단의 착오이므로 현재까지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한지

관련법령(기준)

법 제9조(지역가입자), 법 제10조(임의가입자), 법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제3조(적용범위 등)

결정

공단이 청구인의 가입신청을 처리할 당시 퇴직연금등수급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였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취득을 결정하였고, 공단 상담이력에 청구인에게 퇴직연금 등수급권자의 경우 임의가입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이미 퇴직연금등수급권을 취득하였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 이상으로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실의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공단이 관련자료를 확인하였다면 당연히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결정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이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한 기간의 자격을 임의가입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3

임의·임의계속가입자

사례1

중복급여의 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 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연금보험료 최종 납부월의 말일(2019. 1월)로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함. 이후 청구인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을 결정함
이후 청구인은 가입기간이 119개월이 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상실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일 변경은 불가함을 결정·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발생하여 본인의 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었으므로, 본인의 가입력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77조(반환일시금)

결정

공단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 최종납부월의 말일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로 결정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수급권자에게 20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복급여의 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사례2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미납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자가 65세 경과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인 청구인이 3개월(2017. 11. ~ 2018. 1.) 연속 연금보험료를 미납하여 공단은 2018. 1월분 연금보험료 납부마감일의 다음날로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함 이후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65세 경과를 사유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이 불가함을 결정·통지함

청구인의주장

최근 항암치료 등으로 통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미납하고 65세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65세를 경과한 자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결정

공단은 청구인이 연금보험료를 2개월 연속 미납하여 청구인에게 3개월 연속 미납시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됨을 안내하는 SMS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3개월 연속하여 연금보험료를 미납하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한 후 청구인에게 자격변동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65세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또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로부터 청구인이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청구인에게 다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요건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법 집행기관인 공단이 청구인에게만 법률의 적용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3

공단의 착오 안내가 청구인에게 극심한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므로 65세를 경과한 자의 임의계속가입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65세 경과를 사유로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함을 결정·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노령연금 청구를 위해 내방했을 당시 이미 65세를 경과하였음에도 공단이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안내하여 자금을 마련해 온 것이므로 임의계속가입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의 착오안내를 사유로 65세를 경과한 자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결정

공단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당시 이미 65세를 경과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청구인에게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에 대해 착오안내한 부분은 확인되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 및 추납보험료 납부요건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령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공단이 착오 안내하였더라도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할 수 없고,

행정청(공단)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인데 이미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에게 공단의 착오 안내로 인해 손해가 극심하여 청구인의 신뢰를 정당화할만한 법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4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임의계속 예정탈퇴신청으로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 취소를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서 임의계속 예정탈퇴를 신청하여 공단은 청구인이 신청한 임의계속 예정탈퇴일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을 결정·통지함

청구인의주장

임의계속가입 탈퇴에 대해 어떤 안내도 받은 적이 없고 최근에는 사실을 알게된바,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임의계속 탈퇴예정일로 청구인의 자격을 상실처리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결정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가 급여수급요건을 갖추었으나 계속 가입하여 연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 예정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급여수급시기, 미납내역 등을 확인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예정탈퇴 처리를 하고 있음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취지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청구인이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을 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단에서는 청구인이 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탈퇴일로 상실처리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안내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5

임의계속가입자가 12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반환을 위해 자격상실일 변경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 탈퇴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금보험료 최종 납부일의 말일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상실일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가입기간 12개월만 충족하면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금전이 필요하므로 추가 납부된 2개월분 보험료는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12개월을 초과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반환을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결정

노령연금 수급권은 연령과 가입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데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일 뿐 가입기간 12개월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12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반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어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이를 법률상 근거 없이 취소하거나 반환할 수 없음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을 확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가입하고 탈퇴하며, 자격상실일은 가입자가 탈퇴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또는 마지막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말일로 결정하는바,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4

반·추납 보험료

사례1

개인사정변경에 의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납부한 후 공단에 추납보험료 납부를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이미 납부한 추납보험료는 취소가 불가함을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노후준비를 위해 무리하여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납부한 이후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음을 알게된 바 추납보험료 납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납부한 추납보험료를 개인사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결정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처분은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바 유효하게 형성된 행정처분을 향후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취소한다면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제한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시 제출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에 기초 연금액 감액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추납보험료 납부 시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납보험료 납부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액 감액 등을 이유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사례2

공단직원의 착오안내로 납부할 기회를 일실한 반납금에 대해 납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반납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고 있던 중 공단에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조기노령연금 청구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아직 납부하지 않은 반납금의 징수권을 소멸처리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 직원이 조기노령연금 수령 중에도 분할납부 중인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였는데, 이로 인해 반납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잔여 반납금의 일시납부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직원의 착오안내를 사유로 징수권이 소멸된 반납금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8조(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법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법 시행령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결정

공단이 청구인에게 조기노령연금액을 수령하는 중에도 매월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익월 연금액에 반영된다고 안내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공단이 정확한 안내를 했다면 그간의 상담이력과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반납금을 완납한 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공단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반납금 징수권에 법 제99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공단의 착오안내가 있었던 청구인에게 반납금의 일시납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징수권이 소멸된 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3

반납금 납부에 따라 재산정된 노령연금액을 지급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적용해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반납금 납부를 신청하고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한 후 반납금을 일시납부하였고, 공단은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2년 전 상담 시 안내받았던 반납금 납부액 및 노령연금액과 올해 실제로 반납금을 납부한 금액을 비교해보면 반납이자는 늘었으나 실제 지급된 노령연금액은 너무 적으며, 반납금 납부에 따라 재산정된 노령연금액이 지급사유발생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쟁점

반납금 납부로 재산정된 노령연금액 및 연금지급 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4조(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78조(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법 시행령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결정

반납금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기간에 대해 이자를 산정하는바 2년 전 상담 시와 실제 반납금 납부를 신청한 때의 이자가 달라진 것은 불가피하며,

2년 전 상담 시보다 많은 금액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였음에도 현재 지급되는 연금액이 상담 시 보다 적은 것은 청구인의 소득활동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또한, 반납금을 납부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납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반납금을 납부한 월까지는 반납금 납부가 반영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월부터는 반납금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재산정한 후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사례4

공단의 착오안내를 사유로 반납금 납부취소를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반납금 일시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였고, 이후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추납보험료 신청대상기간이 없음을 사유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이 불가함을 통지함에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반납금에 대한 납부취소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이미 납부된 반납금의 납부취소는 불가함을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반납금을 납부해야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반납금을 신청·납부하였는데, 추납보험료 납부가능기간이 없어 추납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공단의 안내를 믿고 납부한 반납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의 착오안내를 사유로 반납금의 납부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8조(반납금), 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결정

대법원은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관련하여, 동기(動機)의 착오를 사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그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8.7.11. 선고 78다719 판결 참고)라고 판시하고 있음

공단의 평생고객상담이력을 보면 공단이 청구인에게 반납금 납부 후 추납보험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단의 안내를 신뢰하여 반납금을 신청·납부한 사실도 확인되며, 공단이 추납보험료 납부제도에 대해 안내할 당시 이미 공단은 청구인에게 추납보험료 신청대상기간이 없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착오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므로 예외적으로 반납금 납부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5

개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반납금의 납부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을 사전 청구한 후 반납금 납부를 신청·납부하였고, 공단에 반납금 납부를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이미 납부한 반납금은 취소가 불가함을 결정·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노령연금 청구시 반납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채 반납금 납부신청 및 납부를 했는데 이혼이력이 있어 분할연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반납금 납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개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납부한 반납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8조(반납금)

결정

공단은 반납금 납부제도가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납부하는 절차임을 고려하여 반납금 납부 후 이를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납금 납부신청 시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반납금 납부신청 시 제출한 '반납금 납부신청에 따른 확인서'에 '반납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납금 납부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의사항'란에 '반납금 납부 전·후 이혼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되어 당초 안내했던 예상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바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의 반납금 납부신청 및 납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단의 업무처리에 하자는 없었으며, 청구인이 반납금을 납부한 기간은 반납금 신청과 납부를 통해 청구인의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어 법률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6

신용카드로 수납한 반납금에 대해 단순변심으로 납부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반납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였고, 그 중 3회차분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납부한 반납금의 거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신용카드 수납은 결제 당일에만 취소 가능함을 사유로 반납금 납부취소 요청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여신전문금융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반납금 카드납부 할부거래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단순변심에 의한 반납금 납부취소 요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법 제90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법 시행령 제59조의4(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결정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아 국민연금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사적거래를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그 대금 또는 대가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되므로 연금가입자와 공단의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니열하는 '금융상품'에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단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반납금 납부 후 단순변심 및 개인의 사정변경 등으로 납부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납부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과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용카드 수납의 경우 수납 당일 온라인 마감시간 내에 한하여 수납취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납부 후 수일이 경과하여 납부취소 및 신용카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7

공단의 안내소홀을 이유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101개월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납부하였고, 이후 납부한 추납보험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추납보험료 납부취소가 불가함을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시 월 보험료를 상향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월보험료를 상향한 후 추납보험료를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기납부한 추납보험료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의 안내소홀을 이유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결정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및 산정방법,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령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령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행정청이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시 제출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에 따른 확인서’의 유의사항에 ‘추납보험료 납부 후 더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납부하기를 희망하여 기납부한 추납은 취소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준소득월액 상향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및 납부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례8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자가 추납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노령연금을 수급중인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이 불가함을 결정·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추납제도를 알지 못한 채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이제야 추납제도를 알게 되었는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노령연금 수급자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결정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입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미 60세에 도달하였으므로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자격취득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바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요건을 갖추 수 없다고 할 것임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령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도 이미 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의 적용을 달리하여 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할 당시 '추납보험료 납부 미희망'함을 확인한 내용도 확인되는바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9

추납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가 자동이체 출금 전일에 납부취소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한 후 공단에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는 불가함을 결정·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였으나 금전이 필요해 자동이체 출금 전날에 공단에 취소를 문의하였고 이에 공단은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비우라고 안내해주어 잔고를 비웠으나, 다음날 배우자가 해당계좌로 금전을 입금하여 납부되었으므로 추납보험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자동이체로 납부된 추납보험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결정

공단은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추납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자가 추납보험료 전액에 대해 미납한 후 자동이체 출금 전일까지 자동이체 해지신청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취소를 요청하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취소를 인정하고 있음

청구인은 자동이체 출금 전일에 공단에 취소를 문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단 평생고객 상담이력, 통화기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는 공단과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추납보험료 납부취소 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및 납부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시 제출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에 따른 확인서'에 '추납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추납보험료 납부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10

2020. 12. 29. 법 개정에 따른 추납보험료 납부가능기간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177개월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를 신청하였다가 취소하고, 2021. 9월 공단에 195개월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2020. 12. 29. 법 개정으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기간이 119개월로 제한됨을 안내하고 195개월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불인정함

청구인의 주장

2020. 9월경 공단에 추납보험료 법개정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법 개정이 즉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내하였는바, 공단의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추납보험료 납부대상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95개월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법 개정 전에 실시한 공단의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개정법을 적용을 배재하고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법 제92조(2020. 12. 29. 법률 제17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결정

법 제9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20. 12. 29.)부터 시행하며 개정법 시행 후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2021. 9월 추후납부를 신청한 청구인은 개정법 적용대상임

법 제92조 개정 취지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납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추납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개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공포 즉시 시행(2020. 12. 29.)하도록 한 것이며, 국민연금제도는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령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는바 법 집행기관인 공단이 법령의 적용을 청구인에게만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임

5

기타

사례1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을 6개월을 초과하여 소급지원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2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2019년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시점부터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농어인 국고보조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2015년부터 농지원부를 보유하고는바 농지원부 최초작성일부터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주장

쟁점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을 6개월을 초과하여 소급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부칙(2007. 7. 23, 제8541호, 2014. 1. 14. 개정)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업무처리기준】신청일 직전 농어업인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의 6개월 범위 내에서 소급지원

결정

공단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간과 관련하여 농림수산물부 지침(농촌복지여성과-129호, 2018. 1. 9.)에 따라 신청 시점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일 직전 농어업인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의 6개월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음

공단은 매년 가입내역안내서에 농어업인 국고보조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안내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만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2

60세 이상인 자에게도 실업크레딧을 지원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인 청구인이 공단에 실업크레딧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60세 이상인 자는 실업크레딧 지원신청 대상이 아님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

60세 이상을 이유로 실업크레딧 지원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결정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고,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최대 12개월)에 추가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업크레딧 신청요건 중 연령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는바, 법 집행기관인 공단이 청구인의 주장만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사례3

본·지점별로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공단은 해당 법인의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임을 확인하고 연금보험료 지원 비대상 결정함

청구인의주장

세무회계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인사·노무·경영 등을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업계 전부가 일명 ‘독립채산체’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관행이며, 각 지점은 본점과 관계없이 4대보험 등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점별로 사업장 단위를 판단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법인일 경우 본·지점별로 사업장 단위를 판단하여 보험료 지원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법 시행령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법 시행령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결정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장에 속한 저소득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형성을 지원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 국민연금법에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를 권리·의무가 동일한 경우로 해석하여 본점과 지점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법 적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하나의 사업장을 실무상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은 원활한 국민연금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법인격이 새롭게 부여되는 것은 아닌 점,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해당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02 급여 관리

1

노령연금

사례1

가족관계등록부에 맞게 주민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수급권이 취소되었으나 공단의 귀책사유와 신뢰보호를 이유로 수급권을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여 정정하였고, 공단은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수급권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연금액을 환수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주민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하도록 정정하였을 뿐인데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

정정된 생년월일이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권을 취소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법 제61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구법 부칙 제9조(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법 제57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결정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요건과 연령도달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고, 공단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권자 등의 생년월일이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연령을 재계산하여 급여 수급권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함

다만 생년월일의 변경이 법원의 판단을 요건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사항이 아닌 행정상의 착오기재 사항을 단순 정정한 것이라면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단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상당기간 청구인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되었고 이로 인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2

법원의 허가에 따라 생년월일이 소급정정되었음을 이유로 노령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생년월일을 정정하였고, 공단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정정일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함. 이후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자격상실일인 생년월일 정정일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하여 노령연금을 지급결정 및 통지함

청구인의주장

법원의 허가로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므로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노령연금도 소급하여 지급해줄 것을 주장

쟁점

정정된 60세 이후의 최초 자격상실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급여의 지급), 법 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결정

공단은 급여수급연령을 확인함에 있어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따르며, 급여수급연령 도달은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에 의하여 판단함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정 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정정 전의 생년월일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어 온 가입자 자격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연금수령액이 감소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단은 정정된 생일 이후의 최초 자격상실일로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3

반납금 분할납부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지급이 결정된 청구인이 잔여 반납금 납부를 이유로 노령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반납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던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노령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노령연금 지급결정 시 잔여 반납금의 징수권이 소멸됨을 알 수 없었으므로 노령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 잔여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장

쟁점

반납금 분할납부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지급이 결정된 청구인의 잔여 반납금 납부를 이유로 공단의 노령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급여의 지급),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78조(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법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결정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 11959판결) 공단의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지가 쟁점임

공단은 청구인이 반납금 분할납부 신청 당시 분할납부 중 연금을 청구하면 일부납부한 금액만큼만 반영되어 연금이 지급됨을 설명하였고, 청구인이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자 공단은 청구인이 잔여 반납금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므로 공단의 처분에 위법, 부당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단이 지급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노령연금 청구철회 또한 불가능함

사례4

공단이 일부납부월 추가납부와 체납보험료 납부의 차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연금수급시기가 지연되었음을 주장하여 일부납부월 추가납부를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당월분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완납한 후 자동이체 계좌에서 일부가 이중 납부되었고, 공단은 이를 익월 연금보험료에 충당하였음

그 후 청구인이 익월 연금보험료를 납부마감일 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자 공단은 청구인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사유로 체납보험료 납부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함

청구인의주장

상당시 일부납부월 납부와 미납월 납부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받지 못했고, 일부납부월 납부와 미납월 납부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함

쟁점

공단이 일부납부월 추가납부와 체납보험료 납부의 차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금수급시기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계산), 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시행령 제24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결정

공단은 수급권자에 따라 일부납부월 납부와 체납보험료 납부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유·불리가 상이할 수 있어 수급권자에게 이를 안내해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일부납과 미납분 고지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공단이 상세한 안내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공단은 청구인에게 일부납부월 추가납부 및 미납분 납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실시하지 않았고, 공단이 이를 정확히 안내하였다면 청구인은 미납보험료 납부로 연금수급시기를 늦추기보다는 일부납부월을 추가납부하여 연금수급시기를 결정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일부납부월 납부를 인정해 연금수급시기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5

개별적인 연금보험료 체납사유를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인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는 월의 말일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청구인이 자격상실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마감일 후에 납부하여 공단은 최종납부일(체납보험료 납부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보이스피싱을 당해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일 당일 16시에 통장을 출금정지하였는데 그 시각 이전에 보험료를 출금해 가지 않은 공단의 착오를 인정하여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보험료를 체납한 이유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제89조(연금 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결정

국민연금법에 노령연금은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을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연금보험료를 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 소급하여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강행규정임

청구인이 납부기한 경과 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 납부를 사유로 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날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사례6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시기·예상금액에 대한 상담을 조기노령연금 지급청구로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청구일을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하고 익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함

청구인의주장

공단에 조기노령연금 문의 시 공단에 방문신청이 필요하다던지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 주지 않았고, 신청하면 익월부터 지급받는다지만 안내하여 조기노령연금 청구가 된 것인지 알았으므로 한달치 조기노령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해 줄 것을 주장

쟁점

조기노령연금 관련 안내를 조기노령연금 청구로 인정하여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결정

조기노령연금은 일정한 요건(가입기간, 연령, 소득요건 등)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공단에 그 지급을 청구하고 공단이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임(서울행정법원 2008. 5. 20. 선고 2007구합44344 판결 참조)

청구인의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 수급시기, 청구시기에 따른 예상연금액 등에 대한 상담 외에 조기노령연금 지급청구에 대한 상담은 없었고, 상담 당시 청구인에게 조기노령연금의 전화 청구가 가능하다고 오인하게 할 만한 안내는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날을 청구일로 보고 청구인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7

체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지연 등을 이유로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 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였고, 공단은 체납보험료 납부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연금보험료 고지서 송달지연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그로 인해 연금수급시기가 지연되었으며 공단에서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은 잘못도 있으므로 연금수급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주장

쟁점

체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고지서 송달지연 등의 사유를 인정하여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급여의 지급), 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결정

법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며, 체납보험료 납부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소급하여 받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한 것임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도 가상계좌납부 등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으므로 설령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더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단이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제도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는바, 해당 사유로 청구인의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해줄 수는 없다고 판단함

사례 8

추납보험료 납부월의 익월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공단의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노령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10월 말일에 공단에 내방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납부하고, 당일에 임의계속가입 탈퇴신고와 노령연금 지급청구를 하였음

공단은 임의계속가입 탈퇴신고일의 다음날인 11월 1일을 자격상실일로 결정하고, 해당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12월부터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과 상담 시 10월 말일까지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11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여 말일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추납보험료 납부일의 다음달이 아닌 그 다음달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

10월 말일까지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공단의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노령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업무처리기준】지급연령도달 시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임의계속가입 후 충족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이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임

결정

청구인이 공단에 추납보험료 납부 상담 시 청구인은 이미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있어 청구인이 원하는 시기(11월)에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0월 중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 추납보험료 납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안내 사실이 없고,

11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청구인에게 임의계속가입자 취득·상실, 추납보험료 납부시기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은 10월 중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9

추납보험료가 당월에 자동이체로 납부되므로 익월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공단의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의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이던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 및 노령연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공단은 추납보험료 납부(4월 9일)로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였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추납보험료 납부신청(3월) 시 공단이 추납보험료는 당월(3월)에 자동이체로 납부되므로 익월(4월)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므로 노령연금을 4월부터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시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연금수급권 발생일이 변동됨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공단의 착오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 등), 법 시행령 제52조(반납금의 납부기한 등)

결정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신청(3월)을 하면서 3월 25일에 추납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부되므로 4월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공단의 안내를 신뢰하여 추납보험료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는바, 만약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시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연금수급권 발생일이 변동된다는 적절한 안내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을 자동이체 납부 이외의 방법으로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단의 안내를 신뢰하여 노령연금 수급이 늦어진 청구인의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10

개정 전 법을 적용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공단은 청구인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소득활동기간에 대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과의 차액을 정산금으로 결정함

청구인의주장

월평균 근로소득이 A값을 1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음에도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

쟁점

수급권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수급권자에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1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63조(노령연금액), 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구법 제63조의2(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결정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소득과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2015. 1. 28. 법 개정(2015. 7. 29. 시행)을 통해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감액을 모색하여 연령에 따른 일률 감액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감액으로 변동되었음

청구인의 경우 개정법 시행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며, 수급권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개정 규정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인 안정성을 위하여 개정 법 시행 전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음

사례 11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된 국세청 소득자료와 다른 금액으로 소득있는 업무
종사 여부 판단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공단은 청구인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소득활동기간에 대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과의 차액을 정산금으로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근무했던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퇴사 익년도에 소득금액으로 포함
되었으므로 이 금액을 퇴사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된 국세청 소득자료를 수급권자의 사정에 따라 공단이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법 제61조(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일부개정된 것,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구법
제63조의2(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결정

공단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 신고된 국세청
소득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며, 국세청 소득자료가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득자료를 경정한 후 공단에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단에 국세청 소득자료와 다른 소득금액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공단이 수용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국세청 과세자료의
소득금액과 다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음

사례12

소득이 있는 업무 판단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공단은 청구인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소득활동기간에 대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의주장

주차장 임대사업을 낙찰받아 부동산 임대료를 선납하였는데 공단은 사업소득 산정시 선납한 부동산 임대료를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였으며 이월결손금을 제외하면 실질소득은 마이너스이므로 연금을 감액한 공단의 처분은 부당함

쟁점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 손익에 반영하여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1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63조(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결정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결손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자본유지도 못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세부담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서 손익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공단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고, 과세관청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경정하여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만 법 적용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및 종사기간을 적용하여 소득있는 업무 종사여부를 판단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13

연금의 지급연기 이후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여 공단은 이를 결정함. 추후 공단은 청구인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연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지급연기신청 이전에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해 정산금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연금지급의 연기신청 이후의 소득금액도 합산하여 소득있는 업무 종사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주장

쟁점

연금의 지급연기 이후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결정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로 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과세기간'은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외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연금법령상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를 판단할 때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등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종사월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사례14

65세 생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있는 업무종사 여부를 결정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공단은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청구인이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을 결정한 후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정산금을 결정함

청구인의주장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간 합산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정산금이 발생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65세 이후에 일시적 소득이 발생하였고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쟁점

청구인에게 발생한 일시적 소득이 65세 이후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65세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정산금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결정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확보한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상에 청구인이 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5세가 된 시점(8월)까지 소득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공단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했던 금액은 청구인이 65세가 된 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도 과세자료상의 금액이 65세 후에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국세청 과세자료상에서도 청구인이 65세가 되는 해에 사업자등록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의 정산금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사례15

공단의 권유로 반납금을 납부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금액이 증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안내소홀을 이유로 정산금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 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인 청구인은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신고하였고 반납금 납부를 신청하여 이를 납부함

공단은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감액금액을 산정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을 결정하였고, 추후 청구인의 국제청 과세자료를 확인하고, 확인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연금액과의 정산차액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이 반납금 납부를 권유해 납부하였는데,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및 정산금 결정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으므로 정산금 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반납금 납부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금액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정산금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결정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청구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는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정산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법령에 따라 운용되는 제도이고 법령은 공포·시행되면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각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처분의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반납금을 납부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 확인된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정산되었을 것이고, 청구인의 반납금 납부로 감액되는 노령연금액 자체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공단의 연금액 정산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음

2

분할연금

사례1

이혼 전 체납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여 인정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이혼 전에 미납하였던 연금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였고, 전 배우자는 청구인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이혼 전 미납하였던 연금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한 경우 해당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결정

법 제17조에 급여 수급요건 및 급여액 산정 가입기간 계산 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혼 전 미납하였던 연금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여 인정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처리한 공단의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사례2

분할연금 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수급권 포기를 인정한 사례 **수정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청구인의 급여 수급연령도달일로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 및 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분할연금 수급으로 형편이 어려운 전 배우자의 연금액이 차감되고, 본인의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액되는 것을 알았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할연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분할연금 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결정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음(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공단은 청구인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는바 공단의 처분에 하자는 없으나, 청구인이 분할연금을 청구할 당시 공단은 이미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분할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액의 변동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관련 상담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분할연금 청구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액 및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이 동시에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결정은 인정하되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수급권 포기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3

소장에 기재된 별거일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공단은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전 배우자가 수년 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가입기간 중 전 배우자와의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기간은 없으니 분할연금 지급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소장에 기재된 별거일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법 시행령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법 시행규칙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결정

분할연금 수급권은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로 이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급여이므로 그 수급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특히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자료로 인정되는 기간임에도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

전 배우자가 수년 전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제출된 소장에 기재된 별거일은 민법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기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은 해당 소송에서 소기의 결과를 얻기 위한 일방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례4

이혼 합의서상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연금분할 비율을 달리 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지급을 연기하고 있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공단은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 변경을 결정·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이혼 합의서에 이혼 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법 시행령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법 시행규칙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결정

대법원은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참조)하였음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일체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사회보험의 일환인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까지 포함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보건복지부 2019. 3. 8. 제2019-4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례5

이혼신고서에 작성한 실제 혼인일과 이혼일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판단해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통지함

청구인의주장

혼인 중 합의하에 별거하였고, 이혼신고서에 실제 혼인일과 이혼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기재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여 줄 것과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별거 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므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이혼신고서에 기재한 실제 혼인일과 이혼일을 분할연금 산정시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법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결정

분할연금 수급권은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로 이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급여이므로 그 수급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특히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자료로 인정되는 기간임에도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 이유서와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하단에 '실제 결혼년월일 : 80년 8월부터 동거, 실제이혼년월일 : 88년 5월부터 이혼'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이혼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또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라고 할 수 없음

사례6

이혼 후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이혼 후 지급받은 청구인의 반환일시금 수령액 중 일부를 이미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은 분할연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쟁점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법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결정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이혼 이후 일방 배우자가 본인의 가입기간(타방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포함된 가입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되면 타방 배우자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분할연금 수급권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공단은 이혼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이혼 후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반납금으로 복원되는 가입기간이 혼인기간에 해당할 경우 이를 분할연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음

분할연금제도는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공단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이혼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이혼한 상태에서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기간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산입하여 분할연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례7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분할연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이혼 후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이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여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주장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27년을 살다가 이혼하고 혼인 중에 기여한 바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는데 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고 하여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쟁점

수급연령도달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전 배우자인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결정

분할연금 제도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된 경우 혼인기간 중 이혼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고려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이혼 배우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임

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권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 중일 것', '60세(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하나, 청구인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전 배우자 사망시점부터 청구인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음

사례 8

공단 착오안내를 사유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를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이를 결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공단에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를 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국민연금법(2015. 12. 29. 법률 제1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대상이 아님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의 안내에 따라 연금분할비율을 협의하여 공증을 받아 신고했는데 분할비율 별도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

쟁점

공단이 착오 안내하였음을 사유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대상이 아닌 자에게 분할비율 별도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법 제64조(2015. 12. 29. 법률 제1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구법 제64조의2(2015. 12. 29. 법률 제13642호로 개정된 것,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법 부칙(제13642호) 제1조(시행일),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적용례)

결정

청구인의 상담이력을 볼 때 공단이 착오 안내한 사실은 확인되나, 공단의 착오안내에 따라 당사자 간에 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제도는 이혼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법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착오안내를 이유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고를 인정한다면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어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정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개정법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도 맞지 않는바, 분할연금 수급권이 2016. 12. 30. 이전 발생하여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분할비율 별도결정 대상이 아니므로 분할비율 별도결정을 인정할 수 없음

사례9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진의와 다르게 연금분할비율이 결정되어 이미 신고된 분할 비율의 변경을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를 하였고, 공단은 이를 인정하였음

그 후, 청구인이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공단은 연금의 분할비율 신고는 1회만 가능함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주장

공단의 안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7:3으로 협의하였는데, 노령연금 지급총액 기준이 아닌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이 결정되어 연금이 지급되는바, 안내받은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분할비율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이미 신고된 분할비율이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진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분할비율을 정정해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법 시행규칙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결정

분할연금 산정대상이 노령연금액 전체가 아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는 공단에서 산정하기 전까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신고된 연금분할비율이 각자가 수령하기로 합의한 연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정정해주는 것이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러한 조치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연금분할비율 신고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청구인과 전 배우자 모두가 분할비율 별도결정 변경을 일관되게 요청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주장대로 분할비율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3

반환일시금

사례1

공단으로부터 미지급급여 청구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망인은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공단에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 사망 후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이 근무 중 갑자기 사망하였으나 산재처리가 거부되어 경향이 없었고,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잦은 이사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으므로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으로부터 급여 청구안내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5조(미지급 급여), 법 제77조(반환일시금), 법 제115조(시효)

결정

소멸시효제도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권리자가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것 등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미지급급여는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급여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미지급급여 수급권은 원 수급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유족이 그 미지급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미지급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음

사례2

청구인이 국외이주(외국인의 경우 본국귀환)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중국국적)은 공단에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출국예정일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출국예정일에 출국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그 후 청구인이 재입국하여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본국귀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주장

코로나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어 출국예정일보다 15일 정도 늦게 출국하였는데 공단이 출국일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주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재입국한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7조(반환일시금), 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업무처리기준】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국외이주로 인정, 1개월 이내 출국예정일 경우 사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은 최종 출국일로 함

결정

공단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출국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출국예정일을 확인한 후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출국예정일에 출국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처리기준에 부합함

이후 청구인이 재입국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일 현재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사례3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기간**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본인의 가입기간 및 예상연금액을 문의하여 공단은 청구인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임을 확인하고 반환일시금 및 노령연금에 대해 안내하였음

그 후 청구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고, 사업장에서 미납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청구인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자 공단은 청구인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임을 확인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에 문의 시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면 120개월이 충족되기 전에 청구하라고 하여 청구하였는데 사업장이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쟁점

공단에서 반환일시금 수급이 가능함을 상담받은 후 가입기간이 변동되어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상담내용을 근거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법 제77조(반환일시금)

결정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 보험관계의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사용자 또는 국가가 보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보험원리에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보험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급여는 법률에 규정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음(부산지법 2006. 11. 16. 선고 2006구합 1815 참조)

반환일시금의 지급요건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 이미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여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4

생계곤란 등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거부함

청구인의주장

장기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며, 건강보험료도 미납해 병원진료가 불가능하고 재산도 없는바, 지급연령 도달 전에 생명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생계곤란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7조(반환일시금)

결정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에 미달한 중도탈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각출료를 환급해 주는 일종의 보험급여로 사보험적 성격을 지닌 것인데, 반환일시금을 일정한 제한 없이 과도하게 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의 충족의지가 감소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강제가입이 사후 실효되어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이 노후보장 등을 대비한 사회보험이 아닌 목돈 적립을 위한 강제저축제도로 바뀌게 되며, 사회 연대성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실함은 물론, 국민연금 재정 건실화의 장애요인이 되어 장기적인 국민연금 급여를 위한 재정기반을 위협(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바15 결정)하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국민연금법상 엄격히 열거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기실직, 생계곤란 등의 사유는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5

법 개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된 청구인이 개정 전 법을 적용하여 반환 일시금을 지급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망인은 기초수급자임을 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됨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사망 시 유족연금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망인이 60세 당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주장

쟁점

법 개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된 청구인에게 개정전 법을 적용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법 제72조(2016. 5. 29., 법률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구법 제72조(2016. 5. 29., 법률제14214호로 개정된 것,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77조(반환일시금)

결정

2016. 5. 29. 개정(2016. 11. 30.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72조는 그동안 상당한 가입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자의 사망 시에도 일정한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 법 시행일 이후 사망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공단이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은 개정법 시행(2016. 11. 30.) 전이고, 망인은 개정법 시행일(2016. 11. 30.) 이후에 사망한 자로 개정법이 적용되어 사망 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음

사례6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으로 인해 전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주장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나 자녀 2인이 있어 출산크레딧으로 인해 노령연금을 수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 사정상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노령연금 수급 의사가 없음을 주장

쟁점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으로 인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된 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법 제77조(반환일시금)

결정

국민연금제도는 보험관계의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사용자 또는 국가가 보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보험원리에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보험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급여는 법률에 규정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음(부산지법 2006. 11. 16. 선고 2006구합 1815 참조)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뿐만 아니라 출산크레딧 산입을 통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출산에 의해 추가되는 가입기간과 관련하여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어 가입이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추가 가입기간 전부를 산입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출산에 의해 추가되는 가입기간으로 인하여 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 지급은 불가함

사례7

구법에 따라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법 개정에 대한 공단의 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기 전까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5년을 경과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후 공단으로부터 반환일시금 청구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반환일시금 수급을 위해 수급연령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구법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법 부칙 제16조(1998. 12. 31., 법률 제5623호, 2000. 12. 23. 개정,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 구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시효)

결정

퇴직연금등수급권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2000. 12. 23.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법률 제5623호(1998. 12. 31. 개정)의 부칙 제16조제3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므로 통상적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와 달리 공단의 개별적인 안내가 없는 경우 이를 인지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청구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공단은 반환일시금 청구 안내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급여지급연령 도달일을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 오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8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애일시보상금의 산정기초에 포함된 가입기간을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상병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으로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일 현재 장애연금 4급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사유로 지급을 거부함

그 후, 청구인은 공단에 본인의 가입이력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후에 가입기간이 없음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장애등급 4급이나 시효가 완성되어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고,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니 일시금도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시효가 완성된 장애일시보상금의 산정기초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7조(반환일시금)

【업무처리기준】장애일시금보상금의 산정기초가 된 가입기간은 일시금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지 아니함

결정

청구인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없음에도 장애일시보상금의 산정기초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가입기간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하게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장애연금 지급결정 당시 청구인은 이미 60세가 경과되어 장애연금 청구를 철회해야 반환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더라면 청구인은 실익이 없는 장애일시보상금의 청구를 철회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9

반환일시금 상당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나 사망일시금 한도액을 적용하여 지급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망인의 자녀, 망인 사망 당시 26세)은 공단에 사망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사망일시금 한도액을 지급함

※ 망인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4배를 지급

청구인의 주장

사망일시금 한도액이 아닌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한도액 지급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7조(반환일시금), 법 제80조(사망일시금)

결정

사망일시금 제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으면, 사망한 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어 가입자 간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되므로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 2. 28. 선고 2017헌마432결정 참조) 보완적 제도이며,

국민연금제도는 법률이 정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기여와 급여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험의 원리상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망일시금 한도액이 아닌 반환일시금(망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 상당액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례10

선박에서 스스로 추락한 사람의 사망일시금 소멸시효 기산일을 행방불명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으로 보지 않고, 실종선고심판확정일부터 기산한다고 결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망인의 부친으로 망인의 가입이력에 대해 공단에 사망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사망일시금 지급권이 발생(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날)한 후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이 실종되고 1달 후에 사고를 알았고, 30년 전부터 따로 살았으며 사망 관련 처리는 망인의 형이 하여 국민연금에 대해 몰랐고, 망인은 일반실종으로 5년 뒤에 사망처리가 된다고 하여 실종선고 후 연금을 신청하자 시효완성으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공단으로부터 일시금 청구에 대해 한번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선박에서 스스로 해상으로 추락한 사람의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사망일시금 지급권 발생일과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15조(사망의 추정), 법 제80조(사망일시금), 법 제115조(시효), 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결정

‘사망의 추정’은 사망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나 사망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반복할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추정력은 상실되는데, 사망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급여청구권자의 과실 없이 사망일시금 지급권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사망추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망일시금 지급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망의 추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일시금 지급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날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소멸시효는 법원의 실종선고심판확정일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례11

사망일시금 한도액이 아닌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단에 사망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이를 결정·통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망인이 납부한 금액만이라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한도액 지급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법 제80조(사망일시금)

결정

사망일시금 제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망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혜택이 전혀 없게 되어 발생하는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보완적 제도(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 2. 28. 선고 2017헌마432결정 참조)이고,

국민연금제도는 사회계층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가입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여를 한 경우라도 법률이 정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기여와 급여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험의 원리상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유족연금

사례1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기간**

처분내용

청구인(망인의 부모)은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망인과 생계유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의 장해연금이 망인 계좌로 입금되면 청구인들이 이를 인출하여 생활하였고, 망인이 채무로 인해 부친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정기적인 생계비 지원에 해당함을 주장

쟁점

망인과 청구인의 생계유지(주거를 달리하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결정

망인의 예금거래증명서에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의 은행에서 일정액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인출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부친의 입출금거래내역서상 일정 금액의 거래내역은 있으나 해당 사실이 망인이 청구인들에게 정기적인 생계비를 지원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2

청구인이 망인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생계유지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은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망인의 배우자)은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청구인과 망인이 부양관계가 없다고 판단(주소지 상이, 부양가족 계산대상 미포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은 청구인이 망인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이 아닌 점, 상당기간 주소지를 달리한 점 등을 들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주소지만 상이했을 뿐 매달 왕래가 있었고 망인의 장례식도 청구인이 치렀으며 부양가족연금액은 금액이 작아 상관하지 않았다는 주장

쟁점

망인의 노령연금에 청구인이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결정

법률혼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판결 참조)

청구인이 망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이 아니었던 점, 주소지가 상이한 점 등이 법 시행령의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함

사례3

사실상 주거를 같이하였거나 주거의 형편 등으로 인해 주거를 달리하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부친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망인의 부친)은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청구인과 생계유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주장

망인이 이혼을 한 후 청구인의 옆집에 거주하였고, 망인이 아프기 전에는 청구인에게 생계비를 통장으로 지원하였으나 망인이 투병생활을 하며 경황이 없어 생계비를 통장으로 지원하지 않고 현금 및 망인의 카드로 지원했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

쟁점

망인과 청구인의 생계유지(1.주거를 같이하거나 2.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한 경우 3.주거를 달리하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시행령 별표1

결정

망인과 청구인은 주거를 같이하다가 망인의 혼인으로 주거를 달리하게 되었고 망인 이혼 후에 청구인의 옆집(종전 망인이 거주하던 집)으로 이사를 왔으므로 명백히 주거를 달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혼 후 종전 주소지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주거의 형편 등으로 인해 주거를 달리하였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음

또한 망인 발병 전까지 망인이 청구인에게 정기적인 생계비를 지원한 점을 고려해 유족연금을 지급함

사례4

이혼 소송 확정 전 망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혼 관계임을 인정하고, 명백하게 생계 유지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은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망인의 배우자)은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과 부양관계가 없다고 판단(이혼소송 제기 등)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의 외도를 인지하자 폭력이 시작되었고 폭력을 견디지 못하여 쉼터 등에서 거주하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중이었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

쟁점

이혼소송 선고후 확정전 망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이혼소송의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해당 판결문상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결정

망인이 이혼소송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혼소송 선고 후 확정 전 망인이 사망하여 해당 판결은 유효한 판결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과 망인은 법률상 배우자이며

법률혼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판결 참조)

판결문상에 일정시점부터 망인 사망시까지 별거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망인을 가정폭력으로 2차례 신고한 점, 망인의 폭력에 대해 관련 기관에 4차례 상담한 점, 가정폭력 보호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불가피하게 별거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함

사례5

주소지가 상이하고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하였으나 배우자의 생계유지를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망인과 부양관계가 없다(주소지 상이,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주장

망인과 청구인은 집안의 경조사와 명절에 교류가 있었으며 망인이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 생계유지가 있었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

쟁점

주소지가 상이한 사실,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한 사실이 법 시행령의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법 제72조(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결정

법률혼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판결 참조)

청구인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신분관계가 인정되고, 공단의 사실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외손자를 돌보느라 거주지가 상이했다고 진술하는 점, 다른 가족들도 청구인이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망인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과 청구인 사이에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없는 경우는 아니므로 청구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함

사례6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여 망인의 모친이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발생)하여 망인의 모친(청구인)이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의 모친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사유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 청구인에게 유족연금 미지급급여를 지급함

청구인의 주장

아들, 며느리와 생활하던 중 아들이 사망하고 14일 후에는 며느리가 사망하여 며느리가 아들의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기 전 사망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쟁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법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결정

국민연금법에 유족연금은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최우선 순위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있으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였는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가 아닌 망인의 모친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7

망인의 모친이 망인과 선 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망인의 배우자)가 부양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망인의 모친)은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의 배우자가 선 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임을 사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함

청구인의주장

망인과 배우자는 1999년부터 거주지가 달랐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2차례 제기하는 등 생계유지가 없었으며, 망인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청구인에게 병원비 등을 송금하며 생계를 지원하였으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결정

법률혼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판결 참조)

망인과 배우자는 취업상 비동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거주지 인근 주민들이 주말부부로 왕래한 사실을 증언한 점, 배우자가 망인 카드로 대출받아 현재도 상환 중인 통장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이었다고 하나 가출·실종 등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청구인(망인의 모친)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8

주거의 형편 등으로 인해 주거를 달리하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모친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망인의 모친)은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망인과 생계유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이 원룸(3평)에서 거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 청구인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고, 청구인은 병원진료로 인해 다른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이를 '주거의 형편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

망인과 청구인의 생계유지(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한 경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결정

청구인과 망인이 기존에 주거를 같이한 건물은 59,93m²이며 방이 3개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 외에 청구인의 다른 자녀와 손자녀가 거주를 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망인을 포함한 4명이 함께 계속 거주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점, 망인이 동 주소지에서 전출해 사망할 때까지 거주한 주소가 약 1.4km 떨어진 인근이었던 점, 망인 사망당시 망인의 주소지는 등기부등본상 20.28m² 정도의 원룸이었고 청구인은 혼인한 다른 자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두 주소지 모두 망인과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망인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주거를 같이 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주거의 협소함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거를 같이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청구인과 2년 이상 주거를 같이 하였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망인과 청구인은 주거의 형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모친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

5

기타

사례1

환수금 독촉고지서 발송 지연을 이유로 연체금의 일부 감액을 인정한 사례 **일부인용**

처분내용

공단은 장애연금수급자인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기지급된 장애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결정함

공단은 청구인에게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이 납부되지 않자 연체금 부과를 결정하고 독촉고지서를 발송함. 이후 청구인은 공단에 환수금 분할납부를 신청함

청구인의주장

장애연금 수급 중 산재급여를 인정받아, 장애연금액의 2분의 1이 환수결정되어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에서 총당된다는 안내는 받았으나 연체금에 대한 안내는 없었으므로 연체금 부과 취소를 주장

쟁점

독촉고지서 발송지연을 이유로 부과된 연체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7조(급여의 환수), 법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법 제97조(연체금), 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시행령 제41조(환수금의 고지 등)

결정

공단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향후 연체금 발생 및 체납처분 집행의 법적 효력에 있어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기한 경과 후 익월 5일까지 환수금의 독촉고지를 발송하고 있음

공단이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후 청구인이 잔여 환수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는데, 공단이 업무처리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독촉고지서의 발송기한을 경과한 후에 독촉고지서가 발송되어 독촉고지서의 발송 지연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연체금 일부 증액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독촉고지서 발송이 지연된 날부터 청구인이 환수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날까지 부과된 연체금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2

환수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판단해 환수금 결정을 취소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후 공단이 청구인의 가입기간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가입기간을 산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당시 청구인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청구인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취소하고 지급한 반환일시금의 환수를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공단의 안내대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수급하였는데 이제와서 공단의 착오를 이유로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환수한다는 것은 부당함

쟁점

공단 전산처리 착오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7조(급여의 환수), 법 제77조(반환일시금)

결정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혹한지, 환수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사정을 살펴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처분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7. 3. 20. 선고 2015두43971판결)

반환일시금 취소사유가 공단 전산처리 착오로 발생하여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반환일시금 환수금액과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공단이 환수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환수금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3

연계신청 당시 수급연령에 대해 공단이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계 취소를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은 타공적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공단에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공적연금 연계 결정·통지하였음. 그 후 청구인은 공적연금 연계 취하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이를 거부함

청구인의주장

공적연금 연계신청 당시 수급연도가 빠른 연금에 맞춰진다는 안내에 따라 연계신청을 하였는데 국민연금 개시연도가 65세로 변경되었고, 공단의 착오 안내로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연계신청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

쟁점

연계급여의 수급연령에 대해 알지 못했음을 사유로 연계 결정·통지된 자에게 연계신청 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이라 한다) 제8조(연계의 신청 등), 연계법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연계법 제23조(심사청구), 연계법 부칙(2009. 2. 6., 제9431호) 제3조(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

결정

연계법 제정 당시 연금 간 이동자가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의 미납 외에는 취소의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에 공단은 연계 신청 결과통보서가 도달하기 전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계 신청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공단이 청구인에게 '연계 해당 결정 및 통지서 도달 후 취소 불가하고 연금의 지급시기는 국민연금제도에 맞춰진다'고 안내한 사실도 확인되는 바 공단의 착오안내를 주장하며 연계신청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례4

지급사유발생일 중의 시간적 선·후에 따라 중복급여의 조정의 적용을 달리 적용
해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탈퇴하면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자격상실일을
지급사유발생일(2020. 11. 25.)로 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을 결정·통지함

이후 청구인이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사망일(2020.
11. 24.)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이 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선택하자 미선택급여인 반환일시금을 사망일시금 상당액으로 변경
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반환일시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수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2020. 11. 24. 낮에 본인의 가입이력과 관련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 11. 24. 18:00에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하니 반환일시금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바, 법 제56조의 적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환수금 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지급사유발생일 중의 시간적 선후에 따라 중복급여의 조정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4조(연금지급 기간 및 지급시기), 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결정

청구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2020. 11. 25.)이며
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은 2020. 11. 24.이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에 2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였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을 최종보험료
납부일의 말일(2020. 10. 31.)로 변경하더라도 청구인은 2020. 11. 24.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지급연령도달전청구’ 사유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은 청구일인 2020.
11. 24.로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이 동일한 경우가 되는데 반환일시금도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의 종류에 포함되며 법 제56조의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이 되는
급여이므로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일(日)중의 특정한 때를 기준으로 수급권이 달리
결정되지 않으며 지급사유발생일 중의 시간적 선후에 따라 그 수급권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5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인 반환일시금 수급권에 대하여 사망일시금 상당액이 아닌 반환일시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본인의 가입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지급사유발생일 : 2021. 5. 18.)과 배우자 사망에 대한 유족연금(지급사유발생일 : 2021. 4. 27.) 지급을 청구하면서 유족연금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은 유족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미선택급여인 반환일시금에 대하여 사망일시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의주장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사망일시금 상당액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인 청구인에게 사망일시금 상당액이 아닌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77조(반환일시금)

구법(법률 제17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1. 6. 30. 시행) 제80조(사망일시금)

결정

청구인에게 2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여 공단은 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선택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반환일시금에 대하여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법 제5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급여에 필요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급여대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급여수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연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지급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헌법재판소 97헌마190, 2000. 6. 1. 결정 참조)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사례6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공단은 청구인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기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을 결정한 후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액과의 정산 차액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총당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 근거는 아니며 공단이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므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시에도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산정 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법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일부개정된 것, 2012. 7. 1. 시행,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노령연금액,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50조(급여지급), 법 제51조(기본연금액), 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결정

국민연금법 조문 체계상 제51조 및 제52조는 연금액의 구성요소인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각 연금종별로 지급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구 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노령연금액), 제63조제2항(조기노령연금액), 제68조제1항(장애연금액) 및 제74조제1항(유족연금액)에서는 기본연금액 외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과 제64조제2항(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서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는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및 부지급의 근거가 됨

따라서,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근거가 없는 연금급여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 법적용이라고 판단됨

사례7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기간의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주장 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2020. 11월 배우자와의 출산크레딧 합의서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녀)을 추가하는 수급권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였고, 공단은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을 소급지급함

이후 청구인은 2021. 6월 부양가족연금 대상(배우자)을 추가하는 수급권 내용변경 신고서(사유발생일 : 2014. 12월)를 제출하였고, 공단은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의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의 주장

2020. 11월 출산크레딧 합의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2020. 11월부터 역산하여 5년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급여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연금급여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처리한 공단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급여지급), 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법 제115조(시효), 법 제121조(수급권변경 등에 관한 신고), 법 시행규칙 제52조(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결정

법 제50조 및 제121조에서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수급권자는 수급권의 변경(부양가족연금 대상의 변경 등)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0. 11월 수급권 내용변경신고 시 자녀만을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신고하였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로 당연히 배우자도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더욱이 법 제115조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공단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상 명시되지 않은 지분권 개념을 도입하여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볼 때 공단의 처분이 청구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제3장 심사청구 [장애]

① 장애연금

1. 장애정도
2.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3. 기타(완치인정, 미납제한, 소멸시효 등)

01 장애연금

1

장애정도

1-1 | 논의 장애

사례1

진료기록지상 시력측정 추이 및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양안 망막색소 변성증'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1급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해 제출된 검사결과,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양안 광각무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악화소견이 인정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

청구인의 주장

장애상병의 악화로 빛도 보이지 않으며 보호자 없이 전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절 논의 장애

결정

장애진단서상 두 눈의 시력이 광각무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지 및 소견서상 시력저하로 시야검사가 불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2018. 1. 29. 및 2018. 8. 16. 망막 빛간섭단층촬영 검사(OCT)상 양안 망막 두께 등의 변화 상태, 2018. 9. 20. 시유발전위 검사(VEP)상 양안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flat response), 2018. 11. 12. 자가형광안저촬영 검사(AF) 결과상 황반부 상태, 2018. 8. 16. 및 2018. 9. 20. 진료기록지상 시력이 일관적으로 광각무로 기재된 점, 진료기록지상 질병의 진행 상태와 임상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일(2018. 10. 10.) 기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에 해당하여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함

사례2

가입 전 발생한 장애상병 '좌안 망막박리'가 현재 눈의 장애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존장애 차감 없이 장애상병 '양안 녹내장'으로 장애정도를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좌안 망막박리'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

장애상병 '우안 녹내장'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에 해당 하나 기존장애(좌안 망막박리) 차감하여 등급의 결정

청구인의 주장

1994년 00대학병원에서 좌안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고, 좌안 망막박리 수술 후 나안시력이 0.6으로 측정되었으며, 현재 좌안 실명의 원인은 망막박리가 아닌 녹내장이므로 기존장애(좌안 망막박리) 차감 없이 장애등급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기존장애(좌안 망막박리)를 포함한 현재의 장애상태에서 1등급 하향하여 인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5.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절 눈의 장애

결정

1994년 좌안 망막박리 수술 후 시력이 '97년 0.5까지 회복되었고, 이후에도 망막박리 재발이 없었음에도 좌안에 시력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좌안 시력장애의 주된 원인은 녹내장으로 인정되며, '양안 녹내장'의 초진일(2006. 6. 7.)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07. 12. 8.)의 장애정도를 기존장애에 대한 차감 없이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하고 청구일(2019. 8. 8.)의 장애정도도 동일하게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례3

악화된 시력 측정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장애상병 '좌안 각막열상'의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장애결정기준일 기준 장애정도를 등급외로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좌안 각막열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의 주장

2021. 7. 21. 측정된 최대교정시력 검사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므로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추가 제출된 최대교정시력 검사자료를 인정하여 장애등급을 상향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절 눈의 장애

결정

2019. 11. 11. 좌안 각막열상 발생하여 같은 날 좌안 유리체 및 수정체 절제술, 막박피술, 각막열상 일차봉합술 등 시행하였고, 2020. 3. 6. 좌안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 기름 제거술, 막박피술 등 시행하였음. 2021. 6. 9. 제출된 소견서 및 심사청구시 추가 제출한 2021. 7. 21. 경과기록지상 좌안의 교정시력이 안전수치(0.02 이하)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8. 31. 및 10. 19. 좌안 최대교정시력이 0.05(20/400)로 측정된 이후 좌안의 시력을 저하시킬 만한 객관적인 악화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21. 5. 12.) 및 청구일(2021. 6. 10.) 기준 장애정도는 국민연금 눈의 장애 최저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1-2 | 귀의 장애

사례1

장애상병 '좌측 만성중이염'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장애상병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등급외로 판단한 사례 **기각**

■ 처분내용

장애상병 '좌측 만성중이염'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

장애상병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기존장애가 있어 현 장애상태의 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등급외 결정

■ 청구인의 주장

1989년 당시 중이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병원에서도 수술보다는 약물치료를 권유하였고, 업무수행에도 특별한 불편 없이 지냈으며, 중이염과는 관계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새로 발생하였으므로 기존장애와 장애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바 1등급 차감 결정을 취소하고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 쟁점

현 장애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등급외로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5. 장애의 중복조정, 제2장 제2절 귀의 장애

■ 결정

1989. 6. 13. 병적기록표상 좌측 중이염 소견으로 보충역 처분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이후 제출된 2010. 10. 6. 청력검사상 양측 귀 난청이 확인되며, 2011. 3. 29. 의무기록지상 좌측 귀는 원래 잘 안들렸고, 6개월 전부터 우측 귀도 안들린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 36.6dB / 좌측 귀 51.6dB의 청력손실이 확인되는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초진일은 2010. 10. 6.로 판단됨. 2012년 3월까지의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2010. 10. 6.)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12. 4. 7.) 기준 장애정도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귀의 장애 최저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2020년 9월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상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상태로 청구일(2020. 12. 8.)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기존장애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바 기존장애를 포함한 현 장애상태의 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인정하면 등급외임

★ 감각신경성 난청(SNHL, sensorineural hearing loss) 이란?

◎ 음을 감지하는 내이, 청각 경로 및 대뇌의 청각중추에 장애가 생겨 잘 들을 수 없는 것. 들려주는 음을 크게 하는 것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잡음만 크게 들림

◎ 감각신경성 난청의 종류

- 미로염

중이강, 와우도수관, 내이도 또는 혈관을 통해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하여 발생

- 소음성 난청

한시적 역치상승과 영구적 역치상승으로 구분. 청력손실은 3000~6000Hz사이(특히 4000Hz)에서 가장 크고 8000Hz 부근에서는 다시 회복되는 V자형이며 대부분의 소음성 난청에서 양쪽 귀에 비슷한 청력도를 보임

- 돌발성 난청

돌발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심한 난청. 일반적으로 한쪽 귀에 나타나지만 드물게 양측성인 경우도 있음

- 노인성 난청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대칭적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 이독성 약물사용, 귀의 질환, 소음 노출, 귀 수술, 난청의 가족력 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으면서 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있어야 함. 주로 양측성 고주파수 손실이 두드러진 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

- 메니에르병

내이 기능 장애에 의한 난청, 현훈 및 이명을 3대 주요 증상으로 하는 질환. 초기에는 저음역에 국한된 변동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어지럼 발작이 반복됨에 따라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진행하여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중등고도의 감각신경성난청이 되며 대개는 일측성임

사례2

최대어음명료도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을 하향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어음명료도를 제외한 모든 검사결과와 3년 전보다 나빠졌고 담당 주치의의 진단 및 소견에도 청력이 나빠져 보청기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인공와우 수술을 권한 상태인 점, 공단이 담당의사의 소견이나 기타 검사결과 수치는 고려하지 않고 어음명료도 수치만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하향한 것은 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2절 귀의 장애

결정

2012. 9. 3.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초진 받은 이후 직전심사기준일(2018. 3. 8.) 기준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30% 이하인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된 이력이 있음

2021. 5. 14./ 5. 25./ 6. 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2021. 5. 25. 시행)상 좋은 청력은 70데시벨 이상으로 확인되나 어음명료도는 44%/48%/52%로 평가되어 최대어음명료도가 30% 이하인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바 정기직권재심일(2021. 5. 31.)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1-3 | 지체의 장애

사례1

기 심사 이후 장애상태 악화를 인정할 만한 추가 뇌병변 발생 등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장애상병 '뇌경색'의 장애악화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뇌경색'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2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우측 팔다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고, 간병인의 부축이 있어도 중심을 못 잡아 보행할 수 없고, 대소변가리기 불가, 인지저하 및 의사소통 불가능한 상태로 타인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 우측 팔·다리의 강직과 떨림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2016. 5월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으로 판정된 이후 추가 뇌경색 발생 등 뇌손상을 악화시킬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지마비 소견서상 우측 상/하지 근력 1~2/0~3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 8. 31. 기록지상 네발 지팡이를 이용하여 치료사의 보조하에 20m 정도 보행훈련 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2016. 5. 10. 언어평가서에 실어증지수 16에서 2017. 11. 30. 실어증지수 25.4로 호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일(2017. 10. 31.) 기준 장애정도는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로 장애등급 2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2

균형장애 및 자세 불안정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소뇌실조증'의 장애정도를 장애 등급 4급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소뇌실조증'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의주장

작년 12월 이후 혼자서 실외보행이 어려워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하고, 실내에서도 보행 보조기나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물 섭취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장애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보행이 가능하다고 결정내린 것은 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1년 6개월 경과일(2017. 2. 13.) 기준 장애정도는 2017. 3월 진료기록지상 균형 장애 소견이 있으나, 객관적인 신경학적 결손의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질병의 특성, 진행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일(2018. 2. 27.) 기준 장애정도는 2017. 12월 추가 제출된 자료상 음식물 섭취 관련 장애정도는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조증과 관련된 양하지의 미세한 위약과 보행 시 균형 장애, 자세 불안정이 관찰되며 일어서기와 계단오르내리기 등은 보조기구와 보호자의 도움이 중간 정도 이상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는바,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함

사례3

파킨슨병척도검사상 보행점수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파킨슨증후군'의 장애 정도를 4급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파킨슨증후군'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의 주장

파킨슨증후군 진단받고 몸 전체 떨림 및 어지러움으로 인해 술 취한 사람처럼 지그재그로 걷고, 엣박자 발디딤으로 넘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도움 없이는 정상보행이 힘들며, 글쓰기, 목욕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2017. 6월 진료기록지상 '어지러운 보행이 없다, 독립보행, right slowness and stiffness+(우측 약간의 서동증과 근강직)'로 기재된 점, 질환의 특성 및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17. 10. 20.)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2018년 7월 추가 제출된 자료상 직립보행 시 균형 장애 관찰되고, 단독보행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8. 5월 시행된 Unified MSA Rating Scale상 하지를 이용한 자세/자세안정/걸음걸이가 각각 2점(0~4점, 정상 0)으로, 걸음/넘어짐(지난 1개월 동안의 빈도)이 각각 3점(0~4점, 정상0)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일(2018. 5. 23.) 기준 장애정도는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상태로 인정되는바 장애등급 4급에 해당됨

사례4

족하수 상태를 고려하여 장애상병 '뇌경색'의 완치일 기준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뇌경색'의 완치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의 주장

1년 넘게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안전바가 있을 때만 안전하게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독립보행이 불가능하며, 좌측에 있는 사물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왼쪽 팔 다리가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곤 하여 식사 시에도 오른쪽에 있는 음식만 먹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청구인은 2017. 9월 좌측 소뇌 뇌경색과 우측 전두엽 부위 뇌내출혈 발생한 상태로 MBI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평가) 결과가 2018. 3월 40점에서 2018. 5월 89점으로 호전된 상태로 확인되고, MFT(뇌졸중 상지기능검사)상 우/좌 32/30(32점 만점), 2018. 6월 진료기록지상 MAS(근경직정도) 0으로 확인되나 2018. 5월 퇴원요약지 및 이후 평가지상 족하수가 있는 상태로 확인되는 점, 2018. 6월 도수근력검사상 좌측 하지 근력이 2~3등급으로 평가된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치일(2018. 9. 7.) 기준 장애정도는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로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례5

근전도 검사 및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 등을 고려하여 우측 발목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요천추부 척추협착증'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척추 수술 후 발목관절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절룩거리며 보행하고 있고, 발목관절 및 엄지 발가락을 치켜올리지 못하고 있으니 발목의 기능저하 상태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2. 다리(발가락)의 장애, 3. 척추의 장애

결정

2017. 2월 척추부 MRI상 요추 4-5번간, 요추 5번-천추간 협착증 등 진단 하에 2017. 2. 8. 요추3번부터 천추까지 후방감압술 및 고정유합술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근전도상 좌측 요추5번 신경근병증 및 천추1번 신경근병증의 불완전 손상인 점, 2018. 12. 19. 제출된 소견서상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의 1/4 이하로 감소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18. 8. 8.) 및 청구일(2018. 11. 5.) 기준 장애정도는 좌측 다리의 발목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지 않고, 요추 제3번부터 천추간 골유합술 및 고정술 시행한 상태로 요추부의 운동기능이 1/3 이상 제한된 경우로 종합하여 장애등급 4급임

사례6

근전도 검사 및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능동운동범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장애상병 '①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 ②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장애등급을 상향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①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②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완치일 및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현재 양 수부가 횡문근 용해증 및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근육 및 정중·척골 신경 손상이 있는 상태이므로 수동운동이 아닌 능동운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결정기준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5. 장애의 중복조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1. 팔(손가락)의 장애,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

결정

2018. 5월~2019. 1월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양측 정중 및 척골신경의 손상이 확인되고, 좌측 요골신경의 감각이상도 확인되며, 전기적 화상의 특성상 좌측 수부에 전원이 들어와서 우측으로 사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 화상환자의 일반적인 예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능동운동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19. 4. 16. 추가 제출된 소견서상 확인되는 양측 수부의 능동 관절운동범위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상지의 경우 장애결정기준일 기준 원처분과 동일한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되고, 좌측 상지의 경우도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되는바, 중복조정하면 장애등급 3급임

사례7

상지기능평가 및 도수근력검사상 좌측 수부의 기능 제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애 상병 '뇌경색'의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3급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뇌경색'의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뇌경색으로 인해 계단보행이 안되고 100M 거리를 약 1시간 이상 걸어야 하며, 좌측 상지의 경우 운동기능을 상실하여 쓸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2018. 9. 24.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 발생하였고, 2018. 10월~2019. 1월까지 시행한 뇌졸중 상지기능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좌측 손을 이용한 집기/입방체 옮기기/폐그보드 영역은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된 점, 2019. 3. 29. 재활평가지상 수정바델지수 67점으로 지팡이 보행하며, 경직증상으로 인해 2019. 6. 12. 좌측 상지 보텍스 주입한 점, 2019. 10. 11. 경과기록지상 상지거상 가능 수지굴신 불가, 절름보행 가능으로 기재된 점, 2020. 6. 10. 도수근력검사상 좌측 상하지 근력정도, 수정바델지수결과, 뇌영상 자료상 뇌병변 양상과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완치일(2019. 9. 25.) 및 청구일(2020. 6. 30.) 기준 장애정도는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므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함

사례8

산재에서 인정받은 장애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의 주장

근로복지공단에서 동요정도 10mm 이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 검사하였으니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2. 다리(발가락)의 장애

결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무릎관절의 동요정도 측정은 환측의 동요정도에서 건축의 동요정도를 차감하여 결정하는데, 2020. 11월 스트레스부 자료상 우측 무릎에 7.5mm, 좌측 무릎에 16.1mm의 동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좌측(환측)의 동요정도에서 우측(건축)의 동요정도를 차감하여 결정하면 좌측 무릎관절은 8.5mm의 후방동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20. 11. 14.) 및 청구일(2021. 1. 6.) 현재 장애정도는 등급외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은 그 입법목적 및 취지를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의 체계 및 판정시기, 판정기준도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의 대상은 아니며,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사례9

추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우측 골반골절 등’의 장애정도를 장애 등급 4급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우측 골반골절 등’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의 주장

2021. 2. 17. 장애정도 평가서상 ‘우측 고관절 부위에 이소성 골화가 발생하여 우측 고관절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6. 공단에서 시행한 직접진단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추가로 2021. 5. 26. 작성한 소견서와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니 이를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2. 다리(발가락)의 장애

결정

2019. 8. 12. 우측 골반골절로 인해 이소성골화증 발생하여 우측 고관절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이며, 이후 화골성 근염이 일부 진행하고 있고 위치상 제거가 어려운 곳에 있는 상태이며, 영상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고관절 굴곡과 신전운동의 제한은 요천추부의 보상으로 측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심사청구 시 추가 제출한 2021. 5. 6. CT 검사에서도 이전에 비해 이소성골화증의 진행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21. 2. 13.) 기준 장애정도는 고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자료 인정되어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됨

사례10

우측 상지의 근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뇌출혈'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을 하향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뇌출혈'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을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결정

청구인의 주장

이전에 비해 장애상태가 호전된 사실이 없고, 우측 상지를 이용해 손가락조차 들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라는 이유로 장애등급을 3급으로 하향한 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니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2016년도에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발생한 상태로 우상지를 이용한 일상동작 수행을 기능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점, 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전 심사일 기준 장애등급 2급으로 결정된 이력이 있음

이후 제출된 자료상 2018. 12월 도수근력검사에서 우측 어깨 근력등급이 Fair 등급으로 향상된 점, 2019. 5. 13. 수정바델지수 결과 73점으로 확인되는 점, 2021. 3. 3. 외래경과 기록지상 단지팡이 이용하여 실내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기재된 점, 2021. 4월 발행된 소견서상 도수근력검사 결과 우측 상지 근력 1~3등급으로 확인되는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정기직권재심일(2021. 4. 30.) 기준 장애정도는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므로 장애등급 3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1-4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사례1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장애상병 '우울증'의 증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동일등급으로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우울증'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기존과 동일한 4급으로 결정

청구인의 주장

2017년 심사 이후 각종 검사에서 입원이 필요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으나 사회공포증 등으로 외출하기가 두려워 방안에만 있으며, 다른 상병으로 진단된 자료를 추가 제출하니 이를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결정

청구인은 현재 우울증보다 중한 다른 상병(조현형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이상증상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확인되던 상병으로 2017년도 및 현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새롭게 추가된 상병은 아님. 제출된 최근 1년 동안의 기록지상 지속적으로 우울, 불안, 분노,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은 있으나, 일상생활 기능(개인위생, 식사관리 등)의 퇴행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약물 투약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전심사 기준시점(2017. 10월)과 비교하여 현재 장애상태가 유의미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일(2019. 9. 24.) 기준 장애정도는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됨

사례2

심사청구 시 추가 확보한 자료상 장애상병 '치매'의 질병 진행 양상 등을 고려하여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상향을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치매'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3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8월 중순부터 현저히 병이 악화되었고, 이상행동 증상과 이상심리 증상 등이 동반되어 집에서는 보호할 수 없어 2018. 11. 17.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현재 입원 중인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결정

2018. 8. 17. K-MMSE 16점(30점 만점), CDR 1점(0~5점, 5점이 가장 심한 상태), GDS 5점(0~7점, 7점이 가장 심한 상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사청구 시 추가 확보(제출)한 자료상 2018. 11. 17.부터 입원 중으로 확인되며, 2018. 11. 17. K-MMSE 7점, CDR 3점으로 평가된 점, 2018. 11. 26. 횡설수설하면서 대소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며, 인지기능 저하가 심하다고 기재된 점, 2018. 12. 4./ 12. 5. 자발적인 일상생활관리 및 위생관리가 잘 안된다고 기재된 점, 2018. 12. 20. 대변을 실수하는 등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기재된 점, 이후 기록지상 이상행동장애가 동반된 인지장애의 악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악화 청구일(2018. 11. 1.) 기준 장애정도는 중증 치매상태로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로 인정되므로 장애등급 2급으로 판단함

1-5 | 신장의 장애

사례

혈액투석 후 3개월 경과 전 신장이식을 시행한 상태를 고려하여 장애상병 '만성 신부전'의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만성신부전'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이식 후 장애 4급 수급권자로 지내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크레아티닌 수치가 4.0 이상으로 유지되다가 재이식에 이르렀으니 신장기능 수치가 안 좋았던 시점은 장애 3급으로, 이식 후에는 장애 4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8절 신장의 장애

결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11. 6. 17. 신장이식 수술 후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면역거부반응으로 2019. 7월 및 11월 혈청 크레아티닌(Cr) 2.99mg/dl, 4.09mg/dl로 악화되었으며, 2020. 1. 9.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나 2020. 3. 18.까지만 시행한 점, 2020. 3. 20. 신장이식술 시행하였고 이후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2020. 1. 9. 혈액투석 시작 후 3개월 경과되기 전에 이식 수술을 하였으므로 완치일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일(2020. 4. 28.) 기준 '신장을 이식 받은 자'에 해당하여 장애등급 4급임

1-6 | 혈액·조혈기의 장애

사례

수혈 주기를 고려한 혈액검사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골수이형성증'의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2급으로 상향 인정한 사례 **인용**

■ 처분내용

장애상병 '골수이형성증'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3급 결정

■ 청구인의 주장

골수이형성증으로 1~2개월을 주기로 수혈을 받고 있었으며,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수혈 주기(3~4주)가 단축되었고, 이로 인해 장애심사기준일에 혈색소량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이고, 주치의 또한 혈색소량을 소견서에 4.0g/dl미만으로 표기하였으니 이를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 관련법령(기준)

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0절 혈액·조혈기의 장애

■ 결정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은 이전 장애(직전)심사기준일 이후 골수이형성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골수이식, 면역억제치료, 표적항암제 등)를 시행하지 않고 대증요법인 수혈만 받은 상태로 확인되는바 의학적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호전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의학적으로 조혈기능의 최소 유지를 위하여 혈색소(Hb)량이 7.0g/dl미만으로 수혈을 하는 경우, 혈색소(Hb)량이 상승되어 실제 상태보다 장애상태가 호전된 상태로 평가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7년 혈색소(Hb)량은 2017. 4. 26. 5.7g/dl, 2017. 5. 31. 6.5g/dl, 2017. 8. 7. 6.7g/dl, 2017. 9. 4. 5.6g/dl이고, 2018년 혈색소(Hb)량은 2018. 7. 31. 6.6g/dl, 2018. 8. 21. 7.6g/dl, 2018. 9. 18. 7.4g/dl, 2018. 10. 23. 7.1g/dl, 2018. 11. 20. 7.1g/dl로 기록되었으나, 2017년 수혈주기는 1~2달이고 2018년 수혈주기는 3~4주인 점을 고려할 때, 장애정도를 호전으로 볼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혈액검사상의 혈색소(Hb)량의 상승은 장애상태의 호전이기보다는 규칙적인 수혈에 따른 착시현상임), 또한 3~4주 주기로 적혈구 수혈(2단위)을 통하여,

혈색소(Hb)량 7.0g/dℓ를 유지하는 자로 수혈주기와 수혈 종류를 고려하고, 2019. 2. 27. 추가 제출된 주치의 소견서상 적혈구 수혈을 통해 혈색소(Hb)량이 7.0g/dℓ정도로 호전되었다고 기록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혈색소(Hb)량은 6.0g/dℓ미만으로 판단됨

따라서, 혈색소(Hb) 및 혈소판(PLT)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심사기준일(2018. 11. 30.)의 장애정도를 판단하면, 앞서 수혈주기를 고려한 혈색소(Hb)량은 6.0g/dℓ미만이고, 혈소판수(PLT)는 2018. 7. 31. 1.3만/mm³, 2018. 8. 21. 1.3만/mm³, 2018. 9. 18. 2.4만/mm³, 2018. 10. 23. 1.6만/mm³, 2018. 11. 20. 1.4만/mm³으로 대다수의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혈소판수(PLT) 2만/mm³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 장애심사 조항기 종양군의 B표: 혈액검사상적 지표 2란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고, 진료기록지상의 일반상태는 C표 3 이상에 해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기존 장애등급과 동일한 장애등급 2급으로 판단됨

★ 골수이형성증 (MDS, Myelodysplastic Syndrome) 이란?

골수이형성증(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정상 세포충실도를 보이면서 수적 혈구감소증(cytopenia)과 형태적으로 이형성(dysmorphic)을 보이는 즉, 적절치 못한 혈구를 만들어내는 이질적인 골수의 질병군을 의미하며, 노년층 및 남성에서 많이 발생함. 명확한 원인 없이 발병한 이차성 골수이형성증과 다른 질병에 대한 방사선치료나 항암화학요법 후에 발병하는 이차성 골수이형성증으로 나눌 수 있음

◎ 진단

말초혈액과 골수 속의 미성숙한 세포인 아세포(blast)의 비율, 세포들의 이상형성(dysplasia)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분류함. 초기에는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이 나타났다가 후에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전환되기도 하며, WHO분류에 의하면 골수의 모세포(blast)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급성백혈병으로 진단함

◎ 치료

- 보존적 치료 : 수혈과 감염치료
- 항암화학치료 : 비다자(Vidaza/azacitidine), 다코젠(Dacogen/decitabine)
- 면역억제요법 : 항림프구글로불린(ATC)과 사이클로스포린을 이용한 면역억제치료가 일부 환자에 국한되어 사용
- 동종조혈모세포이식 :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1-7 | 안면의 장애

사례

안면부의 변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안면부 화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4급, 청구일 기준 등급을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 처분내용

장애상병 '안면부 화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등급 4급, 청구일 기준 등급의 결정

■ 청구인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장애급여 07급 12호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5급 1호로 결정되었는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결정 처분은 부당함

■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2절 안면의 장애

■ 결정

2014. 12. 23. 사고로 인하여 안면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이후 치료경과, 2015년 및 2017년 안면부 사진으로 확인되는 안면장애상태 등을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16. 6. 24.) 기준 장애정도는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면적기준 80cm²)의 변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고, 청구일(2020. 3. 10.) 기준 장애정도는 사고 후 2019년까지 확인되는 피부이식술 및 레이저 시술 등 치료경과와 2020. 3월 안면부 사진으로 확인되는 안면장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영구적으로 뚜렷하게 눈에 띄는 정도의 면상반흔, 조직의 비후나 함몰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급외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은 그 입법목적 및 취지를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의 체계 및 판정시기, 판정기준도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의 대상은 아니며,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1-8 |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사례1

'좌측 유방암'과 '우측 유방암'을 별개의 장애상병으로 인정하여 등급외 및 결정 보류로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우측 유방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좌측 유방암'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로 결정 보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담당 주치의도 양측에 생긴 유방암이 전이인지 새로 발생한 암인지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이로 인정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우측 유방암'과 '좌측 유방암'을 별개의 장애상병으로 인정한 공단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결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새로운 암 발생이 명백한 경우의 초진일은 새로 발생한 암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하는바, 청구인은 2016. 5월 우측 유방암 진단, 2018. 3월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2018. 4월 병리검사결과지상 양측 유방암 모두 제1병기로 확인되고, 제출된 자료상 다른 부위 등에 재발 흔적이 없으며, 2번의 수술 이후 시행한 항암치료가 보조적 항암요법(수술 후 미세전이에 의한 재발을 방지하고자 보조적으로 하는 경우)에 합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원발암으로 판단되고, 치료경과상 재발, 전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우측 유방암의 경과일(2017. 11월) 및 청구일(2018. 9월)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좌측 유방암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이 미도래하여 결정을 보류함이 타당함

사례2

전이암을 별도의 장애상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발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로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신장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 없이 사망하여 사망시점의 장애정도는 판단하지 않음)

청구인의 주장

망인은 2004. 8월 신장암 진단받고 신장절제술 후 완치되었으며, 2016년에 췌장과 폐로 전이되어 수술 및 치료 중 사망하였으므로 전이암의 초진일(2016. 1~2월경)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쟁점

신장암이 2016년도에 췌장과 폐로 전이된 상태를 별도의 장애상병으로 인정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결정

장애심사규정상 암이 전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을 원발부위 암으로 인정하고, 초진일을 원발부위 암 또는 전이암 중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함
2004년 신장암 진단 후 2004. 8월 수술(신장절제술) 시행하였고, 2016. 1월 췌장 전이된 경우로 2016. 1~3월 영상 검사상 신장암의 재발로 기재되어 있고, 2016. 6월 조직검사상 최초 신장암과 동일한 암으로 확인된바 2016. 1월 발생한 췌장암을 새로 발생한 암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장애판정기준일은 신장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인 2006. 2월로 판단되며 장애정도는 영상검사 결과 전이 또는 재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급외임

사례3

'좌측 유방암' 치료 후 다시 '좌측 유방암'이 발생하였고 이를 재발암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① 좌측 유방암'의 초진일(2011. 2. 9.)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12. 8. 10.) 및 청구일(2019. 5. 10.) 기준 등급외 결정

장애상병 '② 좌측 유방암'은 초진일(2019. 2. 11.)부터 1년 6개월 미경과로 결정보류

청구인의 주장

2011. 2. 9. 원발암 치료를 시작해 5년 동안 6개월마다 추적관찰을 하였고,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년마다 추적관찰을 하던 중 2019. 2. 11. 원발암과 같은 위치에 같은 성격의 암이 발생하여 재발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다시 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2019. 2. 11. 진단받은 '좌측 유방암'을 새로운 암으로 인정하여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결정

재발암이란 잔여암이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 후 잔여암이 다시 발견된 경우를 말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1. 2월 좌측 침윤성 유관암으로 진단된 이후 2011. 6월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 시행하였고, 2011. 7월부터 8월까지 방사선치료 후 경과관찰 하던 중 2019. 2월 동일부위에 좌측 침윤성 유관암 진단되어 광범위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조직검사상 2011년과 2019년에 발생한 좌측 유방암은 모두 침윤성 유관암으로 확인되고, 면역화학검사상 ER/PR/Her-2 음성으로 동일한바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1. 2월에 발생한 좌측 유방암이 2019. 2월에 재발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례4

잔존암이 있으나 치료경과를 고려하여 장애상병 '폐암'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등급외로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폐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등급 3급,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의주장

2014년 폐암 발병 후 감마나이프 수술 및 항암치료 시행하였고, 2018년 정기검사서 동일부위에 다시 종양이 발견되어 3차 수술을 하였으며, 이후 검사에서 사이즈가 커졌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감마나이프 수술 특성상 개인차가 커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으로 종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3급 판정시점과 같은 상태라고 판단되는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결정

2014. 9월 폐암 진단받고 2014. 10월 폐절제술 시행 후 2014. 12월~2015. 2월 항암치료 시행하였으며, 2015. 11월 1차 감마나이프 수술 후 2015. 11월 뇌전이 발생하여 2016. 4월 2차 감마나이프 수술 시행한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16. 3. 20.) 기준 장애정도는 전이암으로 수술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장애등급 3급이며, 청구일(2020. 4. 20.) 기준 장애정도는 2019. 10월, 2020. 4월 추적 관찰한 영상검사 및 진료기록지상 현재까지 전이 또는 재발소견 없이 2019. 10월 종양반응평가: SD(안정병변)로 경과 관찰 중인 점, 2015. 2월 항암치료 종료한 점, 2018. 3월 감마나이프 수술 최종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암요법 및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또는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5

항암치료 중은 아니나 질병의 진행 정도 및 약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대장암'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2급으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대장암'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3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자궁과 골반, 복막, 폐까지 전이되어 더 이상 항암효과 및 수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었고,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하는 론서프는 막대한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고가의 약물이며, 청구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항암치료를 안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하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결정

2015. 5월 간전이를 동반한 대장암 진단되어 2020. 1월까지 여러 항암화학요법 시행하였고, 2020. 4. 22. 복부-골반CT 검사상 간 전이 증가 소견이 확인되는 상태로 2020. 4. 27. 외래경과기록지상 론서프(Lonsurf)에 대해서 상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론서프의 경우 전이성 대장암에 FOLFIRI, FOLFOX 등의 항암치료가 실패한 환자한테 3차 치료로 사용하는 약제이며, 2020. 7. 19. 복부-골반CT상 이전보다 전이 부위가 더 증가된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3차 항암제는 쓰고 있지는 않지만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정기직권재심일(2020. 7. 31.) 기준 장애정도는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2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6

동일한 항암요법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폐암'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을 하향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폐암'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3급 결정

청구인의주장

이전에 비해서 암이 나아진 것도 없고 현재 보호자 없이는 생활이 안되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결정

2005년도 폐암으로 진단된 이후 다발성 전이 등으로 2018. 10. 31.부터 Lorlatinib 항암화학요법 시행 중인 상태로 직전심사기준일 기준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등급 2급으로 결정된 이력이 있음

이후 2021. 2. 17.까지의 외래 경과기록지상 동일한 항암요법 시행 중이며, 추적 관찰한 영상검사(MRI, CT, PET) 결과 질병의 재발이나 진행 소견은 없는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기직권재심일(2021. 2. 28.) 기준 장애정도는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애등급 3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2-1 | 논의 장애

사례1

초진기록, 치료경과 등에 근거하여 장애상병 '양안 녹내장'의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양안 녹내장'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가입이력) 1997. 4. 2. ~ 2006. 5. 19., 2011. 12. 8. ~ 현재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0년도에는 정상적인 눈으로 한두 번 병원 방문하였고, 실제로 시력이 나빠지게 된 2014년도로 장애상병의 초진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및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1절 논의 장애

결정

장애심사규정상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임. 2010. 1. 18. 내원하여 안압측정, 시신경유두입체검사 등을 시행하여 녹내장 의증으로 진단 후 녹내장 치료에 사용하는 잘라탄, 코숭 등의 점안액을 처방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녹내장 치료 이력이 확인되며, 2011. 4월 좌안 아래쪽 녹내장성 시야 결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기재된 점, 치료경과, 가입이력 등을 고려할 때 장애상병 '양안 녹내장'의 초진일은 2010. 1. 18.로 판단되며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례2

국민연금 가입 전 진료기록상 이미 장애상병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로 인정 되는 시력이 확인되어 가입 중 발생이 인정 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가입이력) 2006. 6. 1.~현재

청구인의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01년 병적기록부상 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5년경 그 증상이 심화되어 안과를 찾은 때를 발병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1절 눈의 장애

결정

제출된 자료상 양안의 망막변성은 망막색소변성으로 확인되는 점과 2001. 5. 2. 양안 교정시력이 각각 0.3으로 측정되었고, 2001. 5. 4. EOG/ERG상 extensive pigmentary change (OU) sparing macular로 망막색소변성증(양안) 진단되었으며, 주치의 소견서에 기재된 내용상 '교정시력 굴절검사 결과(양안 0.3), ERG상 시세포(추체, 간체)기능 감소, 지속적인 통원치료 및 정기관찰 요함'으로 기재된 점, 2001. 8. 9. 망막색소변성증으로 교정시력 양안 0.3으로 각각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심사규정 인정 요령에 따라 청구인이 최초 가입한 2006. 6. 1. 전에 망막색소변성증의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로 확인되므로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

2-2 | 귀의 장애

사례

갑자기 청력 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서서히 장애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상병 '양측 난청'의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양측 난청'으로 2001년 발행된 장애진단서상 장애정도가 '농(양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병의 특성, 가입내역을 고려 시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가입이력) 2000. 3. 17.~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갑자기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2절 귀의 장애

결정

국민연금 가입 이후 갑작스런 청력저하를 일으킬만한 질환이나 사고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2001년 7월 12일 발행된 장애진단서상 장애발생시기 '미상'이고, 장애정도가 '농(양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각장애 최초 초진일에 동 장애를 영구로 판단한 점 등과 청각관련 상병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상병인 양측 난청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난청이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

2-3 | 지체의 장애

사례1

장애상병 ‘근이영양증’의 초진일을 진료기록지상 증상이 확인되는 때로 판단한 사례 인용

■ 처분내용

제출된 2002년 6월 진료기록지상 20세 이후에 증상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가입이력) 1990. 11. 2. ~1990. 12. 31 /1995. 7. 15. ~현재

■ 청구인의 주장

2002년도에 주치의와 상담한 내용을 이유로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및 가입 중 발생 여부

■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4절 4. 사지마비의 장애

■ 결정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상 신체검사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1987년 입영하여 1990년 만기전역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2. 6. 14. 익상견갑 증상을 주호소로 내원하였고, 당시 양측 어깨 외전 근력 F~F-로 확인되어 2002. 6. 26. 근전도검사 시행하여 근육병 의증, 양측 장흉신경과 부척수신경 마비가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2. 7월 장애인복지법상 진단명 근이양증, 양상지 견관절부위 근위약으로 지체장애로 장애인등록이 되었고, 이후 근전도검사결과 안면견갑상완근이영양증으로 진단된 점 및 치료경과, 가입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20세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는 진술만으로 해당 증상이 근이영양증의 증상이었는지 여부 및 발생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애상병 ‘근이영양증’의 초진일을 2002. 6. 14.로 인정하여, 가입 중 발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2

진료기록지상 발병시기 등에 근거하여 장애상병 '경추5-6-7번 추간판탈출증 등'이 가입 중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경추5-6-7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가입이력) 2010. 7~2011. 7. / 2012. 2.~2013. 6.

청구인의 주장

국민연금 가입 중 증상이 발생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침 등의 치료를 계속하다 결국 디스크라고 들었으므로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3. 척추의 장애

결정

2011. 9. 6. 목 통증, 팔 저림 증상으로 내원하여 경추부 디스크로 진단되었고, 방사선사진상 경추 5-6번 디스크와 추간공이 좁아져 있다고 기재된 점, 2014. 2월 기록지상 발병시기는 2011. 9월로 경부통, 우측 견갑부통, 우측 상지통 등 있으며 2011. 9월 자고나니 증상 발생했다고 기재된 점, 2009. 11월~2011. 7월까지의 의무기록지상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1. 9. 6. 진료기록은 해당 장애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초진일은 2011. 9. 6.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해당상병의 발생이 청구인의 자격상실일(2011. 8. 1.) 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의학적인 근거자료는 없는 상태로 확인되는바,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2-4 | 정신·신경계통의 장애

사례

가입 전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 병력 등에 근거하여 장애상병 '조현병'이 가입 중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조현병'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가입이력) 2003. 7. 3.~현재

청구인의 주장

조현병 최초 판정은 2010년 이후이고, 이전에는 조현병 증상 없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이 가능했으며, 조현병과 조울증은 전혀 다른 질병임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결정

1996. 5월 조현병 진단 하에 입원치료 받은 점, 1996년 임상심리평가에서 정신병적 혼란과 함께 매우 심한 인지기능저하(지능지수 59)가 있었던 점은 정신병적 상태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결과이고, 2003. 5월 재입원시 정신병력이 지속된 점은 청구인의 진단이 조현병 또는 조울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현병과 조울병의 초기 증상이 유사할 수 있어 구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1996년 조현병 진단 시부터 일부 단락기간 확인되나, 유사한 임상증상으로 2012년 양극성정동장애 동반한 분열형 정동장애로 진단한 점, 치료의 연속선상에서 현재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에 이르게 한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 인정되지 않음

2-5 | 호흡기의 장애

사례

초등학생 때의 진단명 등에 근거하여 장애상병 '결핵성 파괴폐'가 가입 중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결핵성파괴폐'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가입이력) 1999. 4. 1.~현재

청구인의 주장

어릴 적 늑막염을 앓고 약 45년이 지나는 동안 감기로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고 건강하게 지내왔는데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6절 호흡기의 장애

결정

의무기록상 초등학생 때 결핵성 늑막염 진단 후 치료받았다고 기재된 점, 병적증명서상 무기폐로 전신근로역 처분을 받은 점, X-ray 등 흉부영상 검사, 폐기능 검사 상에서도 결핵성 늑막염 후유증, 무기폐 소견이 확인되는 점, 무기폐의 경우 천천히 진행되어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장애진단서상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폐기능 검사 등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보기 어려워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음

2-6 | 심장의 장애

사례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가입 전 진료내용 등에 근거하여 장애상병 '아이젠멩거 증후군'의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아이젠멩거증후군'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가입이력) 1999. 4. 1. ~ 현재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한 2005. 8. 24.로 초진일을 변경하여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7절 심장의 장애

결정

1985. 2. 6. 진료기록지상 VSD Eisenmenger(심실중격결손으로 인한 아이젠멩거증후군) 및 Dextrocardia(우심증)이 확인되고, 1997년 ~ 1998년 진료기록지에서도 VSD Eisenmenger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1998. 6. 9. 장애검진서상 심실중격결손 및 폐동맥고혈압으로 심장장애 2급 기재되어 있고, 2020. 5. 22. 발행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상 원인 상병명에 '심장중격의 기타 선천기형'이 기재되어 있으며, 치료내용 및 장애상태에 '아이젠멩거증후군으로 치료 중'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애의 원인 상병은 '아이젠멩거증후군'이고, 초진일은 1985년 이전으로 판단되므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2-7 | 신장의 장애

사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에 근거하여 장애상병 '만성신부전'이 가입 중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만성신부전'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가입이력) 1996. 12. 1.~2008. 9. 3. / 2014. 3. 27.~2018. 2. 25.

청구인의 주장

국민연금 가입 중인 2006년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1mg/dl로 확인되고, 여성은 혈청 크레아티닌의 정상범위가 0.47~0.79까지이므로 1.1mg/dl은 비정상범위에 해당되니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및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8절 신장의 장애

결정

2006. 9월~2010. 1월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1~1.4mg/dl(참고치 0.7~1.4)로 정상소견이었다가, 2010. 2. 11., 2010. 3. 23., 2010. 4. 14., 2010. 5. 12.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모두 비정상 범주로 확인되고, 이후 신장 이식 전까지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어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비정상 범주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2회 중 1회에 해당하는 때로 확인되는 2010. 2. 11.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가입이력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

2-8 | 간의 장애

사례

장애상병 '간경변'의 초진일이 속한 가입기간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처분내용

장애상병 '간경변'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가입이력) 1988. 1. 1.~1998. 12. 31.(반환일시금 지급) / 1999. 1. 1.~현재

■ 청구인의 주장

초진일 해당 기간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2017. 12월 반납하여 가입기간이 복원 되었으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

■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9절 간의 장애

■ 결정

1998. 5. 23. 기록지상 7년 전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간경변을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중인 점, 2018. 1월 식도정맥류 확인 후 2018. 2월 EVL 시행하고 2018. 4월 간이식 수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염에 인한 간경변으로 진행된 것이며, EVL과 간이식 또한 이로 인한 치료과정으로 판단되고, 기초질환으로 간염이 있던 자가 간경변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의 주된 원인 상병을 간경변으로 보고, 간경변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하는 바, 초진일은 1998. 5. 23.이고, 초진일이 속하는 가입기간에 대해 이미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2-9 |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사례

장애상병 ‘직장암’의 임상증상 발현시점 등에 근거하여 가입 중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직장암’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가입이력) 1999. 4. 1. ~ 2016. 10. 31.

청구인의 주장

타 보험 암 특약으로 1998년 11월 가입하여 직장암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 가입 당시 검사상 이상이 없었으므로 암 특약 가입이 가능했고, 1999년 5월 13일 초진 당시 배우자가 임신을 할 정도로 초진일 이전에 건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이 타당함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결정

1999. 5. 19. 항문출혈(1~2년 전) 및 항문 통증(2주전) 증상으로 별 치료 없이 지내다가 외래 통해 수술 권유받고 입원하여 1999. 5. 21. 직장절제술(Mile's op) 후 조직검사상 직장선암(adenocarcinoma) 진단받은 사실로 확인되나, 수술 직전 1999. 5. 19. 내진검사상 종양 크기가 이미 3 × 3cm인 점, 직장주변부 림프절 침범이 확인되는 점, 1999. 4. 1. 이후 직장암이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임상증상의 발현 시점과 상병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 인정되지 않음

3

기다(완치인정, 미납제한, 소멸시효 등)

3-1 | 완치인정

사례1

대장아절제술 및 하트만씨 수술을 영구적인 장루로 인정하여 장애상병 '허혈성 대장염'의 완치를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허혈성대장염'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하여 등급 판정보류

청구인의 주장

허혈성 대장염을 원인으로 2017. 8. 6. 장루수술을 하였고, 주치의 또한 복원이 어려운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였는바, 영구장애로 인정하여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으로 장애등급을 판단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루상태를 복원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하여, 완치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1절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결정

2017. 8. 2. Lap.ISR/c CAA(Staple) 수술로 영구적인 수술을 시도하였다가, 2017. 8. 6. 대장아절제술(Subtotal colectomy) 및 하트만씨 수술을 시행한 점, 수술당시 우측 대장 및 소장이 움직이지 않는 점, 장부종과 괴사가 심한 점, 과거 충수절제술등의 복부수술로 인해 장 유착이 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원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7. 8. 6. 시행한 장루수술을 영구적인 장루수술로 판단하여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2

장애상병 '경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를 인정하여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판단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경수손상'의 척추고정술 이후 6개월 경과한 완치일 기준 등급외, 사지마비의 장애는 초진일부터 1년 미경과하여 등급 판정보류

청구인의 주장

완전마비인 ASIA A임을 증명하는 근전도검사결과지, 소견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므로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정도를 완전마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척수손상의 경우 완전손상은 손상부위 이하 감각 및 운동신경의 완전마비를 말하며, 이는 손상부위부터 천수 신경까지 모든 근력과 감각이 소실된 상태를 의미하며, 천수신경의 완전손상 여부는 항문 주위 감각과 항문괄약근 기능 유무로 판단함

청구인은 2018. 8. 15. 추락으로 인한 경수손상 발생한 상태로 심사청구 시 추가 확보한 진료기록지상 지속적으로 ASIA-A 상태로 기재된 점, 2019. 1월~4월 입퇴원기록지상 양측 하지근력은 0등급이며, 항문감각 및 자발적인 항문괄약근 수축은 없음으로 기재된 점, 추가 제출한 근전도검사(SSEP)상 양측 발목에서 후경골신경 반응 없음으로 확인되며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전마비상태로 인정하여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2019. 2. 16.)을 완치일로 보아 장애등급 1급으로 인정함

사례3

치료경과 및 사망진단서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췌장암'의 완치를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췌장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 사유로 등급 판정보류

청구인의 주장

2020. 1. 22. 의사소견서상 '췌장암 진단된 자로 복막전이로 여명 6개월 미만일 것으로 판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망인의 장애상태에 대하여 완치일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인정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55조(미지급급여),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결정

2019. 5. 23. 췌장암 확진되었으며, 2019. 6월 Pancreas MRI상 간과 대동맥 부위 림프절 전이되었으나, 항암치료 거부 후 자연치료와 통증관리 등 보존적 치료만 하였으므로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등급 1급으로 완치는 인정되지 않으나, 2020. 1월 Pancreas CT상 췌장암의 크기가 증가하고, 양측 간엽과 대장 등에 새로운 전이성 병변으로 복막 전이가 확인되어 전이암으로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로 판단되며, 2020. 1월 주치의 소견서상 '상기 환자 2019. 5월 췌장암 진단된 자로 간전이, 복막전이 등으로 여명이 6개월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추가로 제출한 2020. 6. 21.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심사규정상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망 전 망인이 장애연금을 청구한 청구일(2020. 2. 21.) 기준 완치를 인정하여 장애등급 1급으로 인정함

사례4

장애상병 '양안 비에티 결절망막병증'의 치료경과 등에 근거하여 완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양안 비에티 결절망막병증'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해당 상병은 호전 가능성이 없는 질환으로 진단서 및 장애연금 지급결정문에도 재심사 예정일이 공란이고 장애인복지카드 유효기간도 제한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청구일 전 병명의 진단일을 완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인정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1절 눈의 장애

결정

2003. 7. 30. 양안 맥락망막 변성으로 진단된 상태로 2005. 12. 30. 우안 시력 0.6, 좌안 시력 0.7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05. 1. 31.)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2020. 3. 11. 교정시력 우안 0.3, 좌안 FC(안전수지)로 측정된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일(2020. 7. 6.)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임.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눈의 장애 완치일은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거나, 안구적출술, 안(구)내용물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치일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완치를 인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만 관련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 병명의 진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례 5

장애상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완치를 인정하지 않고,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미도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보류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 사유로 장애등급 판정보류

청구인의 주장

2013년 의사로부터 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완치란 질병을 완전히 고치거나 치료가 종료된 것을 의미하는데, 난청의 경우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난청에 대한 진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인정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2절 귀의 장애

결정

장애상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초진일은 2019. 12. 24.로 인정되고 청구일(2020. 11. 13.) 기준 장애정도는 양측 청력이 60데시벨 이상인 상태로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경우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을 청구일 전 완치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현재 장애정도는 더 이상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양측 귀 전농)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일 기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이 도래하지 않아 장애등급 판정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6

장애상병 '뇌출혈'의 식물인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초진일부터 1년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하여 장애등급 1급으로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뇌출혈'의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1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뇌출혈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인간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이니 이를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식물인간 상태 인정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는 초진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되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시각, 촉각 등의 자극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이거나 자발적인 행동이 없거나,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5. 8. 25. 뇌출혈 발생하였고, 2015. 12. 31. "언어적 자극(명령) 등에 대해 눈을 뜸"이라고 기재된 점, 2016. 3. 19. 언어반응("verbal response 1")이 증가했다고 기재된 점, 2016. 3. 20. "안녕하세요" 하면 반응이 확인되는 점, 2016. 6. 3. 언어결과기록지상 "일상대화를 이해한다"고 기재된 점, 2016. 6. 17. "6월 9일 언어치료를 시작한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는 식물인간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사례7

의식상태 평가기록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저산소성 뇌손상'의 식물인간 상태를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저산소성 뇌손상'의 진료기록지상 목가누기, 눈 깜박임 가능한 상태 등을 근거로 하여 식물인간 상태는 인정되지 않고, 초진일부터 1년 경과한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1급 결정

청구인의 주장

수상 직후부터 현재까지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눈맞춤 및 목가눔도 안되는 상태로 주치의 소견서에도 식물인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약관에 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기준에 해당되는 상태이니 이를 고려하여 식물인간 상태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식물인간 상태 인정 여부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

결정

2019. 11. 14.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었으며, 2019. 11월 뇌영상 자료상 광범위한 뇌손상이 확인되고, 2020. 3. 27. 의식상태 평가지(CRS-R)상 시기능 및 의사소통 기능 0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0. 4월 기록지상 식물인간 상태(vegetative status)로 기재된 점, 동월 시행한 평가지상 '치료 시간 중 눈을 뜨고 있지만 시각적 고정 및 이동은 관찰되지 않음/1단계 지시를 따르지 않음/지시, 가이드, 데모로 유도하였으나 해당하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기재된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식물인간상태 인정요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바,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완치일(2020. 5. 15.)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1급으로 인정함

3-2 | 미납제한

사례1

장애상병 '좌안 황반변성'의 초진일을 변경하고 개정법을 적용하여 수급권을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좌안 황반변성'의 초진일(2013. 3. 18.)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에 따른 수급권 미해당 결정(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기간의 2/3 미만인 경우에 해당)

청구인의 주장

2017년도에서야 황반변성으로 진단을 받았으니 초진일을 2013년이 아닌 2017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및 미납제한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국민연금법(2016. 5. 29. 개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1절 논의 장애

결정

2013. 3. 27. 까지의 OCT 소견 및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좌안 CSCR(중심장액 맥락망막병증)에 합당한 소견이며, CSCR은 질환의 특성상 재발이 잦고, 호전되면 시력이 좋아지는 질병으로, 이후 호전되어 지내던 중 2017. 7. 5. 좌안 시력저하를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촬영한 OCT검사결과 좌안 삼출성 황반변증이 확인되는바, 좌안 황반변성의 초진일은 2017. 7. 5.로 인정되고,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19. 1. 6.) 기준 장애정도는 좌안 최대교정시력 안전수동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함

초진일 기준 개정법이 적용되어 납부요건 충족으로 장애연금 수급권 인정됨

사례2

장애상병 '만성신부전'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 적용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만성신부전'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에 따른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당뇨가 있어 2011년 전부터 병원 내원하였던 적은 있으나, 신장내과 초진일은 몇 년 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2019. 6월에서야 만성 신부전으로 판정을 받고, 2019. 10. 31. 첫 투석을 시행하였으므로 초진일을 재심사하여 수급권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및 미납제한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장애심사규정 제2장 제8절 신장의 장애

결정

혈액검사결과지상 2010. 4월~2011. 9월까지 혈청 크레아티닌이 0.99~1.16 mg/dl(참고치 0.7~1.4)으로 정상범위였다가, 2011. 10. 21. 혈청 크레아티닌 1.48mg/dl(참고치 0.7~1.4), 사구체여과율 51.4ml/min로 비정상범주로 확인되며 이후 혈액검사결과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 미만인 때로 최초 확인되는 2011. 10. 21.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은 55개월이고,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총 52개월이므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55개월)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인 107개월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법 제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에 해당함

사례3

장애상병 '좌측 위팔부위 절단'에 대해 초진일 기준 (구법)연금보험료 미납제한 및 (개정법)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좌측 위팔부위 절단'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에 따른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2017. 1월부터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해주지 않았으며, 2017. 6월에 가입하고 2017. 7월이 되어서 청구인의 국민연금보험료 5개월분(2017. 2.~2017. 6)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장애가 발생한 2017. 7. 4.은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기간이었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기준 미납제한(구법) 및 납부요건(개정법) 충족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된 것) 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부칙 제4조제2항

결정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 요건'[18세 이상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①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다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결정기준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6조에 '외국인 가입자 등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초진일이 2016. 11. 30.부터 2018. 11. 29.까지 있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구 국민연금법 제67조를 보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5조에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청구인의 경우 장애상병의 초진일(2017. 7. 4.)이 18세 생일(2005. 11. 25.)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2052. 11. 24.) 사이에 존재하므로 연령요건을 충족하였고,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기간이 2017. 2. 8. ~ 2020. 7. 4.이므로 초진일이 국내 거주기간 내에 존재하여 '외국인의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에서는 ①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0개월이므로 가입대상기간인 31개월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②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또한, 구법을 적용할 경우 청구인은 최초 자격취득일인 2017. 1. 15. 이후에 초진일이 있으므로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로 인정되나 최초 연금보험료가 2017. 7. 10. 납부되었으므로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법 제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적용대상이 되므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사례4

장애상병 '조현병'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 적용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조현병'의 장애결정기준일 기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나, 초진일 기준 미납제한에 해당하여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공단에서 인정한 초진 시점인 2010년에는 단순 상담으로 병원에 들렀던 것이므로 초진일에 대해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및 미납제한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결정

청구인의 경우 수년 전부터 지속되는 불안, 두통, 현훈 등의 다발성 신체증상을 주해소로 2010. 8. 17.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하였고, 의료급여내역상 당시 상병명은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으로 확인되는 점, 이후 2010. 12월 불안, 불면 증상이 심해져 입원하였고, 2011. 5. 2. 외래 경과기록지상 환청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기재된 점, 이후 현재까지 해당 증상으로 간헐적 입원치료 및 지속적인 외래 통원치료 중인 점, 해당상병의 질환적 특성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조현병'의 초진일은 2010. 8. 17.로 인정함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39개월이고,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20개월이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법 제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적용대상에 해당함

3-3 | 소멸시효

사례

장애상병 '우안 망막박리'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애일시보상금 지분권을 소멸처분한 사례 **기각**

■ 처분내용

장애상병 '우안 망막박리'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장애일시보상금의 지분권이 청구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함

■ 청구인의주장

공단은 초진일을 1999. 10. 26.로 결정하였으나, A병원이나 B병원의 진료기록이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C병원 전원 당시 복사해두었던 B병원의 진료기록에 A병원의 진료기록 및 B병원에서 수술 전까지 시력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군복무도 만기 제대하였으며 1996년 회사 기능직 입사 당시 신체검사서도 제출하였는바, 초진일은 1999. 10. 26 B병원 진료일이 아니라 A병원이 맞으므로 다시 심사하여 줄 것과, 장애인등록 후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어 늦게 신청하였는데 이로 인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너무 억울함

■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을 1999. 10. 26.로 인정하여 장애일시보상금 지분권 소멸을 사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관련법령(기준)

법 제50조(급여지급), 법 제67조(장애연금 수급권자), 법 제71조(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115조(시효)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1절 눈의 장애

■ 결정

국민연금법 제50조에 따라 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고, 제115조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법 제71조에서는 제68조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연금수급권)를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고 지분권에 대하여만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하여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된 연금액(지분권)은 소멸 결정하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음

청구인의 경우 장애상병 '우안 망막박리'와 관련하여, 제출된 1999. 10. 26. B병원 초진기록지상 '5년전 RD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장애상병 '우안 망막박리'의 초진일은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1999. 10. 26.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01. 4. 27.) 기준 장애정도는 우안 안전수동, 좌안 1.2로 확인되므로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에 해당되어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되고, 청구일(2021. 5. 25.) 기준 장애정도는 2021. 6. 28. 교정시력 우안 광각무, 좌안 1.2로 확인되는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됨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일시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데 앞서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법 제71조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각 월마다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일로부터 역으로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된 연금급여분에 해당하는 지분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2001. 4. 27.)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연금급여분이 청구일(2021. 7. 15.)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였고, 따라서 지분권 소멸을 사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또한, 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청이 늦어져 장애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3-4 | 기타

사례1

장애상병 '골수이형성증'의 주된 임상증상에 근거하여 초진일을 변경한 사례 **인용**

■ 처분내용

장애상병 '골수이형성증'의 초진일 기준 1년 6개월 미경과 사유로 장애등급 판정보류

■ 청구인의 주장

골수이형성증의 초진일이 2019. 4. 24.로 결정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혈액수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초진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

■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여부

■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혈액·조혈기의 장애

■ 결정

건강검진에서 백·적혈구 및 혈소판 등 감소 보여, 2016. 7. 1. 범혈구감소증을 진단받았고, 정기적으로 진료받았음에도 혈구감소 지속되어 2019년 골수검사결과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확진 받았으나,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질환 특성상 무증상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질병이 진행하여 증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된 임상양상인 범혈구감소증이 시작된 시점을 초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장애상병 골수이형성증의 초진일은 혈액종양내과 최초 진료일인 2016. 7. 1.로 인정됨

사례2

정신과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우울증과 자살시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장애 연금을 지급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상병 '저산소성 뇌손상'의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나, 고의로 부상 또는 그 원인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의 주장

섬유근육통을 다년간 앓고 있어 다량의 진통제를 복용함에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극심한 전신통증 등을 호소해 왔고 이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우울증의 정도가 더욱 심해져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독거 및 음주상태에서 자해행위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주장

쟁점

자살시도와 정신과적 질환과의 인과관계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결정

사고발생 이전 정신과 최초 진료기록은 2013. 8. 14.로 확인되며, 이후 다시 초조, 불면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았고, 2014. 6. 25.을 마지막으로 정신과 진료이력은 없는 상태이나, 추가 확보한 자료상 2008년부터 사고발생 1달 전까지 약 8년간을 섬유근육통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섬유근육통의 경우 만성 통증 등으로 인해서 우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바, 2013. 1월 항우울제인 부스파 5mg, 익셀 12.5mg, 2014. 4월 부스파 20mg, 익셀 25mg, 2014. 10월 익셀캡슐 100mg으로 증량한 상태로 확인되고, 사고 직전 진료기록지상 우울감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섬유근육통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은 이력 등을 고려할 때, 2015. 12월 당시 자살시도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

사례3

추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장애상병 '간경변'의 초진일이 변경되었으나, 구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간경변'의 초진일(2018. 12. 29.) 기준 장애연금 납부요건 미충족으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가입이력) 1988. 1. 1.~1989. 11. 29./ 1999. 4. 1.~2014. 11. 10./ 2018. 5. 27.~2019. 1. 7.

청구인의 주장

2012년경 간경변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2013년부터 간경변 진단을 받았으니 그 전 기록을 추가하여 재심사하여 주기를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여부

관련법령(기준)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제2장 제9절 간의 장애

결정

2012. 8월 진료기록상 소화불량 등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간의 비대증, 지방간(대사성 의증) 등 진단 하에 약물치료 시행하였고, 추가 제출한 2013. 10월 의무기록상 간경화 소견 첨삭되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영상자료 확인되지 않으며, 2015. 1월 영상자료상 간경화 소견 인정되지 않고, 추가로 제출한 2015. 4월 상복부 내시경검사상 식도정맥류 확인되며, 2015. 10. 19. 상복부 초음파검사상 간표면의 불규칙한 변화 등이 확인되는 점, 임상증상(혈액검사결과 포함)과 치료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간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간경화의 초진일은 초음파를 통해 확인된 2015. 10. 19.로 인정되고, 국민연금 가입이력(2014. 11. 10. 자격상실, 2018. 5. 27. 재취득)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



제4장 재심사청구

- ① 자격 관리
- ② 급여 관리
- ③ 장애연금

01 자격 관리

1-1 | 내용변경

사례

국세청에서 사업장 사용자를 사업자등록일로 소급하여 실제 사용자로 변경하였고, 건강·고용보험료 등의 부과가 취소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의 사업장 내용변경(대표자 변경) 거부는 부당함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업무지침으로 사용자 변경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결정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급 내용변경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 이 건은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되었으나, 청구인의 이해를 돕고자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또한 검토함

처분내용

사용자 명의대여 관련 사용자 변경 자격변동일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업무처리기준(내부지침)을 근거로 사업장 소급 내용변경 불가 결정함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일로 사용자를 실제 사용자로 변경하였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부과가 취소되었으므로 국민연금도 소급하여 사용자를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 내용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해야 함▶ 피청구인은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명의대여 관련 사용자 변경에 따른 자격변동일을 과세행정청의 부과취소일 또는 법원 판결확정일로 처리하므로 사용자 소급변경을 거부함

쟁점

개인사업자 사용자의 명의가 대여된 경우 과세행정청의 사용자 변경일로 사업장 사용자 소급 변경 가능 여부

■ 관련 법령

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법 제108조(심사청구), 법 제110조(재심사 청구), 시행규칙 제14조, 제49조

■ 재결 결과

피청구인은 개인사업장 사용자 명의대여 관련 사용자 변경에 따른 자격변동일(명의대여자에 대한 취득일과 상실일)은 과세행정청의 부과취소일 또는 법원 판결 확정일로 하도록 업무처리 기준(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함

- 내부 지침은 법규해석 통일성과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도모를 위한 것으로, 지침의 해석 및 판단 기준을 수긍할 수 있는 경우 지침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
- 과세관청의 결정을 공단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근로자-공단 간 법률 관계 등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 요구됨

따라서, 사업장 소급내용변경(사용자 변경) 신고 거부는 업무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임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8. 14. 선고 2014두 38422판결

- 법원이 사후에 상위법령 자체를 해석하더라도 지침의 해석 및 판단 기준을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지침에 따라 처분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공단의 처분은 존중되어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85136판결

-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대여를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자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를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1-2 | 추납보험료 납부취소

사례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몰랐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납부 과정에서 하자가 없었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및 수납이 법률에 따라 하자 없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추납보험료 납부취소 요청을 거부 결정함

당사자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부분을 몰랐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제도는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 ▶ 추납신청 시 청구인이 제출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에 “추납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납보험료 납부(일부납부 포함)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됨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및 수납이 법률에 따라 하자 없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 되었으므로 공단의 추납보험료 납부취소 거부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쟁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알지 못한 상태로 신청·납부한 추납보험료의 납부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

■ 관련 법령

법 제9조(지역가입자), 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시행규칙 제62조

민법 제109조, 제111조, 행정절차법 제15조

■ 재결 결과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일단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처분은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법률관계가 형성됨

- 유효하게 형성된 행정처분을 향후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취소한다면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청구인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및 수납이 법률에 따라 하자 없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사례2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이후 추납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인정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당시 가입자가 아니며, 65세가 넘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청구인의 추후 납부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후 추납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공단의 안내가 없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함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시 가입자가 아니며, 65세가 넘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거부함

쟁점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신청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재결 결과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서 가입자는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당시 가입자가 아니며,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연령이 65세를 경과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이 불가하므로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후 납부신청이 불가함

또한 추후납부 신청 및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요건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므로,

- 청구인이 해당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피청구인의 안내가 없었더라도 청구인에게만 추후납부 신청 및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1-3 | 임의계속가입 자격 취득

사례

임의계속 가입 신청 또는 보류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음을 사유로 임의계속가입 인정을 주장하나, 60세 도달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임의계속가입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피청구인은 60세 도달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 불가를 결정함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 신청 또는 보류에 대한 안내를 했다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의계속가입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함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이후 청구하면 지급함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음

쟁점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보류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함을 이유로 60세 도달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의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조(가입대상), 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법 제77조(반환일시금), 법 부칙 제8조, 제8조의3

재결 결과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7조 제1항제1호(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음

청구인은 가입 신청 당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이므로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자격취득이 불가함

또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요건은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피청구인의 안내(우편 안내문, SMS, 전화 등을 통해서 임의계속가입 관련 안내를 함)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만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함

02 급여 관리

1

노령연금

1-1 | 노령연금

사례1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기간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로 정정된 생년월일로 인한 연금수령 기회의 일실을 주장하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생년월일 정정일 전날까지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자격상실일로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자격상실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 생년월일을 정정하였으나, 가입자 자격 유지로 인하여 정정된 생년월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한 연금 수급기회를 일실함	▶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연금수령액이 감소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를 이유로 생년월일 정정일을 기준으로 정정일 전날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을 인정함

쟁점

정정된 생년월일로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등록부의 기록절차), 제18조(등록부의 정정)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제11조(신고의무자), 제13조(정정신고),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 재결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정 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정정 전의 생년월일을 기초로 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가입자 자격이 취소되며, 이에 따라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연금수령액이 감소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그 정정일까지 가입 이력은 유효한 것으로 봄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자격상실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사례2

직원의 안내 착오로 최종 연금보험료를 법정기한 경과 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담 이력에 안내 착오는 확인되지 않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체납된 연금보험료 납부로 수급요건이 최종 충족되어 같은 날을 지급사유발생일로 노령연금 지급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 직원의 잘못된 유선 안내로 6월 연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6월 10일 통화내용을 확인하여 6월 노령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함	▶ 2020. 5월분 연금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기에 체납된 보험료 납부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지급결정이 타당함

쟁점

체납보험료 납부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사유발생일

관련 법령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법 제54조제1항에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연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5월분 연금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로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연금보험료 납부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함

국민연금은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임

- 상담 이력에 안내 착오는 확인되지 않고, 설령 보험료 납부기한에 대하여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만 법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음

사례3

추납기간 안내 착오로 연금 수급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착오한 점이 있더라도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로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 상실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노령연금 지급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 추후 납부보험료 신청 당시 납부 가능기간이 정확히 안내되었더라면 연금을 11개월 빨리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노령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함	▶ 비록 공단이 착오 안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2021. 1월에 이르러서야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하여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쟁점

추납기간 안내 착오를 사유로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법 제50조(급여지급),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구 법 제92조[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시행령 제62조

재결 결과

수급연령 도달일에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임의계속가입자 탈퇴를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 상실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정하고 있고,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짐

비록 추납 가능 개월 수에 대해 착오 안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2021. 1월에 추가납부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4

주민등록번호 오기의 귀책이 본인에게 있지 않으므로 노령연금 지분권 소멸시효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주민등록번호 오기를 본인이 인지하였음도 지연 청구한 바 노령연금 지분권 소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나지 않는 기간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만 지급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노령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주민등록 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여 정정 후 청구하도록 청구서 반려됨 ▶ 주민등록번호 착오 관리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분권이 소멸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멸된 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이 노령연금 청구 당시 주민등록번호 불일치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공단이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0.에 이르러서야 주민등록번호의 오기를 정정 노령연금을 청구함 ▶ 청구인이 권리의 발생여부를 알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권리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나중에야 비로소 마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주민등록번호 착오 관리의 귀책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음을 이유로 연금 지분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구 법 제50조[법률 제14214호로 개정(2016. 11. 30.시행)되기 전의 것] (급여지급),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 제115조(시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재결 결과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되며 지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급여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나지 않은 연금급여액만을 소급하여 지급함
- 청구인이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다른 법률상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할 이유가 없음

사례 5

지급사유발생일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하나, 연금은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한 달분)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한 달분)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령연금액 결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월액 지급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 2020. 9. 10.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이므로 국민연금 첫 수급일은 2020. 10. 10.이 되어야 하고, 법 제54조에 의해 연금은 10. 25.에 지급한다고 하나 10. 10.일부터 10. 25.까지 15일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포함해, 10월 25일 지급시 45일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함	▶ 법 제54조제1항에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2020. 9. 10.)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020. 10.)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쟁점

노령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법 제54조제1항에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민연금법 제54조제2항에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월중에 생기면 소멸일이 속하는 달까지 한 달분의 연금액을 모두 지급하므로 연금을 일할로 계산된 노령연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2 | 조기노령연금

사례1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하여 수급 중 공단의 안내 부족을 이유로 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상담 내역에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임을 사유로 미해당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 조기노령연금 청구 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라면 장애연금 청구를 하였을 것이므로 노령연금 지급을 주장함.	▶ 상담 내역에 '조기연금은 낮은 지급율로 평생지급 땀'을 안내하고, 청구인이 '괜찮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됨. ▶ 설령 청구인이 해당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 국민적 효력을 가짐.

쟁점

공단의 안내 부족을 이유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법 제50조에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1조제2항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수급연령 상황에 따라 1958년생의 경우 57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수급연령 상황에 따라 1958년생의 경우 62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기노령연금 지급 청구 당시 "평생 조기연금"이 지급됨을 안내한 것이 확인됨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해당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

사례2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의 급여 외에 업무공헌 위로금(비고정 인센티브)을 근로소득 금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따른 근로소득을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득 있는 업무종사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정산금으로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 2019. 12월 말일에 회사에서 업무공헌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비고정 인센티브 명목으로 금3,300,000원을 지급하여 소득 상한(A값)을 초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함	▶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과세관청(국세청)에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 적용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금전이 발생하였다고 이를 임의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쟁점

근로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금전(비정기 인센티브)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구 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2015. 7. 29.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3조(노령연금액),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시행령 제45조, 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된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함

- 근로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금전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법 적용을 달리할 수는 없음

2

분할연금

사례1

이혼 판결문에서 전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는 확인되나, 지급사유발생일이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분할연금 산정대상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는 개정 법 시행 전인 경우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기간은 제외하고 분할연금이 지급된 월분부터 청구인의 노령연금액 변경을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p>▶ 전 배우자가 연금형성에 기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함</p> <p>*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2016. 8. 22.</p>	<p>▶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법률에서 정하였고, 시행일(2018. 6. 20.)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쟁점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개정법 시행 전(2018. 6. 20.)에 있는 경우 혼인기간에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시행령 제45조의2, 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혼인기간에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제1항의 시행일은 2018. 6. 20.이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은 2016. 8. 22.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소할 수는 없음

■ 관련 판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238, 2018. 4. 26. 선고

- 구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면서 법률혼 기간의 산정에 있어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혼인기간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 개정법률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법원은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사례2

이혼조정조서에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었고 전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처분 취소를 주장하나, 조정조서에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둔 것만으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 청구 시 수급권 포기한 기간은 제외하고 수급하기로 한 월분 부터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조서에 '전 배우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향후 청구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음 ▶ 청구인은 현재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전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분할의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쟁점

이혼조정조서상 '재산 청산조항'에 분할연금 수급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구 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법률 제13642호, 2015. 12. 29.) 부칙 제1조, 제2조, 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법[2015. 12. 29. 법률 제13642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법(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부칙 제1조, 제2조

재결 결과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법 제64조의2에 특례를 두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2016. 12. 30.)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 건은 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조항의 시행일(2016. 12. 30.) 전 발생 건으로 적용할 수 없음

법 제64조의2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

- 이혼조정조서에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향후 청구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 내용만으로 사회보험의 일환인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례3

분할연금제도 시행일(1999.1.1.) 전에 이혼했으므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말 것과 이혼조정조서에 전 배우자가 위자료, 양육비 외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만 법 적용을 달리할 수 없고, 이혼조정조서에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액 변경을 결정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수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 12. 12. 이혼하였으며 전 배우자는 청구인에 대해 위자료, 양육비 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분할연금 조문이 1998. 12. 31.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소급적용하지 말 것을 주장함 ▶ 국민연금법<2018. 6. 20. 시행 법률 제15267호>이 2018. 6. 20.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해당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일은 2020. 9. 20.로, 1997. 12. 12. 이혼조정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 제64조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이혼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확인되지 않음

쟁점

분할연금제도 시행(1999. 1. 1.) 전 이혼한 경우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조정조서에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 양육비 외 나머지 청구는 이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시행령 제45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 재결 결과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2007. 7. 23.> 부칙 제29조에는 법<법률 제5623호> 중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는 1999. 1. 1. 이후의 노령연금 급여분부터 분할연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됨

-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20. 9. 20.인 청구인의 경우 해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됨

시행령 제45조의2는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①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②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③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된 기간, ④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함

- 이혼조정조서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확인되지 않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혼인기간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여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사례4

전 배우자와 생계유지가 없었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위자료 지급 및 재산 분할하였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은 법령에 따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만으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액에 대해 환수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배우자와 법률혼 기간 중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음 ▶ 법원의 조정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은 시행령 제45조의 2에 따른 인정된 기간만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 이혼 조정조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등 관련된 기재만 확인되고 연금의 분할과 관련한 기재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쟁점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조정조서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기재만으로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시행령 제45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자료로 인정되는 법률혼 유지기간임에도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한 기간은 법령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다름

- 분할연금 지급권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건이 되면 전 배우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조정조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내용만으로 사회보험의 일환인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례5

연금분할 비율의 별도 결정이나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분할연금에 대한 합의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수급권 포기한 기간은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수급한 월분부터 청구인의 노령연금액 변경을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는 자로 금삼천만원을 지급 받고 향후 이혼과 관련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특히 전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함 ▶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가 없었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64조의2에 따라 연금의 분할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재산분할의 협의서 등의 제출 및 신고할 수 있으나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법 제64조의2를 적용할 수 없음 ▶ 청구인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은 포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분할연금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시행령 제45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 재결 결과

분할연금액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4조의2에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연금 분할 비율이 별도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법 제64조의2를 적용할 수 없음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는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이나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함

- 청구인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함

사례6

공적자료상 확인된 거주불명기간을 실질적 혼인기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하고,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질문 등)은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에 대한 ‘법원의 재판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일부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배우자는 1994년부터 협의이혼일까지 동거, 부양, 가사 등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기간임에도 실질적 혼인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법원의 재판 등’에 공단이 조사·질문(법 제122조)의 권한을 행사하여 내린 공권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임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자료로 인정되는 법률혼 유지 기간임에도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법의 다른 조문(제122조)에서 부여한 권한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한 기간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공단에 부여되어 있지 않음

쟁점

전 배우자가 동거, 부양, 가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 규정된 ‘법원의 재판 등’에 법 제122조의 공단의 조사·질문 권한을 행사하여 내린 공권적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 법령

법 제64조(분할연금 지급권자 등), 시행령 제45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 재결 결과

국민연금법령은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만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청구인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한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확인되어야 함

참가인(전 배우자)이 2021년 11월 4일에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기간(2002. 8. 8.부터 2002. 12. 29.까지)이 존재하므로,

- 분할연금의 산정대상인 청구인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청구인은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 규정된 ‘법원의 재판 등’에 공단이 조사·질문(법 제122조)의 권한을 행사하여 내린 공권적 판단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법원의 재판 등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을 의미하며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지침은 법원의 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을 이에 합당한 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단의 조사·질문을 ‘법원의 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례7

가출, 채무 불이행 등,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액에 대해 환수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 전 배우자는 가정에 기여한 바가 없고,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을 갖춘 전 배우자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이며, 전 배우자의 채무불이행 등은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음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의 지급제한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시행령 제45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국민연금법령은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만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 청구인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한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임

전 배우자가 가출, 채무 불이행, 가정파탄의 책임 등으로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 가출,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는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례 8

법률의 무지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분할연금의 지급을 주장하나, 국민연금법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둔 취지를 고려하여 분할연금 지급거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제척기간(5년)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분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 분할연금의 제척기간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하였고, 비록 법률무지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함	▶ 분할연금은 이혼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급여 임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으로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 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쟁점

제척기간의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한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구 법[2016. 11. 30.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구 법 부칙 제3조

재결 결과

법 제64조제3항에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할연금 청구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 제도임

국민연금법이 분할연금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 규정을 달리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음

3

반환일시금

사례

국외이주를 사유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된 자에게 시행령(대통령령 제16082호) 부칙 제4항에 따른 가산이자 지급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국외이주일을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각 해당월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이자 및 가산이자를 합산하여 반환일시금 지급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 소멸시효가 완성된 반환일시금(사유:국외 이주) 이 심사청구를 통해 지급되었으나, 청구 안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082호> 부칙에 따라 출국일부터 청구일까지 가산이자를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행령<대통령령 제16082호(1999. 1. 1.시행)> 부칙에 적용되는 대상은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등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반환일시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임

쟁점

청구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외 이주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가산이자 지급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77조(반환일시금), 구 법[대통령령 제25658호(2015. 4. 16.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50조,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58호(2015. 4. 16. 시행)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구 법 부칙[법률 제5623호(1999. 1. 1.시행)로 개정된 것] 제16조, 구 법 시행령 부칙[제16082호, 1999. 1. 1. 시행] 제4조

재결 결과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6082호, 1999. 1. 1. 시행> 제4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에서 '자격상실 후 1년경과' 사유가 폐지(1999. 1. 1. 시행)되었음에도, 법 부칙<법률 제5623호, 1999. 1. 1. 시행> 제16조에 따라 한시적(2000. 12. 31.까지)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을 때 적용되었던 조항임

- 청구인에게 지급된 반환일시금(법 제77조제1항제3호)과는 관련이 없으며, 법 제50조에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유족연금

사례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된 합의서 작성 사실만으로 손해배상금 수령이라고 본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나, 제3자(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원 수령과 합의서의 내용과 성격으로 보아 유족연금 지급정지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제3자의 불법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받은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유족연금 지급 정지를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으로 보아 지급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합의서를 보면 ‘회사는 유가족 측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등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한 금품을 단순히 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쟁점

청구인이 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국민연금법상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74조(유족연금액), 법 제114조(대위권 등)

재결 결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금품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의 불법행위란 공단 및 가입자가 아닌 자에 의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합의서가 망자의 일실수익 등 민사청구채권 일체를 포함하며(중략) 등으로 작성되었고 합의된 금액을 수령하였기에 청구인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단순히 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청구인의 유족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함

5

기타

사례1

모친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나 실제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부양가족연금액 인정기준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 제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모친을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에서 제외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모친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	▶ 시행령 [별표 1]에서 부모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쟁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모친을 부양가족연금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시행령 제38조

재결 결과

법 제52조에 부양가족연금액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1]에 부모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양가족연금액 지급대상 등 인정기준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 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만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

■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81820

- 국민연금의 일종인 부양가족연금의 수급요건도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고, 다만 입법자는 위 수급요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대신, 법 제52조에서 '생계유지'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위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이어서 '생계유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할 입법재량권을 대통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임

그러므로 별표1에서 정한 생계유지의 인정기준이 명백히 자의적이어서 입법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재량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별표1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 2001. 4. 26.자 2000헌마390호 결정 등의 취지 참조)

- 생계유지의 인정기준을 단순화하여 절차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국민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비교형량에 입각한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비교형량이 명백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보이지 않음

또한, 별표1에서 생계유지의 인정기준을 '주민등록표상 세대의 동일성'으로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연금가입자들로서도 생계유지 요건을 상세히 증명할 필요 없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된 것임

사례2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어 장애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사망일시금 지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가입자의 사망 전 장애연금 지급결정 통지가 도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망일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인용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이후 납부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일시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당사자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 망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고, 자녀는 모두 만 25세 이상으로 유족연금 대상도 아닌바, 장애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함	▶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처분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바, 이미 유효하게 형성된 행정처분을 향후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철회할 수 있게 한다면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철회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쟁점

장애연금 지급결정 처분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청구인 사망 전 장애연금 지급결정 통지의 도달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0조(급여 지급),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제80조(사망일시금),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재결 결과

장애연금 지급 결정처분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어야만 처분의 효력이 생김

- 일반 우편의 일반적인 도달 기간이 4일 정도임을 고려할 때,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결정 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사망일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인용함

03 장애연금

1

장애정도

1-1 | 논의 장애

사례1

상병의 악화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측정시력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우안 각막열상'의 장애결정기준일(1년 6개월 경과일과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등급외로 판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우안 각막열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수급권 미해당 결정 (사유: 등급외)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은 우안 시력이 0.02 이하가 인정되지 않아 등급외로 통지를 받았으나,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은 등급외 판정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우안 시력 0.02 이하로 인정받음▶ 2019년 5월 사고 당시부터 장애연금 청구시점까지 측정된 시력결과상 우측 눈의 시력이 0.04로 측정된 횟수가 4번, 0.02 이하로 측정된 횟수가 12번임을 고려할 때, 0.02 이하로 측정된 비중이 75%를 차지하므로 이는 평균적인 우안 교정시력임▶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시점에 안전수동으로 측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측정된 시력을 기준으로 등급외 결정한 것은 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 5. 11. 우안 각막열상 및 안내이물 등 발생하여 2019. 8. 16. 우안 실리콘 오일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2020. 2. 5. 우안 홍채 복원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후 2020. 8. 17. 및 2020. 9. 21. 외래경과기록지상 우안 교정시력 0.04로 측정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20. 11. 20. 진단서상 우안 최대교정시력 안전수동, 좌안 최대교정시력 0.2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8. 17. 및 2020. 9. 21. 우안 교정시력이 0.04로 측정된 이후 우안의 시력 저하를 일으킬만한 객관적인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20. 11. 12.) 및 청구일(2020. 12. 8.)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은 그 입법목적 및 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의 체계 및 판정 시기도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의 대상은 되지 않음 ▶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라 전적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받아 공단이 결정하는 것이며, 자문의사의 자문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나온 장애심사 결과는 절차상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임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 법령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2020. 8. 17.과 2020. 9. 21.에 우안 교정시력이 0.04로 측정된 이후 우안의 시력 저하를 일으킬만한 객관적인 악화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 진료기록지상 2020. 9. 21일 우안 교정시력이 0.04로 측정되었으나 다음날인 2020. 9. 22일 시행한 검사에서는 우안이 안전수동으로 측정되는 등 측정의 객관성이 떨어짐
- 수술 부위 회복된 후 시력 저하가 진행할 만한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시력도 2020. 11. 12. 또는 2020. 12. 8.에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력 측정의 오차 또는 환자의 컨디션에 따른 측정 수치 변화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장애결정기준일(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는 국민연금법령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 악화되어 재청구(사후증증 청구)하였으나, 상병의 악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장애상병 '우안 망막박리'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등급외로 판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우안 망막박리'의 청구일 기준 수급권 미해당 결정(사유: 등급외)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측 주변부 망막변성 발생하여 2020. 7월 레이저 치료, 교정시력 우안 0.16, 좌안 0.125로 측정, 장애연금 청구하며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측정된 진단서 제출하였으나 미인정됨 ▶ 2020. 6. 19.과 비교하여 2020. 7. 14. 기준 좌안 최대교정시력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는 2020. 6. 21. 발생한 2차 부상 때문임 ▶ 그간 수술 및 지속적인 치료를 해왔으나 더 이상 시력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치의 진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12. 9. 시력저하로 내원하여 우안 망막박리로 진단되었고, 2018. 12. 10. 우안 열공 망막박리 수술 받았음. 2020. 6. 12. 소견서상 시력이 0.2/0.5(우/좌)로 확인되었고, 이후 좌안의 경우 2020. 7. 22. 진료기록지상 주상병에 '좌측 상세불명의 주변부 망막변성'으로 기재되었고, 2020. 7. 25. 시력은 0.2/0.2(우/좌), 2020. 8. 6. 시력은 0.16/0.125(우/좌)로 좌안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 2020. 8. 6. 안저사진 및 OCT(빛간섭단층영상) 상 망막의 시신경 상태로 볼 때 중심시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되어 시력저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악화요인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2020. 6월 이후 좌안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일(2020. 8. 6.)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장애상병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 법령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 재결 결과

2020. 8. 6. 안저사진 및 OCT(빛간섭단층영상)상 망막과 시신경 상태로 볼 때 좌안 중심시력 저하의 요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악화요인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2020. 6월 이후 좌안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음

외상으로 인해 단기간에 시력이 나빠지기 위해서는 망막 중심부의 손상 또는 시신경의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2020. 6. 21. 이후 그에 관한 진료기록도 확인할 수 없음

청구인의 장애결정기준일 현재 장애정도는 국민연금법령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3

장애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장애연금액 변경 청구를 하였으나, 의무기록 등에서 악화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불인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양안 망막색소변성'의 뚜렷한 악화조건이 인정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p>▶ 2018년 11월경 좌우 백내장 수술을 하였고, 그 후 시야와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져 2019년 11월경 우안이 실명되었으며, 전문의에 의하면 시신경 위축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 안압약, 염증약을 처방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차도가 없고, 2020년 6월경 좌안도 실명 단계에 이르러, 현재 양안이 빛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전맹 상태로 악화되어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3급으로 판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음</p>	<p>▶ 2020. 8. 25. 소견서상 시력이 양안 광각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지상 2019. 12. 4. 시력은 우안 LP, 좌안 0.3으로, 2020. 1. 8. 시력은 우안 LP, 좌안 0.4로, 2020. 4. 10. 시력은 우안 LP, 좌안 0.15로 기재되었고, 2020. 8. 25. 안저사진과 망막신경섬유층검사의 시신경 상태, 시야검사 결과지의 신뢰도 및 시야상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두 눈의 시력이 급격하게 광각무로 저하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시력 악화가 인정되지 않으며, 두 눈의 시야는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3급으로 판정함</p>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연금액 변경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 법령

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 재결 결과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빛간섭단층촬영과 안저사진 소견상 망막 두께 및 시신경섬유층 두께의 변화는 없으며, 시신경위축 소견이 명확히 관찰되고 있지 않음

- 즉, 2019년과 2020년 사이 청구인은 양안 시력 저하 진행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 소견이 없음

시력은 눈의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이므로 동공반사 등의 검사 없이 전기생리검사로만 광각무를 판단할 수는 없음

망막색소변성증은 망막의 주변부부터 손상이 시작되어 중심부로 진행되므로 중심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중심시력은 나올 수 있음

- 다만, 청구인의 양안 망막색소변성증 질환은 시간이 가며 점차 진행되는 질환으로 이후 시력저하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추가 검사를 통하여 추가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장애연금액 변경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는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1-2 | 지체의 장애

사례1

근전도검사 결과, 상병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우측 상완신경총손상, 우측 어깨 탈구 등’의 장애결정기준일(1년 6개월 경과일과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등급외로 판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우측 상완신경총손상, 우측 어깨 탈구 등’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수급권 미해당 결정(사유: 등급외)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측 3대관절을 쓸 수 없도록 남은 상태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이의가 없으나, 2019. 12. 7. 장애진단서상 우측 모든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이 50% 이상 감소된 상태로 기재되었고, 2020. 12. 23.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진단서에도 동일한 소견인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 근로복지공단에서의 행정소송에서도 우측 1,2,3,4 손가락이 50% 감소된 사람으로 산재법상 손가락 장애 7급4호로 인정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자료상 초진일은 2018년 11월 19일로 확인됨.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20년 5월 20일) 시점의 장애정도는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방사선 영상자료, 근전도 검사결과상 신경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우측 팔의 3대관절과 손가락을 각각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로 인정되지 않아 등급외로 판정함 ▶ 청구일(2021년 1월 5일) 시점의 장애정도는 제출된 소견서상 우측 팔과 손가락의 운동범위,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방사선 영상자료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어깨, 팔꿈치,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경우가 아니며, 손가락을 각각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로 인정되지 않아 등급외로 판정함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 법령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 재결 결과

청구인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2020. 12. 23.)와 함께 제출한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상 우측 제1,2,3수지의 관절운동범위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것(장애등급 4급에 해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2019. 5. 13. 및 2019. 12. 4. 근전도검사결과 액와신경과 근피신경 일부의 불완전 손상은 있으나, 수부 운동을 지배하는 정중, 요골, 척골신경은 정상소견을 보여 수부의 근력 제한이 있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2019. 12. 11. 지체 장애용 소견서상 우측 수지관절의 굴곡근과 신전근의 근력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은 그 입법목적 및 취지를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의 체계 및 판정시기 등이 상이하어 단순 비교의 대상은 아님

-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장애등급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청구인의 장애결정기준일(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는 국민연금법령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2

다리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인공관절치환의 예후가 불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좌측 무릎연골파열'의 장애결정기준일(1년 6개월 경과일과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등급외로 판정한 사례 **가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좌측 무릎연골파열'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수급권 미해당 결정(사유: 등급외)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상병 '좌측 무릎연골파열'은 극히 작은 부분이고, A병원에서 내린 판단은 근로 노동력이 없고, 양쪽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며, 왼쪽 고관절은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전체 서류를 통해 정확한 장애 진단을 내려 주기를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요양급여내역상 최초 요양일은 2002. 11. 2.이고, 이후 19일간 통원치료 한 이력이 확인되는데, 초진일은 2002. 11. 2.로 인정됨. ▶ 2003. 12. 19. 무릎에서 걸리는 소리가 사라졌다고 기재된 점, 2004. 6. 10. 소견서상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고 기재된 점, 2004. 8. 13. x-ray 영상상 운동각도, 관절면의 정도, 2004. 12. 24. 근전도검사상 말초신경 및 운동뿌리신경 손상이 없다고 기재된 점, 2005. 3. 18. 무릎 운동각도(ROM)가 full로 기재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04. 5. 3.)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 2020. 9. 7. 발행한 장애심사용 진단서상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가 80도(정상 150도)로 기재된 점, 2020. 9. 17. x-ray 운동각도, 관절면의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일(2020. 9. 9.) 현재 장애정도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 관련 법령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 재결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심사용 진단서(2020. 9. 7. 발행)상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80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정상인 150도의 약 53%(47% 감소)에 해당함

- 청구일(2020. 9. 9.) 기준 장애정도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법령상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록, 방사선 사진 등을 참고하였을 때 양측 고관절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음

1-3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사례1

정기직권재심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의 악화 소견이 있으나, 직권재심 당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는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뇌경색’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3급에서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연금액 변경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p>▶ 2011. 1. 16. 업무상재해로 쓰러져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현재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최초 장애등급 3급 결정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에 해당하므로 재심사를 주장함</p>	<p>▶ 2011년도 및 2013년도에 여러 차례 뇌경색이 발생한 상태로 직전심사기준일(2017. 2. 8.) 기준 지능지수 58, 일상동작수행 및 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된 이력이 있음. 이후 제출된 자료상 마비로 인한 기능저하와 관련하여 2020. 7. 23. 작성된 진단서에 수정바델지수 91점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확인되며, 2020. 8. 4. 시행한 심리평가 보고서 상 전체지능지수 72(경계선 수준)로 평가된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기직권재심일(2020. 5. 31.) 기준 장애정도는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p> <p>▶ 청구인은 지능지수 66으로 확인되는 심리평가 보고서(2020. 11. 19. 시행)를 심사청구 시 추가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2020. 9월 뇌출혈이 발생하여 3주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장애상태의 악화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장애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p>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 법령

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2020. 7. 23. 작성된 진단서상 수정바델지수 91점으로 기록된 점, 2020. 8. 4. 시행한 심리평가보고서상 전체지능지수 72(경계선 수준)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심사청구 당시 지능지수 66으로 확인되는 심리평가보고서(2020. 11. 19.)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2020년 9월 뇌출혈이 발생하여 3주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확인되므로, 이는 2020년 9월 발생한 뇌출혈의 영향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피청구인이 정기직권재심(2020. 5. 31. 기준) 당시 결정한 장애등급에 근거하여 행한 장애연금액 변경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 2020. 5. 31. 기준 정기직권재심 당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다만, 2020년 9월 발생한 뇌출혈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새로이 장애등급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구인의 장애상병 ‘뇌경색’으로 인한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므로 장애연금액 변경결정처분은 적법·타당함

사례2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악화 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뇌전증'의 장애결정기준일(사후중증 청구일) 기준 등급외로 판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뇌전증'의 사후중증 청구일 기준 수급권 미해당 결정(사유: 등급외)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작사고로 2018. 10. 27. 교도소 입소하여 2020. 10. 28. 출소했기 때문에 2018년까지의 A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 및 교도소 정보기록 등을 제출함 ▶ 현재는 약처방으로 멀하기는 하지만 매일 2~3 회 이상 의식이 없는 상태가 생기고 자극을 받으면 심한 발작 현상, 두뇌 압박, 우울증 등 합병증세가 심한 상태이며, 피청구인이 자료를 원하는 날짜에는 교도소 수감 중이었음을 고려하여 재심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12. 30. 작성된 진단서 및 소견서상 여러 가지 항경련제를 복용하여도 복합부분 발작이 한 달에 15회 이상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상 청구일(2021. 1. 4.) 기준 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은 2019. 12월, 2020. 10월, 2020. 12월 자료로써 해당자료에서도 뇌전증과 관련하여 정확한 발작유형, 발작횟수, 발작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장애등급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쟁점

장애상병의 사후중증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 법령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 재결 결과

교도소 수감 기간(2018. 10. 27. ~ 2020. 10. 27.)에 의무기록지상 2018년 12월경 한번 경련 발작의 기록이 있었고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음. 출소 후 진료 기록상에는 10월, 12월 진료에서 담당의가 발작 수차례 했다고 기록함

- 장애판정기준에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경증발작이 1년 중 6개월 이상 확인되어야 한다는 기준에는 합치되지 않음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일(2021. 1. 4.) 기준 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2019. 12월, 2020. 10월, 2020. 12월) 자료로써는 뇌전증과 관련하여 정확한 발작 유형, 발작 횟수, 발작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음

청구인의 장애상병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국민연금법령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뇌전증 장애상병의 특성상 향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장애 상태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악화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1-4 | 신장의 장애

사례

신장장애로 장애등급 2급인 자가 신장이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직권재심일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장애등급 4급으로 변경결정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만성신부전'의 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연금을 받다가 장애일시보상금으로 수급권이 변경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작년에 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당시 신장 재이식 수술을 할 경우 장애등급 하향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등에 대해 공단 직원이 안내를 해주지 않았기에 투석 기간에는 연금 일시 상향이 있고 재이식 후에는 과거와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장애등급 변경신청을 한 것임 ▶ 과거 신장이식 당시 장애등급 3급을 받은 이력이 있기에 과거 제도와 현 제도 중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 청구인이 받은 처분에 따른 향후 노령연금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하게 알려 줄 것을 주장함 ▶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장애연금액 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장애심사규정(개정 1999. 5. 25.)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시행 받은 자는 장애등급 3급으로 규정하나, 현행 규정(개정 2009. 11. 19.)부터는 신장을 이식받은 자를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됨 ▶ 신장의 장애로 인한 장애연금수급자가 신장 이식술을 한 경우 신장이식정보를 받아 이식 수술 일로부터 6개월 경과자를 장애재심사대상자로 발체하여 장애등급을 직권으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재심사한 것임 ▶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령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피청구인의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할 수는 없음 ▶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의 정도는 정신적·육체적 손상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님

쟁점

장애 상병의 직권재심일 기준 장애 정도

관련 법령

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2019.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6호) 제8절 신장의 장애, 장애심사규정(2009. 11. 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9-204호), 장애심사규정(개정 1999. 5. 25. 규정 제112호)

재결 결과

구 규정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 받은 자는 장애등급 3급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09. 11. 19. 개정된 규정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급으로, 신장을 이식 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하고 있음
- 피청구인은 신장의 장애로 인한 장애연금수급자가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장이식정보를 제공받아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를 발취하여 장애등급을 직권으로 재심사함.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으로 구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 3급 결정(2002. 1. 10.)을 받은 자(신장을 이식받은 자)로서, 그 장애가 악화됨에 따라 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 2급 결정(2020. 7. 28.)을 받고, 그 뒤에 신장 재 이식술(2020. 10. 7.)을 함으로써 공단이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4급으로 변경 결정(2021. 4. 8.)되었음

장애연금액의 변경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변경결정은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일인 '완치일 등'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 등'은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고시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완치일은 2021. 4. 8.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등급 변경결정에는 2021. 4. 8. 당시 시행되는 고시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국민연금이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장애심사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설령 피청구인에게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장애심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청구인의 경우에만 달리 배제할 수는 없음.

또한, 청구인의 신장재이식 수술일이 2020. 10. 7.이고,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2021. 3. 2.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1.11mg/dl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기준(혈청크레아티닌농도 4mg/dl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규정상 장애결정기준일(2021. 4. 8.) 현재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의 정도는 정신적·육체적 손상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법령에서 정한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장애등급 4급 결정 시 지급되는 장애일시보상금은 일정기간(환산기간, 67개월) 동안 매월 연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데, 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후발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후발급여를 선택하는 경우 후발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환산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의 이미 지급된 장애일시보상금 상당액을 충당(후발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 공제)한 후 후발급여를 지급함

- 환산기간이 경과한 후 후발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후발급여를 선택하는 경우 후발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후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15135, 판결

-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함.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1-5 | 간의 장애

사례

간이식 전이라도 간의 기능상실과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법령상 장애정도가 간의 장애 최저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외로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일차경화성담관염'의 청구일 기준 수급권 미해당 결정(사유: 등급외)

당사자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2008년까지 B형간염, 담관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A병원 및 B병원에서 경화성담관염, 담도협착은 간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간 내에 좁아진 담도로 인하여 담즙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간경변이 발생하였으며, 더 이상 간기능을 하지 못하여 간이식이 불가피한 상태에 이르렀음 ▶ 간이식을 하기 전과 후 모두 근로능력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일텐데 간이식 후에만 장애가 인정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움 ▶ 점수만을 측정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며, 장애연금의 취지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그로 인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치료비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혜택의 일환이라고 알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현재 건강상태, 전반적인 재정상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 5. 23. A병원에서 경화성담관염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2006. 8월 총담관 협착으로 풍선 확장술 시행하였으며, 2007. 12월 B병원에서 일차경화성담관염으로 진단되었고, 청구시점까지 반복적으로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조영술(ERCP), 내시경적 역행성 담즙배역술(ERBD) 및 담관 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황달 수치 증가 등 동반된 상태로 2017. 8월 간이식 대기자 등록된 상태로 확인되는 점, 일차경화성담관염의 반복적인 악화를 거쳐 간경변증(정확한 진단일은 확인되지 않음)이 진행된 상태로 추정되나, 기록지상 확인되는 치료 및 수술 등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간이식 대기 상태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 질환은 일차경화성담관염으로 판단됨 ▶ 일차경화성담관염의 초진일은 2006. 5. 23.로 인정하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07. 11. 24.) 및 청구일(2020. 12. 16.) 기준 장애정도는 간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이고, 혈액검사 결과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간의 장애 최저 인정기준에 해당될 만한 합병증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음

쟁점

장애 상병의 청구일 기준 장애 정도

관련 법령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일차경화성담관염(PSC)으로 진단받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조영술(ERCP)을 통한 스텐트(stent) 삽입, 담도확장술을 시행하였으나, 질환자체의 진행으로 간경변증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CT나 Sono상 명확한 판독소견이 없고, 간기능은 A표 증상중증도 1가지 소견과 B표 Child-Pugh 10점이나, 경과기록상 보행이 가능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일반상태 C표상 1번 항목에 해당됨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07. 11. 24.) 및 청구일(2020. 12. 16.) 기준 장애 정도는 장애등급 3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설령 간경변이 별도의 장애상병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간의 장애 판정기준은 동일하므로 청구일 기준(간경변의 초진일 및 장애결정기준일은 별론으로 함) 간의 장애 최저 인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의 정도는 정신적·육체적 손상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법령에서 정한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1-6 |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사례

첫 번째 암과 두 번째 암의 진단 시기, 발생 부위 등을 고려하여 후발암은 재발암이 아닌 원발암으로 보아 장애정도를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갑상선암'(초진일: 2009. 11. 8.)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수급권 미해당 결정(사유: 등급외)

장애상병 '갑상선암'(초진일: 2020. 7. 7.)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p>▶ 2009. 12월, 2020. 8월 동일한 갑상선암(동일 질병 코드)으로 수술을 하였으며,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 비교하여 재발시기가 길다는 특징이 있고, 2009년 수술 후 정기적 추적관찰(초음파·혈액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2020. 8월 수술 후 임파선 전이 발견되어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시 재발 환자라고하여 건강보험 적용되는 주사(타이로젠)를 선택할 수 없었는데 국민연금의 재발이 아니라며 장애연금 지급 불가하다는 판단을 수급할 수 없으며, 재발임을 증명하는 A병원 소견서를 추가 제출 하니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함</p>	<p>▶ 2009. 11월 우측 유두암종으로 진단되어 2009. 12. 2. 갑상선아전절제술 시행한 이후 외래 경과관찰하였고, 2018년도까지 시행한 초음파 및 혈액검사결과 유의미한 재발이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이후 2019. 6. 11. 초음파 검사상 좌측 상엽 부위의 미세석회화를 동반한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증가되어 미세침흡인검사를 권유한 상태가 확인되고, 2020. 6. 17. 세침흡인검사 시행하여 베테스다 분류법 3등급인 AUS/FLUS(불명확한 비정형세포/불명확한 여포상 병변)으로 진단되었다가, 2020. 7. 7. 타병원에서 시행한 유전자검사서에서 BRAF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확인되었고, 조직검사상 유두암종으로 확진받은 상태로 확인되는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발암보다는 각각의 원발 갑상선암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p> <p>▶ 다만, 2020. 7. 7.로 인정한 '갑상선암'의 초진일은 2019. 6. 11.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p> <p>▶ 청구인의 장애상병 '①갑상선암(초진일: 2009. 11. 8.)'과 '②갑상선암(초진일: 2020. 7. 7.)'은 각각 별개의 장애로 인정되고, '①갑상선암'의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②갑상선암'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결정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장애상병 '②갑상선암'의 초진일은 2020. 7. 7.에서 2019. 6. 11.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p>

쟁점

장애상병의 재발암 인정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2009년 11월에 진단받은 갑상선암과 2020년 7월에 진단받은 갑상선암이 모두 같은 유두암종이라는 점에서는 이전의 갑상선암이 반대편에 재발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첫 번째 갑상선암의 진단과 두 번째 갑상선암의 진단 사이의 기간이 11년으로 길었다는 점과, 초음파 검사에서 최근 좌측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증가되고 있었고, 미세석회화를 동반하고 있었던 점에서는 반대편 갑상선에 새로운 갑상선암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임
- 관련 논문에서도 (예를 들어, Surgery 잡지 2006년 Volume(Issue) 140(6). page 1043 - 1047) 갑상선 수술 후, 반대편에 발생한 갑상선암을 재발이라 정의하지 않고, 단지 반대편 갑상선암 (Contralateral papillary thyroid cancer or contralateral disease)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2009. 12월 갑상선 아전절제술 시행한 이후 2018년도까지 시행한 초음파 및 혈액검사에서 유의미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임상학적으로 원발암 수술 또는 항암·방사선 치료 이후 5년 이내에 같은 부위에 조직병리학적 특성이 같은 암이 발생한 경우를 재발암으로 보고 있는 점,
-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에서도 암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진단일로부터 5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청구인의 2020. 8월 수술한 '갑상선암'은 재발암이라기 보다는 원발 '갑상선암'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따라서, 피청구인의 장애연금 지급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함

2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2-1 | 초진일 다름

사례1

장애상병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이 국민연금 가입 전 진단되었고, 당시 최대 교정시력도 장애가 구체화·객관화된 상태로 판단되므로, 이후에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수급권 미해당 결정(사유: 가입 중 발생 불인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p>▶ 대학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인 교련과목 면제를 위한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망막색소변성증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단순한 야맹증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만 인지했고 자세한 설명은 들은 적이 없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정상적인 일반전형으로 입사하여 12년 동안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5년부터 급격한 시력저하를 느껴서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10여년간 개인사업으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완전 시력상실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 점, 장애를 숨기고 취업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도 아니며, 연금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혜택의 근본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니라고 하여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p>	<p>▶ 1985. 1. 11. A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상 망막색소변성으로 진단받고 당시 양안 최대교정시력 0.4로 확인되고, 이후 1990. 4. 4. 병적기록표상 망막색소변성으로 병역면제받았으며, 1992. 2. 9. 양안 최대교정시력 0.3, 2005. 7. 21. B병원 외래경과기록지상 양안 교정시력 0.02 이하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받고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로 처음 확인되는 1985. 1. 11.로 판단되므로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p>

쟁점

장애상병의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인정 여부

■ 관련 법령

구 법[2007.7.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법 부칙<제8541호, 2007.7.23.> 제36조,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 재결 결과

현행 장애심사규정은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을 그 질병에 대하여 진단을 받고, 장애가 구체화·객관화 되어 나쁜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이거나 중심시야 30도 이하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하도록 규정함

1985. 1. 11. A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상 망막색소변성증 진단받고 당시 최대교정시력이 양안 0.4로 측정된 이후 회복되지 않고 시력저하가 진행된 점, 청구인의 가입이력(1991. 3. 15. 최초 가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청구인의 장애상병인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은 1985. 1. 11.로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사례2

진료기록지상 검사수치가 비정상 범주로 확인된 후 지속적으로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정상 범주로 확인된 날을 초진일로 보아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만성신부전'의 수급권 미해당 결정(사유: 가입 중 발생 불인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p>▶ 2015. 3월에 당뇨족으로 입원하였고 2015. 5월부터 내분비내과의 당뇨약을 처방받아야 하기 에 정기적으로 하는 혈액검사를 2015. 7. 17.에 하였으나, 당시 주치이는 신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당뇨약과 혈압약을 처방받고 끝났으며, 이후 2016. 5월에 내분비내과 주치이의 권유로 신장내과 첫 진료를 받았고, 2020. 3월부터는 신장투석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일과 15일 차이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현재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장애연금이 꼭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함</p>	<p>▶ 제출된 혈액검사결과지상 2015. 3. 13.~2015. 4. 20. 시행한 혈청 크레아티닌 1.10~1.27mg/dl(참고치 0.6~1.3)로 정상소견이었다가, 2015. 7. 17. 혈청 크레아티닌 1.49mg/dl(참고치 0.6~1.3), 사구체여과율추정치 51ml/min으로 비정상소견이며, 이후 혈청크레아티닌이 정상범위로 확인되는 검사결과가 없는 상태로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 미만인 때로 최초 확인되는 2015. 7. 17.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p>

쟁점

장애상병의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인정 여부

관련 법령

구 법[2016.5.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 재결 결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신장의 장애에서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비정상범주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2회 중 1회에 해당하는 때 또는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 미만인 때로 인정하며,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는 우선하는 날로 인정하되, 신기능이 정상소견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초진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함

2015. 7. 17. 혈청크레아티닌 및 사구체여과율이 비정상 범주로 확인된 후 지속적으로 비가역적인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애상병인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2015. 7. 17.로 인정됨

- 2015. 3. 12. 일시적으로 Cr값이 1.46이었다가 이후 수치는 정상범주로 회복되어 그(2015. 7. 17.) 이전의 기간은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청구인의 가입이력(1999. 4. 1. ~ 2012. 1. 1., 2015. 8. 3. ~ 현재)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2-2 | 가입기간 다툼

사례

사업장가입자인 때 발생한 화재사고로 의식불명인 청구인에게, 관할 자치단체에서 사고당일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책정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당일로 소급하여 상실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중 발생한 장애로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사유: 화재로 인한 부상의 초진일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9. 16. 화재 사고당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초생활수급이 신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일에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구 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제2항은 시군구청장이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로 인한 부상의 초진일은 부상을 입은 때인 2004. 9. 16.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3. 8. 8.부터 2004. 3. 22.까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였고, 2004. 3. 23.부터 2004. 12. 31.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였으나 2004. 9. 16.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되었음이 확인되어 2005. 4. 29. 공단에서는 수급자 책정일인 2004. 9. 16.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4. 3. 14. 기초수급자 수급자격이 중지되어 중지일의 다음 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었는바, 공단은 초진일인 2004. 9. 16. 기준 가입 중이 아님을 사유로 장애연금 미해당 결정함 ▶ 공단에서 확인한 A시청의 회신(2021. 6. 22.) 문서에 2004. 9. 16.부터 2014. 3. 14.까지 청구인의 기초수급자 이력이 확인되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판단근거가 되는 공적자료의 정정없이 공단이 임의로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

쟁점

장애상병의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인정 여부

관련 법령

구 법[2007.7.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10조(지역가입자), 제14조(자격의 확인),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구 법 제8조와 제10조는 당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 제58조에 따라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함

- 법령의 문리적 해석만을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책정된 날을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004. 9. 16. 화재사고는 청구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일 때 발생하였고, 사고발생일(초진일)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것은 사고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서 청구인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한 행정청의 적극적 조치로 볼 수 있음

- 피청구인은 2005. 4. 29.에 수급자책정일인 2004. 9. 16.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한 것이 확인됨
- 청구인이 화재발생 당시 사업장가입자였음은 인정되는 사실인 바 장애연금 수급조건인 가입 중에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임

구 법 제8조제1항이 당연 사업장가입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국민연금 수급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됨

- 2011. 6. 7. 개정 법에 따라 시행일인 2011. 12. 8. 이후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동일 사건의 반복 위험 또는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됨

만약 이 사건을 기각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촘촘히 보호하고자 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도리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장애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국민연금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수급자보호를 위한 행정청의 노력이 오히려 수급자복지를 저해하게 되는 과잉행정의 문제가 남을 수 있을 것임

문리적 해석상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사회정의의 관념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을 인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3

기타

3-1 | 완치인정

사례

뇌출혈로 인한 증상의 안정성과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뇌출혈'의 수급권 미해당 결정(사유: 증상의 안정 및 고정성 불인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재활치료를 지금까지 병행하고 있으며 24시간 보호자가 케어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 2020년도에 한 달 정도 입원했을 때 물리치료가 평가한 내용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퇴원 이후에 통원치료를 해왔지만 혼자서 10초도 서 있을 수 없고, 혼자 이동도 못하는 상태인 점, 발병 당시와 현재까지 큰 차이가 없다고 치료사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진단서, 소견서, 평가서에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진단서 및 소견서를 추가 제출하므로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질환(만성신부전)으로 투석받고 있는 상태로 2019. 10. 15. 좌측 시상부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고, 2020. 7. 13. 장애인복지법상 보행불가능하며, 수정바델지수 3점인 상태로 뇌병변장애 심한 장애로 결정된 이력이 확인됨. 이후 제출된 자료상 2020. 9. 11. 수정바델지수 68점, 바퀴달린 워커 이용하여 최소한의 도움하에 120m 보행한다고 기재된 점, 2020. 10. 14. 수정바델지수 30점, 2021. 2. 10. 수정바델지수 39점으로 평가되었고, 만성신부전의 후유증상에 따라 증상의 변동성이 큰 상태,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상의 안정성 및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진일(2019. 10. 15.)부터 1년 경과한 날(2020. 10. 16.)을 완치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결정기준일(완치일) 인정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 재결 결과

일상생활동작검사(MBI: modified barthel index)상 100점 만점에 2020. 6. 12. 3점, 2020. 8. 14. 40점, 2020. 9. 11. 68점, 2020. 10. 14. 30점, 2021. 2. 10. 39점 등 3점~68점까지 변동이 있어 증상의 안정성 및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상 장애결정기준일 현재 증상의 안정성과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초진일로부터 1년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장애결정 기준일로 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함

3-2 | 미납제한

사례1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3보다 짧은 경우로 미납제한에 해당하여 청구일 기준 수급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인 2013. 7. 22.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함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꽃집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가게문을 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많은 손해와 빚을 저 꽃집을 폐업하여 고향으로 가서 쉬기도 했지만 계속 몸이 좋지 않아 2016년에 A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병실이 없어 B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가 응급 투석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투석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인 상태이며, 초진일 이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꽃집 운영이 어려워 납부를 할 수 없었으므로 미납의 고의성도 없는 점, 중간 미납보험료를 2016년도에 완납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애 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함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보험이 종료된다는 예정이나 통보가 있었어야 하며, 병명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을 살펴보면 초진일(2013. 7. 22.) 기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4개월이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20개월이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인 24개월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 제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함 ▶ 상담내역상 2016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연금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당시 초진일 기준 미납제한(징수권 소멸 포함)에 해당됨을 이미 안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병명이 확정된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상담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함

쟁점

장애상병의 미납제한 여부(구 법)

■ 관련 법령

구 법[2016.5.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 재결 결과

혈액검사결과지상 2013. 7. 22. 혈청 크레아티닌 1.2mg/dl(참고치 0.5~0.9), 사구체 여과율추정치 47ml/min으로 비정상소견이며, 이후 혈청크레아티닌이 정상범위로 확인되는 검사결과가 없는 상태이므로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 미만인 때로 최초 확인되는 2013. 7. 22.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을 살펴보면 만성신부전의 초진일(2013. 7. 22.) 기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4개월이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20개월이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인 24개월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해당함

- 구 법 제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구 법 제85조에서 초진일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장애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연금 기금의 조성에 기여도가 적은 자를 장애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는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연금보험료의 성실납부 의식 제고 및 기금의 재정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미납제한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미납제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청구인의 경우에만 달리 배제할 수는 없음

또한, 피청구인의 상담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연금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당시 초진일(2016. 4. 26.) 기준 미납제한에 해당됨을 안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병명이 확정된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한 내용이 피청구인의 상담이력에 확인되지 아니함

사례2

후발 장애상병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상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3보다 짧은 경우로 미납제한에 해당하고, 개정 법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 전(2018. 11. 29.)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로서 구 법을 적용하면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뇌경색'의 청구일 기준 수급권 미해당 결정

당사자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p>▶ 현재 장애상태가 새로운 병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야모야병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2018년도 초진일은 인정할 수 없으며, 2016년 이후에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2018년 응급 수술 후 전혀 시력이 나오지 않아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함</p>	<p>▶ 2018년 7월 발생한 뇌경색은 처음 뇌경색 발생 이후 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병변 부위도 반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년도 발생한 뇌경색과 2018년도 발생한 뇌경색은 별도의 장애상병으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2018년도 발생한 뇌경색의 초진일은 2018. 7. 24.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p> <p>▶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을 살펴보면 초진일(2018. 7. 24.)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8개월, 가입대상기간이 104개월,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납부기간은 8개월로서,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납부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함</p> <p>▶ 초진일이 부칙 제4조 경과조치에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 전(2018. 11. 29.)에 있는 경우로서 구 법 제67조제1항을 적용하면 청구인의 가입이력(2009. 10. 13. ~ 2016. 11. 8.) 기준 장애상병이 가입 중 미발생함</p>

쟁점

장애상병의 미납제한 여부 및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구 법[2016.5.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법 부칙<제14214호, 2016. 5. 29.> 제4조

■ 재결 결과

청구인의 후발 장애상병인 '뇌경색'은 선발 장애상병 '뇌경색'과 별도의 장애상병으로 인정되며 후발 장애상병 '뇌경색'의 초진일은 2018. 7. 24.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2018년 7월 발생한 뇌경색은 처음 뇌경색 발생 이후 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병변 부위도 반대임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을 살펴보면 뇌경색 초진일(2018. 7. 24.)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8개월, 가입대상기간이 104개월,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납부기간은 8개월임

-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 제67조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납부 요건【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함

법 부칙 제4조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 전(2018. 11. 29.)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구 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제1항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의 가입이력(2009. 10. 13. ~ 2016. 11. 8.) 기준 장애상병이 가입 중 미발생한 경우에 해당함

피청구인이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3-3 | 장애의 중복조정

사례1

청구일 기준 장애상병 '우안 황반변성'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기준장애로 1등급 하향하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우안 황반변성'의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p>▶ 8살 때 돌에 맞아 발생한 각막손상으로 징집면제를 받았지만, 징집면제의 원인인 각막 손상으로 치료한 A병원의 진료 기록은 보관기간 경과로 확인되지 않고, 병적증명서상 징집면제 사유로 기재된 '망막박리 또는 망막변성'은 알지도 못하는 병명이었으며, 운전 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여, 50대 이전에는 한 번도 안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50대 초반에 좌안 황반변성이 발생하였으므로, 좌안의 황반변성이 가입 전에 발생하였다고 1등급을 하향한 것은 인정할 수 없음</p>	<p>▶ 2013. 12. 24. 망막출혈 있었고, 2014. 4. 10. 시력은 우 0.4, 좌 FC(+)30cm이고, 양안에서 황반변성 확인되었으므로, 양안의 황반변성 초진일은 2014. 4. 10.이고, 2015. 9. 18. 시력은 우 0.7, 좌 0.3이고, 2015. 10. 15. 시력은 우 0.4, 좌 0.3으로 확인되므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15. 10. 11.)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p> <p>▶ 이후 망막출혈 반복되었고, 2017. 11. 24. 시력은 우 0.2, 좌 0.04이고, 2020. 2. 11. 진단서상 시력은 우 0.2, 좌 0.04로 확인되므로 청구일(2020. 2. 24.)의 장애정도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에 해당하여 장애등급 4급에 해당되나,</p> <p>▶ 좌안의 경우 1982년 병적기록표상 망막변성으로 징집면제되었고, 제출된 자료 중 최초 진료기록인 2011. 4. 5.의 좌안 시력 0.05, 2013. 12. 24. 좌안 시력 FC(안전수지)이며, 2013. 12. 24. 및 2014. 3. 13.의 상병명은 격자형 망막변성으로 확인되므로, 국민연금 가입(1999. 4. 1. 가입) 전 발생한 망막변성으로 인한 시력저하 있었고, 이후 황반변성으로 좌안 시력이 더욱 악화되었으나 시력저하의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청구일(2020. 2. 24.) 기준 장애정도는 현 장애상태(장애등급 4급)에서 기존장애(망막변성)로 1등급 하향하여 등급외로 판단함</p>

쟁점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기존 장애의 차감 인정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2014. 4. 10. 양안 황반변성과 좌안 황반반흔으로 시력은 우 0.4, 좌 FC(+)30cm이었으나, 2015. 9. 18. 시력은 우 0.7, 좌 0.3이었고 2015. 10. 15. 시력은 우 0.4, 좌 0.3으로 확인되어

-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15. 10. 11.)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2017. 11. 24. 시력은 우 0.2, 좌 0.04이고, 2020. 2. 11. 장애심사용 진단서상 시력은 우 0.2, 좌 0.04로 확인되므로

- 청구일(2020. 2. 24.)의 장애정도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에 해당하여 장애등급 4급에 해당될 수 있으나,

1982년 병적기록표상 좌안 시력 0.2, 안과정밀의뢰결과 ‘망막변성’으로 징집면제되었고, ‘황반변성’의 초진일(2014. 4. 10.) 前 진료기록에서 2011. 4. 5. 편안실명 좌안 교정시력 0.05, 2012. 4. 19. 편안실명 좌안 교정시력 0.1, 2013. 12. 24.과 2014. 1. 9. 및 2014. 3. 13.의 상병명은 ‘격자형 망막변성’으로 확인되는 바,

- ‘망막변성’은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국민연금 가입(1999. 4. 1.) 前 발생한 ‘망막변성’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 저하가 기존장애의 기준이 되는 최대교정시력 0.3 이하로 인정됨

따라서, 청구일(2020. 2. 24.)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되나 기존장애(가입 전 발생한 망막변성)로 1등급 하향하면 국민연금법령상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례2

청구일 기준 장애상병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기존장애로 1등급 하향하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p>▶ 본 청구는 청각장애 4급에 대한 청구이지 질병인 중이염에 대한 청구가 아니며, 비록 중이염과 청각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가입 전 귀의 장애 관련한 객관적 검사 또는 진단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35년 전 병역판정 신체검사상 좌측 중이염이라는 한쪽 귀의 질병을 기존장애로 특정하여 1등급 차감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한 해석인 점, 단순 질병을 기존장애로 보아 1등급 차감을 적용한다면 질병과 장애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장애연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중이염은 소아기부터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질병임에도 발병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차단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함</p>	<p>▶ 1985. 6. 25. 병적기록표상 좌측 귀 만성중이염 소견 확인되며 1992. 8. 7. A의료원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 43 dB, 좌측 귀 70 dB로 확인되는 점, 이후 1994. 1. 27. 좌측 만성중이염으로 인해 유양돌기절제술 시행한 점, 2017. 9. 15. B이비인후과의원 경과기록지상 20년 전 청력 소실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상 청력 손실은 우측 72 dB, 좌측 70 dB로 확인되는 점, 이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좌측 귀 만성중이염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고,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의 초진일은 1992. 8. 7. A의료원 초진 받은 기록으로 인정되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은 등급외로 판정되고, 청구일 시점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가입 중 발생하지 않은 좌측 귀 만성중이염으로 인해 1등급 차감하여 등급외로 판단함</p> <p>▶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장애의 중복조정 방법에 따라 가입 전에 발생한 '①좌측 만성중이염'과 가입 중에 발생한 '②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은 동일부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이고, 기존 장애('①좌측 만성중이염')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②우측 감각신경성난청')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현 장애상태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p>

쟁점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기존 장애의 차감 인정 여부

관련 법령

구 법[2007.7.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법 부칙<제8541호, 2007.7.23.> 제36조

법[2016.5.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재결 결과

1992. 8. 7. 검사상 좌측 귀의 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확인되며, 환자병력상 좌측 이루가 어릴때부터 재발하는 양상으로 기술되어 중이염 발생시기는 1992. 3. 13.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좌측 귀 만성중이염의 발생 시기는 국민연금 가입 전으로 판단되므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장 5. 장애의 중복조정에 규정된 국민연금 장애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기존 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장애 상병인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초진일은 진료기록 및 청력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1992. 8. 7.로 인정되며,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의 장애정도는 평균순음청력역치 결과 및 진료기록상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급외, 청구일(2020. 12. 14.) 시점 기존 장애를 포함한 현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장애로 보는 ‘좌측 귀 만성중이염’과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기존 장애를 포함한 현 장애 상태의 장애등급 4급(청구일 기준)에서 1등급 하향하여 등급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3-4 | 기타

사례1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때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과 청구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지대형 근디스트로피'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08. 10. 28.) 기준 등급외, 청구일(2020. 6. 29.) 기준 장애등급 2급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3. 19.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판정되어 국가에서 지정한 치료불가 중증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8호의 '완치일(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2015. 5월 지체장애 2급을 받은 진단 결과와 현재 장애연금 심사 결정 내용이 일치하고 2015년도 장애판정 기준 내용인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 전문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내용도 일치하므로 2015년을 기준으로 완치일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 ▶ 2015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을 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반영되는 연금제도를 관리, 급여 결정 및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단이 청구가 늦어진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부 근육 약화 증상으로 인하여 2007. 4. 27. 근전도검사 시행 후 2007. 5. 2. 근육생검하여 근육병증으로 진단된 상태로 확인되고, 초진일(2007. 4. 27.)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08. 10. 28.) 기준 장애정도는 제출된 자료상 장애등급에 해당될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급외로 판단함 ▶ 청구일(2020. 6. 29.) 기준 장애정도는 청구인이 제출한 2020. 6. 29. 진단서와 소견서 및 재활평가기록결과, 2020. 9. 11. 시행한 직접진단 소견서상 확인되는 양측 상하지 근력정도, 기능상태,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2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청구일 전 완치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시행령 제46조, 장애심사규정

■ 재결 결과

청구인은 2007. 4. 27. 근전도검사, 2007. 5. 2. 근육생검에서 근육병증 진단되어 초진일은 2007. 4. 27.로 인정됨

근육의 약화와 위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동 상병의 특성 및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일 전 국민연금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치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지대형 근디스트로피’의 초진일(2007. 4. 27.)부터 1년 6개월 경과일(2008. 10. 28.)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일(2020. 6. 29.)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결정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피청구인의 상담/안내 이력에 따르면 2015. 8. 10. / 2016. 8. 4. / 2017. 9. 5. / 2018. 9. 11. / 2019. 8. 2. 장애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급여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문이 포함된 ‘가입내역안내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된 것으로 기재됨

- 설령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 하여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2.10.14. 선고 2002두7258 판결 등 참조)

사례2

장애연금 수급권자에는 장애등급 4급도 포함되므로, 장애등급 4급에서 3급으로 변경된 때에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새로운 수급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장애연금액 산정시 기본연금액은 재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처분내용

장애상병 '파킨슨병'의 청구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4급에서 3급으로 장애연금액 변경 결정

당사자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악화가 존재하는 상태로는 장애연금액의 변경 청구권만 보유하는 것일 뿐이고 공단이 장애 재심사를 거쳐 등급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만 변경된 등급에 따른 장애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 바, 장애등급 변경 결정으로 변경 전 등급에 따른 수급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변경 후 등급에 따른 새로운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애연금액 변경사유발생일(2020. 5. 22.)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재산정하여 변경된 장애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기본연금액을 장애연금액 변경사유발생일에 재산정하지 않을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기존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예: 3급에서 2급)와 변경사유발생일에 동일한 장애등급이 새롭게 결정된 경우(예: 최초 2급)를 비교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장애연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법 제67조와 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연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애등급 4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 제70조는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 완치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각 호의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연금액의 결정 역시 위 각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미 결정된 장애연금액(최초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청구인은 장애연금 4급 수급권자로서, 수급권자의 지위에서 동일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 청구한 것으로 법 제70조의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연금액 변경 시 기본연금액 재산정 여부

관련 법령

법 제51조(기본연금액),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68조(장애연금액), 법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법 제71조(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재결 결과

장애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4장제3절(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에서는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제7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소멸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장애연금 수급권은 피청구인의 직권 심사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른 심사 결과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특히 연금 수급권의 소멸은 법정 사유에 따라 권리가 일방적으로 박탈되는 것이므로 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제75조) 및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제79조)과 같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 법 제71조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등급 및 장애연금액 변경이 결정된 것을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고 새로운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음

법 제69조에서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併合)한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 종전 장애 정도가 변경 또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종전 장애연금 수급권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병합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 장애연금액 변경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최초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이후, 이전보다 낮은 소득으로 추가 가입기간을 늘린 사람의 경우 B값 하락으로 오히려 기본연금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임

법 제68조제2항에서 장애등급 4급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68조의 제목이 '장애연금액'인 점,

- 장애등급 4급에 대해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직권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아닌 1회에 한해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이며, 이런 사유로 장애 호전시 연금액 감액을 위한 정기직권 재심사가 불필요하며 장애가 악화되면 본인이 직접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 법 제71조에 따르면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40%를 12로 나눈 금액이 6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임

II

관련규정





제5장 관련규정

- ① 국민연금법
- ② 국민연금심사위원회운영규정
- ③ 이의신청위원회 운영예규
- ④ 행정심판법
- ⑤ 민법

01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p>제108조【심사청구】</p> <p>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p>	<p>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p> <p>①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심사청구의 연월일 7.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8. 첨부 서류의 표시 <p>②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p> <p>③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덧붙여야 한다.</p>	<p>제48조【심사청구】</p> <p>법 제108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p>제10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p> <p>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p> <p>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5.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p>제90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p> <p>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9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p> <p>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92조【심사위원회의 회의】</p> <p>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p> <p>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93조【간사】</p> <p>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p> <p>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p>제94조【수당】</p> <p>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5조【보정】</p> <p>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충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하여 바로잡을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바로잡으면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96조【증거 제출】</p> <p>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문서, 장부, 물건, 그 밖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97조【감정 의뢰】</p> <p>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p> <p>제98조【심사청구의 취하】</p> <p>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p>제99조【결정】</p> <p>① 공단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p> <p>②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p> <p>③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p> <p>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야 한다.</p> <p>제100조【결정기간】</p> <p>①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③ 제95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101조【결정의 방식】</p> <p>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p>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p> <p>3. 결정의 주문(主文)</p> <p>4. 심사청구의 취지</p> <p>5. 결정의 이유</p> <p>6. 결정의 연월일</p> <p>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p> <p>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제102조의2【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p> <p>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징수심사위원회(이하 "징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징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업업인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p>제110조【재심사청구】</p> <p>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④ 징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본다.</p> <p>⑤ 징수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본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제103조【재심사청구의 방식】</p> <p>법 제110조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 <p>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p>	<p>제49조【재심사청구】</p> <p>① 법 제110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p>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p> <p>①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p>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p> <p>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으로 한다.</p> <p>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p> <p>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p> <p>②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p>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p> <p>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p> <p>②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p>	<p>제107조【간사】</p> <p>① 재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제108조【수당】</p> <p>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p> <p>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p>	



02 국민연금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전문개정 2006. 6. 9. 규정 제243호
개정 2007. 8. 30. 규정 제267호
변경 2007. 9. 10. 정관 제 10차(정관)
개정 2008. 1. 23. 규정 제280호
개정 2010. 4. 22. 규정 제313호
개정 2011. 6. 15. 규정 제332호
개정 2012. 11. 22. 규정 제359호
개정 2013. 11. 26. 규정 제389호
개정 2014. 4. 22. 규정 제399호
개정 2016. 12. 28. 규정 제450호(직제규정)
개정 2020. 12. 21. 규정 제535호
개정 2022. 9. 16. 규정 제57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연금법」제10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위임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청구서 접수 및 이송) ①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② 심사청구의 불복대상이 된 처분을 한 지사(이하 “처분지사”라 한다) 이외의 지사에서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처분지사로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③ 처분지사에서는 심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와 관련 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업무 주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송은 자료를 전자화하여 공단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접수된 심사청구가 다른 기관 소관의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16.>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2. 9. 16.>

제3조(대리청구 등) ①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2022. 9. 16.>

② 다수의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대표자선정서), 위임인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③ 청구인이 우편으로 심사청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제4조(위원장) ①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연금이사로 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9. 16.>

③ 위원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지정할 때 특정 위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공단 이사장은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때 그 직을 상실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2. 9. 16.> <개정 2022. 9. 1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위촉 자격에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추천 단체·기관에서 해촉을 요청한 경우

3. 위원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해촉을 통보한 때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신설 2022. 9. 16.>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9. 16.>

② 신규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심사청구업무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모든 위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③ 위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촉기간 동안 공단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 9. 16.>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9. 16.>

1. 「행정심판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위원”은 “위원” 또는 “직원”으로 본다)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공직자”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 본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당사자는 위원 또는 직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

③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④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9. 16.>

제8조(대리출석제한)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제9조(간사) 간사는 심사청구업무 주무부서의 담당부장으로 한다.

제10조(소집 등)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2. 9. 16.>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의안을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 9. 16.> <개정 2022. 9. 16.>

③ 제2항의 통지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 9. 16.> <개정 2022. 9. 16.>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등에 대한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 9. 16.> <개정 2022. 9. 16.>

제11조(의결 등)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9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의결시에는 심의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2회 연속 서면의결을 할 수 없다.
-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가부동수의 경우나 상정된 개별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사실관계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서 및 회의록 등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서,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2022. 9. 16.>

② 출석위원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심사내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수당 등 지급)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한 위원(공단 임직원인 위원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증거자료 제출요구 및 반환 등)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증거자료 제출요구서에 따라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라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2022. 9. 16.>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 등의 회의장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결정을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증거자료 반환신청서에 따라 증거자료의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장부·물건 그 밖에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제15조(심사청구 의학자문단) ① 공단은 영 제97조에 규정된 감정을 위하여 심사청구 의학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7조를, 해촉에 관한 사항은 같은 규정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은 당해 처분에 관여한 자문의사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④ 심사청구 의학자문단 자문의사가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의 제목 개정 2013. 11. 26.]

제16조(고지) 공단이 영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보낼 때에는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기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7조(결정의 통지 등) ① 심사청구업무 주관부서는 영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처분지사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지사는 그 결정내용이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하는 결정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심사위원회의 의안심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 영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32조, 제37조, 제41조, 제45조, 제47조, 제57조 규정을 준용하되,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로 “재결”은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22. 9. 16.>

부 칙 <2006. 6. 9>

이 규정은 200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7. 8.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9. 10(정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변경에 따른 공단 내부규정의 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공단 내부규정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③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부 칙 <2008. 1. 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11. 22.>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6.>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22.>

이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8.(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별표3의 정원란 '259'를 '274'로, 「준법감시인 운영규정」별표2의 정원란 '10'을 '11'으로 하고, 「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별표1의 정원란 '26'을 '30'으로 '39'를 '43'으로 '42'를 '46'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심사위원회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업무이사”를 “연금이사”로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업무이사”를 “연금이사”로 한다.

④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등 징수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업무이사”를 “연금이사”로 한다.

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업무이사”를 “연금이사”로 한다.

⑥ 「구상금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업무이사”를 “연금이사”로 한다.

부 칙 <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03 이의신청위원회 운영예규

제정 2010. 7. 19. 예규 제142호
일부개정 2011. 6. 30. 예규 제150호
일부개정 2012. 11. 9. 예규 제176호
일부개정 2013. 11. 5. 예규 제191호
개정 2015. 11. 5. 예규 제222호
개정 2016. 6. 24. 예규 제226호(민원처리예규)
개정 2018.10.18. 예규 제24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 등과 관련한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이의신청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민원인의 권리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9>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의신청”이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처분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지사 또는 국제협력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심사청구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본부 부서”란 법에 따른 공단의 처분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0. 18]

제3조(이의신청위원회) ① 다음의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사 또는 국제협력센터(이하 “지사”라 한다)에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0. 18>

1.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한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조정, 납부예외(적용제외), 직권 가입 취소의 소급 적용에 대한 사항
2. 심사청구에서 반복 인용된 경우로서 심사청구 소관부서에서 별도 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3. 본부 부서가 심사청구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별도 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4. 공단의 안내 등으로 신뢰보호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사장 또는 국제협력센터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소속 지사의 부장 또는 센터장 1명(부장 또는 센터장이 없는 경우 차장 1명)이상을 포함하여 업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 중에서 지사장이 지명한다.<개정 2011. 6. 30, 2013. 11. 5, 2015. 11. 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1. 5>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사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의 부장 또는 그 바로 아래 직위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2. 11. 9, 2015. 11. 5>

⑥ 제2조에 따른 이의신청사항 중 제1항의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민원처리예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6. 6. 24>

제4조(이의신청의 방식) ① 제2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이의신청서)을 처분 등을 한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5, 2018. 10. 18>

② 신청인이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 방식 및 구비서류는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접수 및 이송) ① 제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사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8>

②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른 지사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분 등을 한 소관 지사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NPIS(연금업무시스템)의 평생고객상담이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5>

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이의신청서는 처음에 제출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되, 이송에 소요된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개정 2015. 11. 5>

제6조(보정) 이의신청서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정을 할 경우 보정사항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고 경미한 사항은 공단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1. 5>

제7조(사실관계 확인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1. 현지 방문조사
2.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요구
3.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질문

제8조(회의개최통지)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에게 회의개최 1일 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이의신청위원회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개정 2012. 11. 9, 2015. 11. 5, 2018. 10. 18>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이의신청위원회 의안) 및 별지 제4호서식(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11. 5, 2018. 10. 18>

제11조(결정) ① 지사는 이의신청이 부적절한 경우에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개정 2018. 10. 18>

② 지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을 불수용하는 결정을 한다.

<개정 2012. 11. 9, 2018. 10. 18>

③ 지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개정 2018. 10. 18>

④ 삭제<2013. 11. 5>

제12조(결정기간) ① 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예규」 제9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여 기간 내에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5. 11. 5, 2016. 6. 24>

② 제1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사유와 결정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9>

③ 제6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개정 2015. 11. 5>

제13조(결정의 통지 등) ① 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결정 즉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결정서)을 보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13. 11. 5, 2015. 11. 5, 2018. 10.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수용(일부수용 제외) 결정하여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0항 등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로 제1항의 결정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나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결정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신설 2018. 10. 18><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8. 10. 18>

③ 결정사항을 알릴 때에는 공단의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기기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9><제2항에서 이동 2018. 10. 18>

제14조(취하) ① 신청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5조(결과 조치) ① 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결정내용이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결정인 때에는 즉시 그 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처분 등을 하여야 하고 결정내용 등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8>

② 삭제<2013. 11. 5>

[조의 제목 개정 2013. 11. 5]

제1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예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처리예규」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5, 2016. 6. 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민원인이 이의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6. 30>

이 예규는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9>

이 예규는 201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5>

이 예규는 201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5>

이 예규는 201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24.(민원처리예규)>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5항의 개정 예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 처리된 사항은 이 예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예규의 개정) ① 「사무관리예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29조제5항 중 「민원사무처리예규」를 「민원처리예규」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한다.

② 「이의신청위원회운영예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제12조제1항 및 제16조 중 「민원사무처리예규」를 「민원처리예규」로 한다.

③ 「위임전결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본부 공통사항 중 21번란 및 17. 지사 가. 공통사항 중 3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1	민원 처리	기본방침에 관련된 사항	○			
		다수민원 등 특이사항	○			
		관련 기관 이첩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중간회보 및 보완지시				○
		경미한 조사 및 조회에 대한 회답				○

3	민원 처리	상급기관 회신 요구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민원접수 및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연통보		○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			

부 칙 (2018. 10. 1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예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삭제 <개정 2011. 6. 30, 삭제 2015. 11. 5.>

[별표 2] 이의신청서 접수 방식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개정 2015. 11. 5.>

이의신청서 접수 방식 및 구비서류

(제4조제3항 관련)

접수 방식 및 구비서류

- ① 방문 접수 : 신청서^{주1)}
 - ② 우편 접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 ③ 팩스 접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 ④ 전화 접수^{주2)}
 - ⑤ 홈페이지 접수^{주3)}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1) 담당직원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음. 대신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신 작성하였음을 표시하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함

주2) 부득이하게 신청서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통하여 접수하되, 가입이력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화접수 표기 및 평생고객상담이력에 전산등록

주3) 홈페이지 내 VOC·고객상담실·친절/불친절 사례로 접수되었으나 이의신청건인 경우에는 전화상담하여 전화접수에 준하여 처리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생략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생략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생략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생략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생략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생략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선정대표자) 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들이 제1항에 따라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들에게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併)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은 위원회가 제5항의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①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분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참가인의 지위)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분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③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분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제2항의 의무 이행 여부
- 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분을 보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 ③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2호·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 ④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 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부분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⑥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⑦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집행정지) 생략

제31조(임시처분) 생략

제32조(보정)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정서 부분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45조에 따른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분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증거조사) 생략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생략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생략

제39조(직권심리) 생략

제40조(심리의 방식) 생략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제53조(전자서명등) 생략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생략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생략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생략

제57조(서류의 송달) 생략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생략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생략

제60조(조사·지도 등) 생략

제61조(권한의 위임) 생략

부 칙 : 생략



05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력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022년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발행처 국민연금공단

발행인 이사장 김태현

발행일 2022년 11월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국민연금공단

디자인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스쿨프린팅그룹(주)
TEL. (02)2285-3366 | <http://schoolpt.co.kr>
전북지점 TEL. 070-4788-4591